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3.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의 성 군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폭염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Contents

【제·개정이력】 ..... 5

## 제1장 일반사항

- 1. 목적 ..... 8
- 2. 적용범위 ..... 8

## 제2장 위기형태와 관리체계

- 1. 위기형태 ..... 10
- 2. 위기경보수준 ..... 11
- 3. 위기관리체계 ..... 12
- 4. 의성군 재난관리체계 ..... 17
- 5.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19
- 6.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22
- 7. 비상연락망 ..... 24
- 8. 재난상황관리 보고·전파 체계도 ..... 27

##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1. 재난대응 절차도 ..... 29
  - 2. 재난대응 단계 ..... 30
  - 3. 재난대응 프로세스 ..... 31
- (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

# Contents

##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 1. 징후 감지 ..... 38
- 2. 초기 대응 ..... 39
- 3. 비상 대응 ..... 73
- 4. 수습·복구 ..... 130

## 제5장 의성군 협업체계

- 1. 부서별 협업기능 ..... 143
-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 148

## 부 록

- 1. 서식 ..... 157
- 2. 위기 상황 전파 체계 ..... 175
- 3. 영상 회의 시스템 ..... 185
-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87
-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201
- 6. 기상 등 정보시스템 접속 주소 ..... 203
- 7. 안전취약계층 현황 ..... 204
- 8. 대피장소 현황 ..... 206

【제 · 개정 이력】

제·개정 일 시 (승인일자)	주요내용	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2017.06.22	화산 환경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신규작성	시설9 권재혁	
2017.08.21	경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 정비	변경사항정비	시설9 권재혁	
2018.03.05	인사이동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9 최덕경	
2019.02.19	인사이동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9 최덕경	
2019.11.20	비상연락망·내용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8 최덕경	
2020.06.10	비상연락망·내용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8 김민우	
2020.12.13	비상연락망·내용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7 김민우	
2021.08.20	비상연락망·내용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7 김민우	
2022.06.08	비상연락망, 내용 현행화	변경사항 정비	시설9 곽민석	
2023.04.06	비상연락망·내용 현행화	변경사항정비	방재안전7 김민우	

# I. 일반사항

## I. 일반사항

### 1 목 적

- 이 매뉴얼은 대형 화산폭발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성군의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임

### 2 적용 범위

- 가. 상황 범위
  - 대형 화산폭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여 의성군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한 재난상황에 적용
- 나. 기관 범위
  -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의성군의 각 부서와 산하기관·단체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 관계 법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 자연재해대책법
-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4) 재해구호법
-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6)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 화산재 피해 및 관리

- (1) 기상법
- (2) 도로교통법
- (3) 대기환경보전법
- (4) 산업안전보건법
- (5) 농어업재해대책법
- (6) 식품안전기본법
- (7) 먹는물 관리법
- (8) 수도법·하수도법

##### □ 기 타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4) 의성군 안전관리계획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위기 형태

#### 가. 원인

- 대형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분출물 확산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오염 발생
- 화산지진으로 인한 광역적 시설물 피해 발생

#### 나. 전개양상

◇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용암이나 화산쇄설물로 분출



- ◇ 화산분출물 확산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 화산지진으로 광역적인 시설물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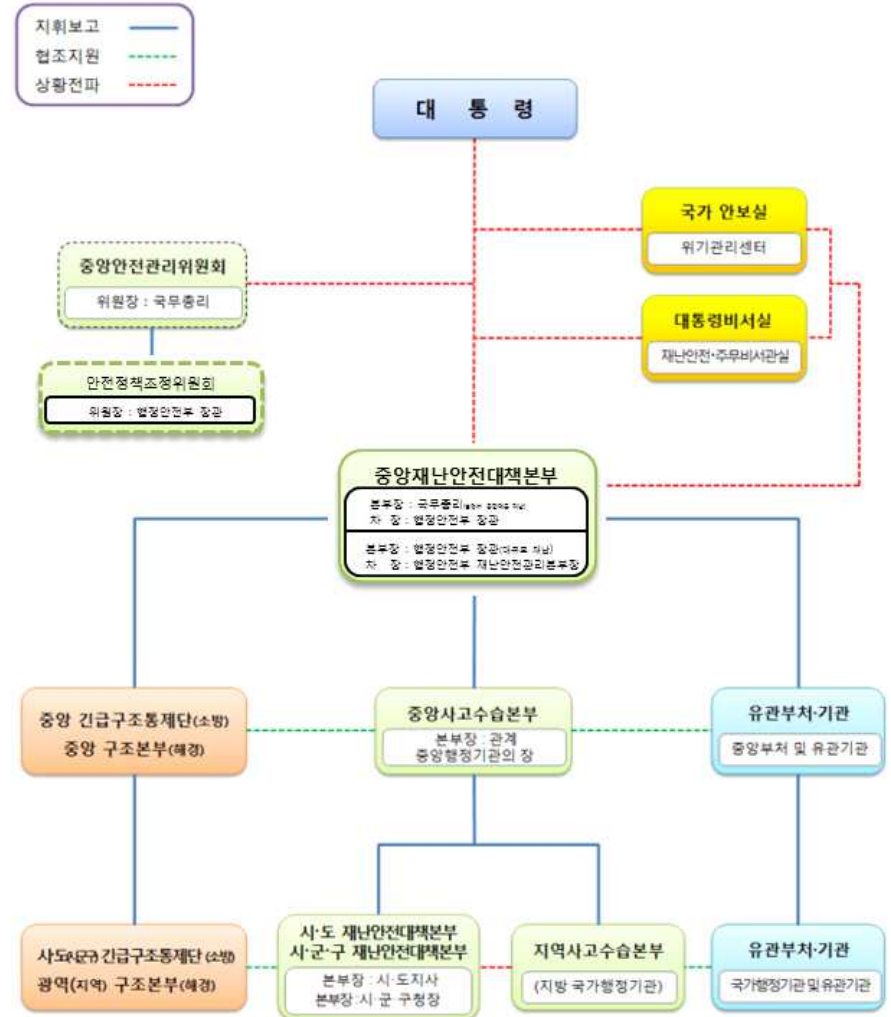
- ◇ 대형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분출물의 확산으로 대기·농작물·토양·식수·식품 등 광범위한 오염 발생
- ◇ 대형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 확산으로 호흡기질환 등 인명피해(보건) 문제 발생
- ◇ 화산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및 생활필수시설 손실 발생
- ◇ 화산재난 극심 피해지역의 대규모 정치·경제·사회적 불안 발생
- ◇ 대규모 화산재 대기 확산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사태 발생

## 2 위기 경보 수준

구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sup>†</sup> 또는 전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는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때</li> <li>† 백두산,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화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정보 발표 (기상청)</li> <li>○ 화산분화상황 모니터링</li> </ul>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화산재 주의보가 발령되고, 화산분출물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li>○ 00군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분출물 국내 영향 분석</li> <li>○ 협조체제 가동</li> <li>※ 화산재 주의보 발령(기상청)</li> </ul>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화산재 경보가 발령되고, 화산분출물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li>○ 00군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분출물 국내 영향 분석</li> <li>○ 대비계획 점검</li> <li>※ 화산재 경보 발령(기상청)</li> </ul>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주변지역의 화산 또는 전지구적 영향을 끼치는 화산이 분화하여 화산재 경보가 발령되고, 화산분출물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li>○ 00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사태 선포</li> <li>○ 즉각 대응태세 돌입</li> <li>※ 화산재 경보 발령(기상청)</li> </ul>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 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부 처	주 요 임 무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li> <li>재난상황 파악접수 및 위기경보 발령사항 보고전파</li> <li>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난대응 상황 파악</li> <li>중수분 가동 여부 및 지대분 가동 여부 파악</li> <li>재난 확산 동향 및 피해현황 파악</li> <li>인명 구조·구급활동 지원</li> <li>상황판단회의 개최(필요시)</li> <li>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 유관기관 및 지자체 통보</li> <li>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li> <li>현장상황관리관, 중앙수습지원단 파견(필요시)</li> <li>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li> <li>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필요시)</li> <li>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필요시)</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주관부처와 공동)</li> <li>중앙(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특수구조대 출동</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재 제거를 위한 인력 장비 지원 현황파악</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군장비 확충,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 사항 파악</li> <li>인명구조 및 후소, 경계·작정 등에 관한 검토</li> <li>화산재 제거를 위한 인력 장비 지원</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교 화산분화시 행동요령 교육</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초·중·고교 화산분화 시 행동요령 교육</li> <li>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li> <li>화산폭발 영향지역 특별교육대책 수립시행</li> <li>학교 피해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li> <li>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이재민 수용 협조</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대중매체, 정부보유매체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지원</li> <li>정부 활동 주기적 발표 지원 및 필요시 비상홍보센터 운영</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농·축산물 오염 확인 및 국내 환경영향 평가 등 위생 관리체계 점검</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농작물 병충해 예방 및 축사 전염병 발생 대비 방역</li> <li>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li> <li>농산물 출하제한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li> <li>기온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추진</li> </ul>

부 처	주 요 임 무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수오염 관리·검사 체계 점검</li> <li>낙하 화산재 수거 및 처리</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피해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및 하수처리 대책</li> <li>육상 환경오염물질 상황 및 처리 실태 관리</li> <li>화산재 및 아황산가스 등 확산 모니터링 강화</li> <li>취·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식수) 오염방비 관리</li> <li>식수 공급대책 등 급수계획 수립</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기 운항 제한 검토 및 항공 수송대책 조치</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화산재 확산에 따른 교통대책 시행</li> <li>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의료지원 준비태세 확립</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재해지역 중점 방역 및 진료활동 실시</li> <li>비축약품·인력·장비 등 지원요청 시 신속 지원</li> <li>피해지역으로부터 요청 접수 시 응급의료 지원 동원</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활동 관측 정보 등 관련정보 제공</li> <li>화산재 영향 분석을 통한 화산재특보(주의보·경보) 발령</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화산관련 정보 제공 등 화산활동 감시를 위한 상황반 구성 및 운영</li> <li>화산활동 감시 등에 대한 언론 브리핑</li> </ul>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재 낙하로 인한 산림 피해 예방</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산림 지역 화산재 수거 및 처리 방안 강구 및 실행</li> </ul>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요령 홍보</li> <li>수산 증·양식시설, 어항시설 사전점검 실시 및 강화</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재난발생지역 해상 통제상황 파악 및 긴급수송 지원</li> <li>해상 환경오염물질 상황 및 처리 실태 관리</li> <li>수산물의 출하 제한</li> <li>해양 화산재 오염 감시</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도로통제 상황발생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 추진</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재해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li> <li>피해발생 예상지역내 차량통행 제한</li> <li>주민대피유도 및 교통통제, 치안활동 강화 등</li> <li>재난관리부대 및 구조헬기 출동 대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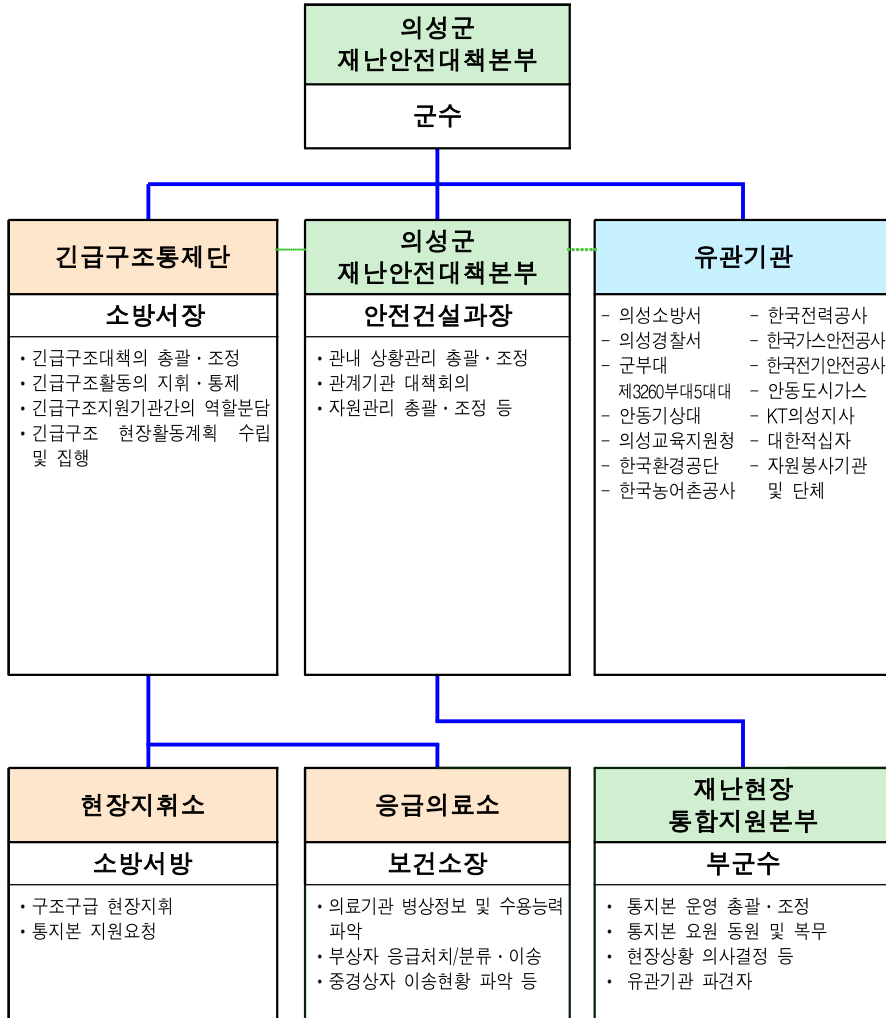
부 처	주 요 임 무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화산재 낙하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방지</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정보통신분야 피해 예방 조치</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중요 방송통신시설의 보호 및 신속 복구</li> <li>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전파(TV, 라디오)</li> <li>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li> <li>중요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대책 ※중대본 근무자 파견</li> <li>비상 통신 및 방송 송출 대책 시행 및 대국민 홍보 강화</li> </ul>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정보통신분야 피해예방 조치</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중요 방송통신시설의 보호 및 신속 복구</li> <li>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전파(TV, 라디오)</li> <li>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li> <li>중요 통신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응급대책 ※중대본 근무자 파견</li> <li>비상 통신 및 방송 송출 대책 시행 및 대국민 홍보 강화</li> </ul>
산업통상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가스·석유시설 및 산업공단 등 각종 산업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재난대응체계 파악</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라이프라인 조기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 협조체계 가동</li> <li>화산재로 인한 정전 및 정밀산업 피해예방 조치</li> <li>화산지진 및 대규모 전자파 발생에 따른 전자·전기시설 마비 등 피해시 전력 응급복구 지원</li> <li>전력 중단에 따른 일반가정에 대한 전력 응급복구 지원</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재로 인한 전산분야 마비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응급복구</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피해 예상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조치 시행</li> <li>인접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화산피해정보 수집 및 전파</li> <li>해당국가(지역) 여행 자제 요청</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화산폭발국가의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유지</li> <li>해외 위기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li> </ul>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두산의 경우) 북한 위기상황 파악 및 정보 제공</li> <li>북한 협력 및 지원방안 검토</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부 처	주 요 임 무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화산재 낙하로 인한 근로자 피해방지</li> <li>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li> </ul>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국가 수입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화산분출물 오염 검사·관리체계 가동</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 예산 지원 검토</li> </ul>



## 4 의성군 재난관리체계

### 가. 재난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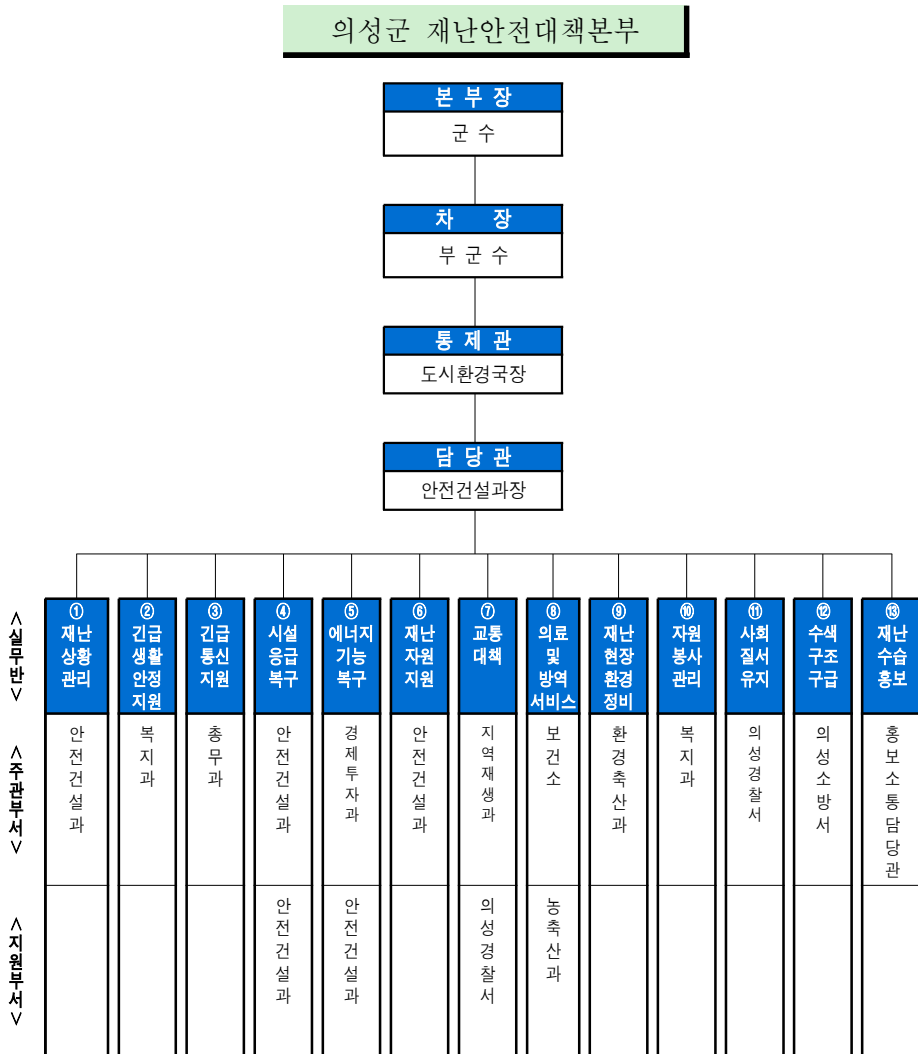


### 나.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경상북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군수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 이행
  -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
  -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관계기관 대책회의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시군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협력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현장지휘소**
  - 각급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효과적 현장지휘를 위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 응급의료소**
  -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당해 재난과 관계가 있는 기관

## 5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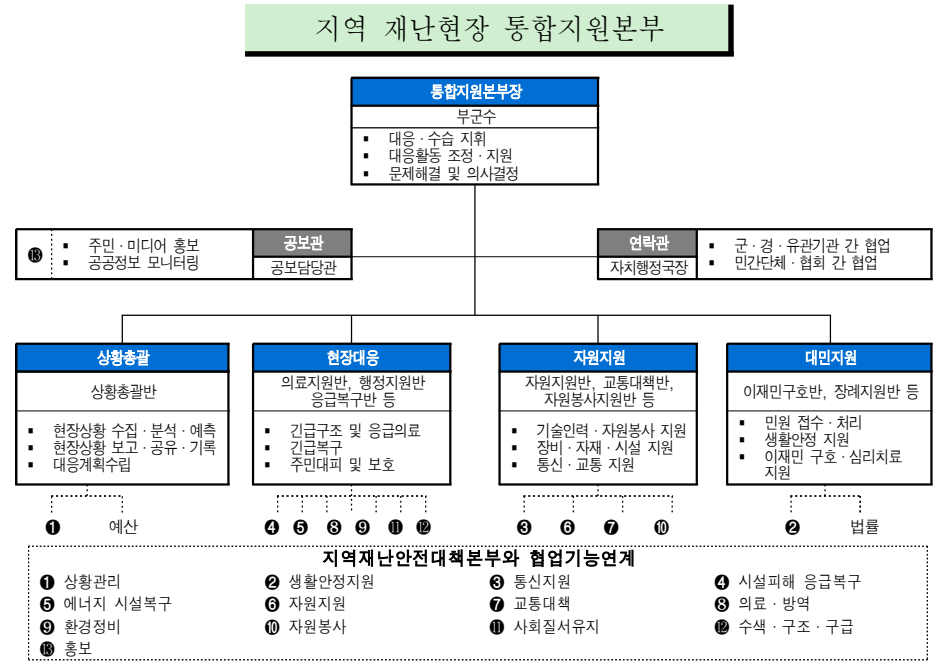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 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 (군수)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 (부군수)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 (도시환경국장)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 (안전건설과장)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1. 재난 상황 관리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긴급 생활 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3. 긴급 통신 지원	○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4. 시설 응급 복구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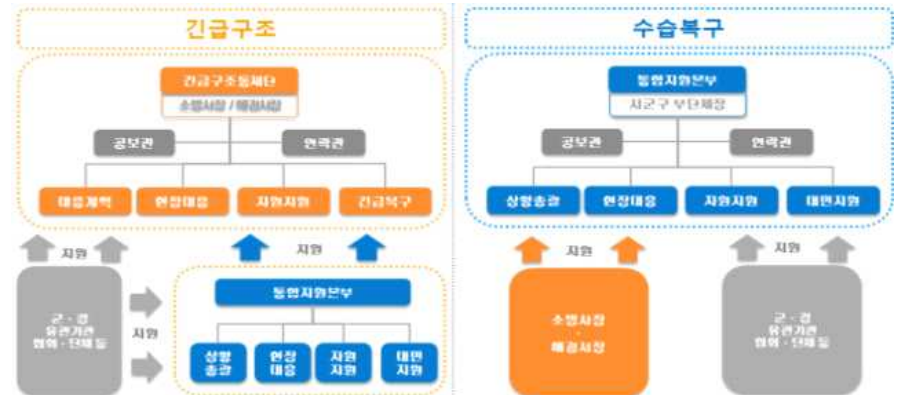
구 성	주 요 임 무
5. 에너지 기능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li> <li>○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li> <li>○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li> </ul>
6. 재난 자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li> <li>○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li> <li>○ 자원 응원관리</li> <li>○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li> </ul>
7. 교통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li> <li>○ 대체교통수단 확보</li> <li>○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li> <li>○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li> </ul>
8. 의료 및 방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li> <li>○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li> <li>○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li> <li>○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li> <li>○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li> </ul>
9. 재난 현장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li> <li>○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li> </ul>
10. 자원 봉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li> <li>○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li> <li>○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li> <li>○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li> <li>○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li> </ul>
11. 사회 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li> <li>○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li> <li>○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li> </ul>
12. 수색·구조·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li> <li>○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li> </ul>
13. 재난 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li> <li>○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li> <li>○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회견 대응</li> </ul>

## 6 이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가. 통합지원본부 구성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 7 비상연락망

### 나. 통합지원본부의 주요임무

실무반	주요임무	소관 부서장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li> <li>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li> <li>현장상황 의사결정 등</li> </ul>	부군수 (필요시 군수)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li> <li>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li> <li>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li> <li>예산 확보 및 집행</li> </ul>	안전건설과장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li> <li>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li> <li>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li> <li>피해자 심리지원</li> <li>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과거 보건소 근무 경험 이 있는 과장	
장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자 인적사항 파악</li> <li>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li> <li>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li> <li>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복지과장 또는 과거 복지과장 등 경험 있는 과장	
이재민 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li> <li>임시주거시설 지원</li> <li>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li> <li>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li> <li>피해자 생계지원 등</li> <li>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복지과장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li> <li>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li> <li>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li> <li>지대본 지원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총무과장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li> <li>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li> <li>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li> </ul>	홍보담당관장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li> <li>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li> <li>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li> </ul>	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 대응반	산불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복지과장
	건물 안전진단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안전건설과장
	제설지원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조트 붕괴 사고)	안전건설과장
	오염처리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환경축산과장
	농·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li> <li>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li> </ul>	유통정책과장 과거 축산업무 경험 있는 과장

### 가. 행정안전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행정안전부	장관		(사) 044)205-1000	
행정안전부	차관		(사) 044)205-1100	
행정안전부	안전차관		(사) 044) 205-200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사) 044) 205-1500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		(사) 044) 205-1510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사) 044) 205-5190	

### 나.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재난안전실	실 장	김병삼	(사) 054)880-2300	
자연재난과	과 장	김수용	(사) 054)880-2350	
자연재난과	담 당	윤배용	(사) 054)880-2364	
자연재난과	주무관	남종서	(사) 054)880-2365	
자연재난과	주무관	하경운	(사) 054)880-2366	
자연재난과	주무관	류정옥	(사) 054)880-2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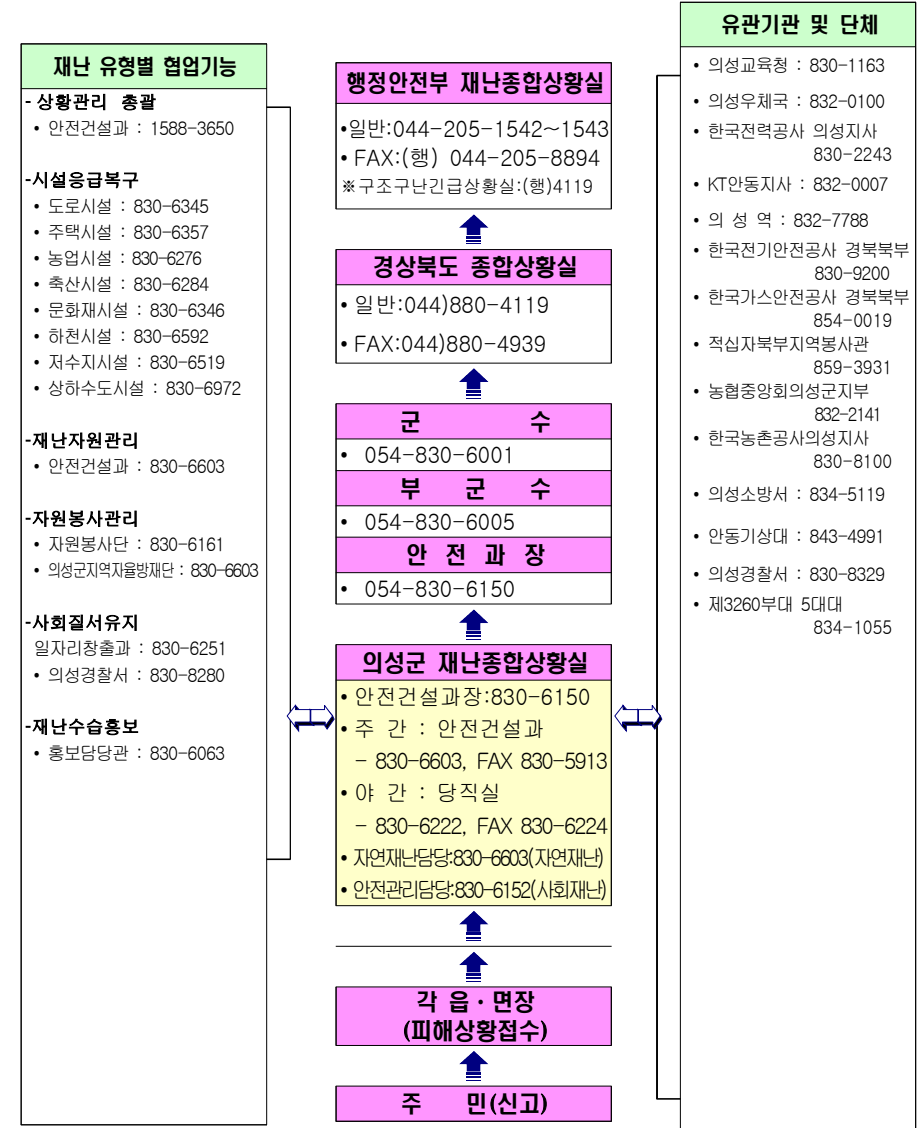
### 다. 의성군 안전건설과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의성군	의 성 군 수	김주수	(사) 054) 830-6001	
의성군	부 군 수	안국현	(사) 054) 830-6005	
의성군	도시환경국장	김태원	(사) 054) 830-6102	
의성군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사) 054) 830-6150	
의성군	방재담당	이선우	(사) 054) 830-6601	
의성군	직 원	김민우	(사) 054) 830-6603	
의성군	〃	곽민석	(사) 054) 830-6602	

라. 의성군 유관부서 및 기관

기관명	관련 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성군	안전건설과	054-830-6603	054-830-5913
	홍보담당관	054-830-6050	054-834-6114
	총무과	054-880-6536	054-834-5533
	복지과	054-830-6161	054-830-5907
	경제투자과	054-830-6232	054-830-5915
	유통정책과	054-830-6276	054-830-5911
	환경축산과	(축산)054-830-6185 (환경)054-830-6188	054-830-5910
	산림녹지과	054-830-6539	054-830-5912
	보건소	054-830-6656	054-830-0659
	상하수도사업소	054-830-6964	054-830-5925
의성소방서		054-834-5119	054-834-3199
의성경찰서	정보보안과	054-830-8262	054-830-8706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830-1164	054-833-9552
안동기상대		054-843-4991	054-852-0366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30-3006	0505-005-2021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		054-830-2243	054-830-2213
KT 안동지사		054-832-0007	054-854-1500
의성역		054-832-7788	054-834-0788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054-830-9200	054-823-0746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054-854-0019	054-854-8033
적십자북부지역봉사관		054-859-3931	054-859-3932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		054-832-2141	054-832-3893
한국농촌공사의성지사		054-830-8329	054-861-8850
제3260부대 5대대		054-834-1055	057-832-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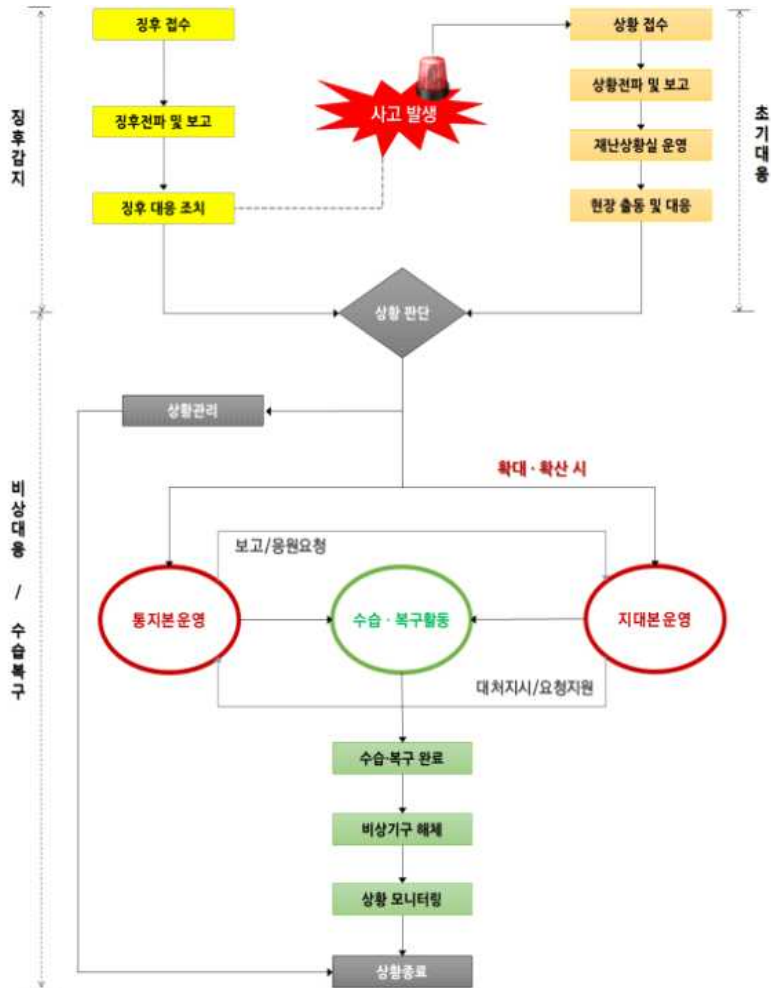
8 재난상황관리 보고·전파 체계도



## 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Ⅲ.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1 재난대응 절차도



## 2 재난대응 단계

구분	상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정후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청의 예보 접수 후 감시 활동 강화 및 긴급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안전점검 실시</li> <li>신속한 주민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li> <li>(필요시)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li> </ul>	관심 주의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산분화 직후 상황접수로부터 초기 현장대응을 실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li> <li>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li> <li>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li> </ul>	경계 심각
비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본격 재난대응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 구조·구급 최우선</li> <li>신속한 응급 구호를 통한 2차 피해 방지</li> <li>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li> </ul>	경계 심각
수습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구급이 완료된 후 화산쇄설물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수습 복구를 시행하는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li> <li>Life-Line 복구 최우선</li> <li>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li> </ul>	경계 심각

### 3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분	1단계	정후 감지(지진해일의 경우)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초기 대응 부서	상황실	<b>[상황실수]</b> [1-1] 상황접수 - 화산폭발 정보 접수 - 화산 상황모니터링 및 초기상황 판단  <b>[상황전파 및 보고]</b> [2-1] 상황전파 - 필수요원(안전건설과 직원)에 상황전파 - 진·직접 문자메시지 전파 - (필요시) 의상소방서, 의상경찰서, 관전, 전기·가스공사, 도시가스 등  [2-2] 상황보고 - 안전건설과장 초기상황 보고 - (필요시) 군수, 도 자연재난과, 행정안전부	<b>[4] 상황관측수</b> [4-1] 상황관측 - 화산 상황 모니터링(기상청 화산분화 정보 및 화산재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 추가 피해상황 파악 - 위험대처 및 주관기관 대응태세 확인  <b>[6] 상황전파 및 보고</b> [6-1] 상황전파(협업가능별 부서 등) [6-2] 주관기관 상황전파(상황전파메시지 및 무선, FAX 등) [6-3] 추가 보고(의상소방서, 의상경찰서, 의상부고(중동부고) 등) 및 추가 보고(도, 자민자치단체)  <b>[7] 재난상황실 운영</b> [7-1] 상황실 운영 - 화산 상황 모니터링 및 주관기관 대응태세 파악 [7-2] 추가 피해상황 파악 [7-3] 대시민 대응(의상소방서, 의상경찰서 및 개화) [7-4] 주민안전 확보의 주안점 및 계획 [7-5] 주민안전 확보의 주안점 및 계획 [7-6] 주민안전 확보의 주안점 및 계획 [7-7] 주민안전 확보의 주안점 및 계획  <b>[필요시]</b> [7-8]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b>[7] 재난상황실 운영</b> [7-9]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7-11] 단계별 상황전파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1] 지대본 설치 [9-2] 지대본 실무반 편성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상황실 총괄 - 재난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 지대본 가동시 업무지원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전파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와 공조체제 유지	<b>[7] 재난상황실 운영</b> [7-10]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7-11] 단계별 상황전파  <b>[27] 재난 및 사고해구</b> [27-1] 각종 민원상황 접수 및 소관부서 통보 [27-2] 복구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b>[초기상황 확인 및 대응조치]</b> [3-1] 초기상황 확인 - 초기상황 정보수집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화산재해시스템 가동 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 방송사 재난방송 모니터링  [3-2] 긴급대응조치 - 필수요원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명령 - 재난대응체계 가동 점검 - 긴급 초기대응조치 요청 - 언론대응 준비 및 동향 파악 - 정후 대응 상황 보고(군수, 부군수, 도 자연재난과)	<b>[6] 현장출동 및 대응</b> [6-1]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 주민대피 최우선 지원 인명피해 최소화 [6-2] 해당 시군도 비상대비 요청 [6-3] 현장 대처상황 파악 - 풍규위, 사상자, 고립원인 등 - 추가대응 인력, 장비 투입 현황 - 추가공과 가능성 판단 [6-4] 긴급구조구급차 협조사항 파악 [6-5] 긴급 현장 지원 요청 -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민간단체,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원요청 - 인근 지자체 지원요청(인력, 물자 등)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1] 재난현장 통지본 설치 [8-2]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 수습/분석/예측(기상청 협조)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동) - 현장통제/상황 수습 및 협조요청서 작성 - 사고현장 지원사항 접수 및 협업부서별 업무 분담 - 주요인사 방문시 브리핑 - 통지본 현장대응 - 인명피해 발생 시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우송 지원 - 지역긴급구조통제단(가동)인양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요청 - 민원장구 개설 및 전달인력 배치	<b>[27] 재난 및 사고해구</b> [27-3]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7-4] 지대본 결정사항 이행계획 수립 [27-5] 재난피해 초기수습대책 수립			
민수	부재시 부군수	○ 초기 상황확인 - 화산재 등으로 인한 피해 예상현황 및 사전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비상근무 지시	- 소관부서지정(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 소방서청 유선통화→추가상황파악 - 유력기관장 협조 당부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b>[상황판단회의 주재]</b> - 비상기구 운영 여부 결정 - 긴급조치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피해 확산 방지 방안 - 구조구급 지원 사항 -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 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b>[필요시]</b> -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재해현장 방문 및 피해자 위로(부군수) -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부군수) - 피해확산 방지 및 초기수습을 위한 분부장 특별지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물고 상황 파악(재난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 이재민 구호소 운영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구조인력 투입 여부 판단  <b>[필요시]</b> -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 조치 지시 - 특별공급금 등 상급기관 지원요청 요청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b>[필요시]</b>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요청 -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군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점검 ○ 재난상황실 운영 ○ 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 재난대응부서 및 소관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인 (안전실과 등 협업기관 담당부서) - 통안(의상)본부 설치 검토(현장/의상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설치장소, 근무반별 인력, 근무인원 등) - 상황실/대피소의 개회  <b>[필요시]</b> - 군수, 부재시 부군수 대행	- 지대본 운영, 통합지원본부 운영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방안 검토/보고 - VIP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 군수, 부군수 재난현장 방문 시 수행 -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안전건설과	인원건설과장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점검 ○ 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 재난대응부서 및 소관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인 (안전실과 등 협업기관 담당부서) - 통안(의상)본부 설치 검토(현장/의상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설치장소, 근무반별 인력, 근무인원 등) - 상황실/대피소의 개회  <b>[필요시]</b> - 군수, 부재시 부군수 대행	- 지대본 운영, 통합지원본부 운영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방안 검토/보고 - VIP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 군수, 부군수 재난현장 방문 시 수행 -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재난공보체계 점검  <b>[언론대응]</b>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화 파악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력인력 유지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 주민대피 및 시민행동요청 홍보	<b>[27] 언론대응</b> [26-1] 현장 브리핑 - 지대본 언론대응 지원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26-3] 현장 취재지원  <b>[필요시]</b> [26-4]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26-5]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지역방송 요청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b>[27] 언론대응</b>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b>[필요시]</b>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홍보담당관	인원건설과	○ 재난공보체계 점검  <b>[언론대응]</b>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화 파악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력인력 유지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 주민대피 및 시민행동요청 홍보	<b>[27] 언론대응</b> [26-1] 현장 브리핑 - 지대본 언론대응 지원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26-3] 현장 취재지원  <b>[필요시]</b> [26-4]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26-5]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지역방송 요청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b>[27] 언론대응</b>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b>[필요시]</b>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안전건설과	인원건설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b>[11] 생활안전지원</b>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확보 - 대피소 점검(비상발전기, 간이화장실, 식수지원 등) - 주민대피 안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요청 - 응급구호물품 점검 - 지역구호센터 운영 준비 [11-3] 재해구호 협력체계 구축 - 인접시군, 민간단체, 재해구호협회, 군부대 등 지원요청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대인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재해구호 활동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 재난지원금 지원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총괄  <b>[11] 생활안전지원</b>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계속)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계속) [11-3]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11-4]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b>[12] 장애지원</b> [12-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2-2] 정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12-3] 유가족 지원대책 [12-4]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b>[11] 생활안전지원</b> [11-5] 이재민 심리치료 지원 [11-6] 의견검토 모습 승인 및 관리/배분 [11-7] 장기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11-9] 세제 및 금융지원			
		- 재난대비 업무 수행	<b>[14] 통신시설 지원 및 긴급복구</b> [14-1]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긴급통신장비 점검(위성전화, TRS 등) 및 개통 [14-3]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동시성 상황관리 - 통신시설 응급복구지원반 편성 및 투입 - KT 및 통신사 응급복구반 지원요청 [14-5]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별 비상연락망 정비 [14-5] 비상통신장비 수요파악(현장본부, 이재민대피소 등)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지원지원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긴급통신지원 총괄  <b>[14] 통신시설 지원 및 긴급복구</b> [14-2] 긴급통신장비 지원 [14-4] 통신두절지역 통신망 긴급복구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체 동원(계속) [15-3] 소관부서 및 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계속)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계속) [15-6] (필요시) 시설파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한 재난 수습총보 요청 [15-7] 장기 수습복구 방안 수립 [15-8] 피해건축(아파트, 공동주택) 긴급복구, 안전조치 구조토목 및 주민 대피로 확보 [15-9] 피해상황 입력 및 향후 복구계획수립			
홍보담당관	인원건설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b>[16] 시설응급복구</b>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지역 조사반 편성 및 투입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체 동원 [15-3] 피해건축(아파트, 공동주택 등) 상황관리 응급복구를 위한 자체 및 인력투입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2차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위험요소 인종조치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 통지본 지원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체 동원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시설응급복구 총괄  <b>[16] 시설응급복구</b>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체 동원(계속) [15-3]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5-5] 통고위험 건축 등 시설물 안전확보 및 통제조치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지원지원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긴급통신지원 총괄  <b>[14] 통신시설 지원 및 긴급복구</b> [14-2] 긴급통신장비 지원 [14-4] 통신두절지역 통신망 긴급복구	-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체 동원(계속) [15-3] 소관부서 및 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계속)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계속) [15-6] (필요시) 시설파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한 재난 수습총보 요청 [15-7] 장기 수습복구 방안 수립 [15-8] 피해건축(아파트, 공동주택) 긴급복구, 안전조치 구조토목 및 주민 대피로 확보 [15-9] 피해상황 입력 및 향후 복구계획수립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경제투자자	- 재난대비 업무 수행		[16] 에너지기능복구 [16-1] 인명구조원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16-9] 2차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요청 - 가스 및 전기 차단 [16-10] 재난현장 비상전력 확보 요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가스안전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안전진단 • 구조급급한정 에너지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에너지기능복구 총괄 [16] 에너지기능복구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6-4] Life-Line 초기 복구 협조체계가동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16] 에너지기능복구 [16-4] Life-Line 초기 복구 협조체계가동(계속)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안전건설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17] 방재자원 관리 및 지원 [17-1]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유지 [17-2] 동원가능 자원 파악(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17-3] 인근 지자체, 민간단체, 군부대 등 인력·물자 지원 요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자원지원 총괄 [17] 재난자원지원 [17-3] 대규모 재난시 민방위대, 군·경 동원 [17-4]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17-5]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계속)		[17] 재난자원지원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계속)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계속)	
경제투자자 안전건설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18] 교통대책 [18-1] 교통상황 파악 관리 - 재난 피해지역 주변 교통상황 파악 [18-2] 교통통제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우회로 및 수송로 마련 및 안내 [18-3] 주요 피해지역 출입통제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교통통제 및 안전통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교통대책 총괄 [18] 교통대책 [18-4] 통행방해 주차차량 간인 및 피해조사 [18-5] 수송로 확보 [18-6] 대체교통수단 마련 [28-7]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28-8] 임시주차장 마련			
보건소	- 재난대비 업무 수행		[19] 의료활동 [19-1]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활동지원 - 사상자 및 부상자 관내 지정병원 분산 배치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19-4] 응급의료기관 확인 및 재난의료지원팀 요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의료 및 방역서비스 총괄 [19] 의료 및 방역 활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활동지원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계속) [19-5] 응급의료물자 관리 [19-6] 응급환자 이송 지원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 [19-8] 군의관 등 의료지원 요청 [19-9] 재난현장 방역활동 실시 [19-10]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급보증 협약 실시		[19] 의료활동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계속) [19-11] 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및 감염 예방활동 실시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환경측산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21] 재난폐기물 처리 [21-4] 재난폐기물 임시처리장 준비 - 재난폐기물 임시처리장 점검 및 안내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현장 환경정비 총괄 [21] 재난폐기물 처리 [21-1] 폐기물 발생상황 파악 [21-2] 폐기물 처리 지원기관 협조 요청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		[21] 재난폐기물 처리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계속) [21-4]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 [2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과 보고 [21-7] 폐기물처리비 및 복구비 지급요청	
복지과	- 재난대비 업무 수행		[23] 자원봉사관리 [23-7] 자원봉사 종합상황실 운영 - 자원봉사 수요인력 파악 및 현장투입 준비 - 자원봉사 현장지원센터 준비 - 민간전문구조단체 지원 요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자원봉사관리 총괄 [23] 자원봉사관리 [23-1] 자원봉사자 모집 [23-2] 자원봉사활동 가능 분류 및 배치 [23-4] 민간자원봉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23-5]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23-6]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23] 자원봉사관리 [23-7]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계속)	
여성경찰서	- 재난대비 업무 수행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1] 주민긴급대피 지원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사회질서유지 총괄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24-3] 각종 유언비어 차단 및 피해지역 치안강화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계속)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의성소방서		- 재난대비 업무 수행		<b>[25]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b> [25-1] 재난피해상황 파악 및 초기대응팀 현장 투입 - 화이아라인 및 폴리스라인 설치 등 주민통제·구조 [25-2]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인명피해 발생 시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강원도 특수구조단 및 인근 소방서 지원 요청 [25-3] 긴급구조 대책회의 실시 - 통합지휘회의 및 유관기관 연락관 회의		<b>[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b>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계속) <b>[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b> [9-3] 재대본 운영 및 지원 - 재대본 재난현장 수색·구조·구급 총괄 <b>[25]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b> [25-4]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실시 [25-5]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이송 지원 [25-6] 추가붕괴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25-7] 실종자 수색 및 화재위험지역 경계조치		<b>[25]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b> [25-4]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실시(계속) [25-5]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이송 지원(계속) [25-8] 재난현장 지원관 이양 (긴급구조통제단->재난안전대책본부장) [25-9] 초기재난종료에 따른 언론브리핑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제3280부대 5대대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 수색, 구조·구급 지원</li> <li>○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인력 및 장비 지원</li> </ul>
의성교육청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필요시)</li> <li>○ 재난대응지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임시주거장소 제공(체육관, 강당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응지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li> </ul>
KT (경북지사)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li> <li>○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통신시설 긴급수동대체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통신시설 복구 시행</li> </ul>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붕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규모 확인(고압, 저압 공급설비 등)</li> <li>○ 전원분리시행(현장출동반)</li> <li>○ 분부, 분사, 산자부 상황파악 및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개폐기 조작으로 전원분리(배전센터) 설비피해 상태 확인</li> <li>○ 직원(배전운영실) 및 협력사 인원, 장비 등 지원</li> <li>○ 비상발전차 지원 : 당사보유(5000KW) 및 위탁계약 업체(12대) 동원</li> <li>○ 을 통한 비상전원 공급</li> <li>○ 비상상황실 구성 : 당사 직원 및 협력사 비상대기근무 시행(현장상황보고 및 복구지원 등)</li> <li>○ 피해 전기시설에 대한 응급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li> <li>○ 전기 시설 피해 복구</li> <li>○ 붕괴건물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li> <li>○ 붕괴건물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li> </ul>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북부)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li> <li>○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임시주거지 및 통지본 전기공급</li> <li>○ 피해 전기시설에 대한 응급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시설 피해 복구</li> <li>○ 붕괴건물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li>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li> </ul>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li> <li>○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li> <li>○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붕괴 주변지역 가스 우회공급 방안 시행</li> <li>○ 피해 가스공급 시설 응급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가스공급 시설 복구</li> <li>○ 붕괴건물 주변지역 안전점검 및 안정적 가스 공급</li>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li> </ul>
한국농어촌공사 (의성지사)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농업용댐 시설의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산방지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댐 시설의 응급복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li> <li>○ 주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li> </ul>
상하수도사업소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및 응수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산방지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및 응수공급시설 응급복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li> <li>○ 주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li> </ul>
한국도로공사 (의성군위지사)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확산방지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시설 피해상황 응급복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li>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li> </ul>
의성역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 피해사항 파악 및 피해확산방지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 피해상황 응급복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li> <li>○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li> </ul>
대한택시사 (경북지사)		- 재난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li> <li>○ 경복지사 응급구조출동 요청(현장상황파악)</li> <li>○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조활동 전개</li> <li>○ 경복지사 긴급대응반 운영(현장 상황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조출동 지원</li> <li>○ 구조급식활동 실시</li> <li>○ 긴급구조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조호봉사단설치·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실리상담반 운영</li> <li>○ 수습·복구 자원봉사자 및 지원인력 급식 지원</li> </ul>

# IV.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본 현장매뉴얼(예시)의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이 표준은 아니며, 시·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각 지자체의 재난대응과 관련한 여러 여건과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IV.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 1 징후 감지

#### 가. 대응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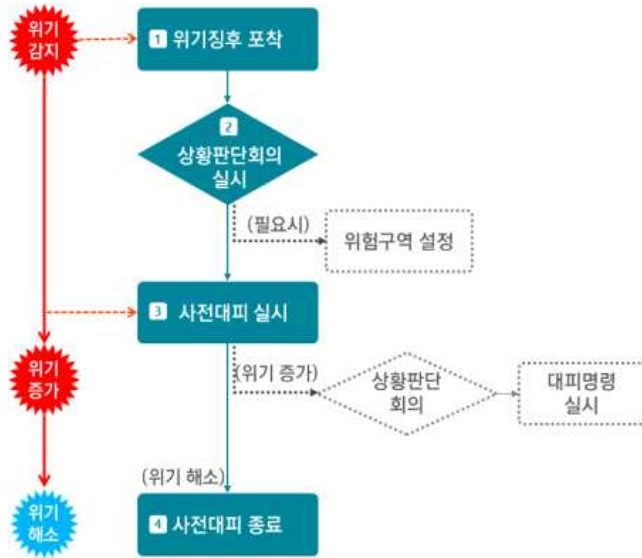
- 화산분화 정보의 접수 및 수집
-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전파(관련부서, 유관기관)
- [필요시] 군·경 협조요청

####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본부장 (군수)	○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부군수)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도시환경국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안전건설과장)	○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b>징후 감지</b>		
코드번호 : 40-1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주민대피 조치내용 : 사전대피
위기징후 감지 또는 위험상황이 예측(심각성, 시급성, 확대가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능성) 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의 위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제적 조치 협업기관 :		

<절차>



1. 사전대피 상황

- (위기징후 포착) 재난유형별 위기징후 목록의 징후가 포착된 경우
  - (풍수해) 태풍 예비특보 또는 특보발령 시 등
  - (댐 붕괴) 댐 수위상승으로 계획홍수위 근접 등
  - (원전안전) 검사·점검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등
- (이상징후 확인)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위험 지속) 재난유형별 위험 요소가 지속 또는 악화되어 위기 증가
    - 시간당 강수량 증가, 누적 적설량 증가
  - (취약성 약화) 사회적 환경변화로 지역·시설의 취약성이 약화

-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역, 노후주택, 노후축대 등에 위험 예상
- 주택 등의 상부에 텃밭, 임도, 봉분, 석축 등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위험 예상

- (대피 장애요인 확인)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조건(예시: 야간에 재난발생 예상)들이 확인되는 잠재적 위험 지역
  - (지형적) 산간, 계곡, 섬, 외딴 마을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 (시간적) 야간, 새벽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 (사회적) 공휴일 또는 행사 등으로 관할 지역 내 인구 유입이 많은 경우 또는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경우

2. (필요시) 위험구역 설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정함 (법 41조)
  - 재난유형별 재난 예,경보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함
  - 개별법령에 의하여 주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보호조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검토하여 설정함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협의 또는 검토과정을 통하여 설정함

참고자료_위험구역 설정 대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유형별 위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급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li> <li>-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해일위험지구 (폭풍해일 및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li>-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 제29조 재난방지사설 지역 확인</li> <l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li> </ul> </li> <li>▶ 기상 예보·특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징후가 감지된 지역</li> <li>▶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역, 고립예상지역, 노후주택, 노후축대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확인</li> <li>-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하천급류, 하천범람, 파도 휩쓸림 등)</li> <li>- 재난유형별 사전에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인</li> </ul> </li> </ul>

- 위험구역을 설정한 후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안내함
- 위험구역을 설정한 후 마을애플, 자동음성통보, 문자전광판, 지역 TV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대피명령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3. 사전대피 고려사항

- 재난 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현황 파악
  -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 재난 우려지역 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위치적 취약계층) 재난 유형별 우려지역 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주민 등
- 외딴집(獨家)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
- 보호자 연락처, 자력대피 가능여부 및 대피수단(전동휠체어, 차량 보유 등) 등 확인
- 개별법령에 의한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확인
  - (예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 (예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기상 특보 등 확대 우려 시(경보 등)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즉시 가동
- (필요시) 재난 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사전 대피 지시

### 4. 사전대피 결정사항

- (사전대피 대상 및 범위) 사전대피 지역 주민·사람, 자동차·선박
- (안전 대피로 확보) 안전한 대피경로 확인
- (협업체계 가동 여부) 협업체계의 가동 필요성과 협업 범위 결정

- 군부대 : 사전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 경찰서 :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등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 : 사전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 교육지원청 :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등
-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 읍·면·동 단위의 사전대피 안내
- (필요시,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 (대피요원 현장배치 여부) 사전대피 안내 및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 (이동,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대피소 운영 여부) 재난 및 사고 피해의 규모, 사전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 인원, 안전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소 운영(선정) 결정시 확인사항
  - 안정성 (주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물)
  - 수용성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
  - 접근성 (주민 대피 경로를 기준으로 피해가 없는 인접지역)
  - 공공성 (공공시설로서 개보수가 용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  
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호텔, 리조트 등을 활용 할 수 있음
  - 편리성 (기본적 생활 가능. 단 임시생활의 경우 목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 운영)

### 6. 사전대피 알림

- 방송, 확성기, 긴급재난문자(CBS),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애플, 전화, 이동차량, FAX, SNS, 홈페이지 게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대피 알림
- 대피명령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필요시) 주민의 사전대피 안내 및 위험구역, 취약 지역 순찰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필요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사전대피 알림

### 7. 사전대피 실시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사전대피 지원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안내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사전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사전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 8.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

- 사전대피자의 이동 지원
  - 지정된 대피경로가 마련된 경우, 대피경로로 유도
  - 대피로의 파손, 장애물 제거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필요시) 사전대피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확보
  - (필요시) 교통통제 (경찰 지원요청)
- 사전대피자의 안전 확보
  - 지정된 대피장소 개방과 안전성 확인
  - 스스로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위급환자 등 발생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안전취약계층) 건강 상태 확인, 자력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 별도의 대피 수단 확보 등 사전대피 지원
- 사전대피자에 대한 구호 지원
  - 사전대피자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구호 실시

징후 감지		
코드번호 : 40-2	행 동 요 령	조치목적 : 주민대피 조치내용 : 주민대피 준비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 1. 주민대피 준비사항

- 주민대피 담당자 대기
  - 재난 징후 및 상황 발생시 사전 대처 조치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주민대피 담당자 대기 지시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협업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우려 시 주민들의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
    - 대피 동선 및 대피소 공유
    - 비상연락망 및 협업 체계 점검
 (읍·면·동,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 주민대피 필요 자원 확인
  -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필요 물품 확인
    - 정전 및 야간 대피를 위한 물품 등 확인
    - 업무담당자는 물품 부족 등 필요시 즉시 지원요청
    - 개인별 손전등, 비상물품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피안내도 및 위험구역 표지판 등 설치
  - 협업기관에 대해 동원 인력, 장비, 시설 확보 현황 파악
- 주민대피 대상자 수요 사전 파악
  - 대피주민 수, 주민특성(재해약자 등), 위급환자 위치 사전파악
  - 위급환자가 자력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고립지역 거동 불편자 사전 이동조치

## 2. 주민대피 고려사항

### ○ 주민대피 우선순위

- (위치적 취약계층) 하천제방과 접한 지역 및 시가지내 저지대 주민 우선 대피  
: 재난 유형별 우려지역 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주민 등
- (사회적 보호취약계층) 재해약자(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는 차량 동원 우선 대피 :  
재난 우려지역 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 주민대피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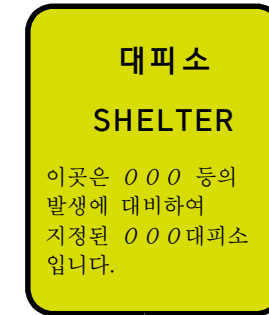
- 재해약자 분류 및 동원 차량 및 담당자 지정
- 일반인은 대피 안내요원(공무원, 군인 등)의 안내에 따라 도보 대피 유도
- 대피장소가 멀어 도보대피가 어려운 지역은 수송차량이 대기하는 1차 집결지 까지 도보로 대피 유도

### 참고자료\_사전대피 준비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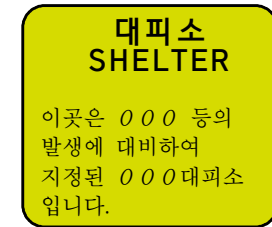
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input type="checkbox"/>
2. 동원 인력, 장비, 시설 사전확보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1) 인력(대피요원, 대피유도 요원 등)을 대피 담당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배치	<input type="checkbox"/>
(2) 장비(지휘봉, 조끼, 메가폰, 대피 지도, 비상등, 방송시설 등) 확보	<input type="checkbox"/>
(3) 시설(대피시설, 대피로 등) 사전 확인	<input type="checkbox"/>
3. 경찰, 소방, 군부대 등과 임무 등에 대해 사전 협조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1) 경찰 :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2) 소방 : 대피 지역 혼란상황 정리 요청	<input type="checkbox"/>
(3) 군부대 : 대피 지역 혼란상황 정리 요청	<input type="checkbox"/>
(4)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4. 대피 요령에 대하여 방송 및 홍보물 준비	<input type="checkbox"/>

### 참고자료\_대피 표지판 규격(안)

#### □ 대피소 표지설치 규격



[기 등 형]



[벽면 부착형]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규 격

- 기등형 : 550mm × 65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부착형 : 300mm × 250mm(철 또는 알루미늄, 황동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주에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소 입구부근 눈에 잘 띄는 곳

참고자료\_임시대피소 표지판 규격(안)

[기 등 형]

[벽면 부착형]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규 격
  - 안내판 : 1,500mm × 60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부착형 : 300mm × 250mm(철 또는 알루미늄, 황동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나 공원 및 언덕 등 눈에 잘 띄는 곳

참고자료\_대피로, 대피소 안내 표지판 규격(안)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 격
  - 안내판 : 600mm × 70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주에 설치
  - \* 벽면 설치시 기등 제거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로 안내가 필요한 눈에 잘 띄는 곳



## 2 초기 대응

### 가. 대응 지침

-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단체장	<p><b>[초동지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li> <li>○ 소관부서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li> <li>○ 소방서장 유선통화→추가상황파악</li> <li>○ 유관기관장 협조 당부</li> <li>○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li> </ul> </li> </ul> <p><b>[상황판단회의 주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본, 통지본 가동 여부 결정 및 현장연락관 임명</li> <li>○ 구조구급 지원 및 유관기관, 중앙기관 지원요청 사항</li> </ul> <p><b>[필요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대책회의 주재 및 현장방문</li> </ul>
안전건설과장	<p><b>[비상대응 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등 13개관계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li> </ul> </li> <li>○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li> <li>○ 비상대응단계 상황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li> <li>○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li> </ul> </li> <li>○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li> </ul> </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지원요청 판단 보고</li> <li>○ 언론홍보 지원</li> </ul> <p><b>[필요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 부군수 대행</li> <li>○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li> </ul>

##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b>상황접수 및 파악</b>
코드번호 : 4-1		조치내용 : <b>상황접수</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의성소방서

### 1. 상황접수

- 안전건설과 (☎ 054-830-6603), (FAX 054-830-6339)
  - 재난종합상황실 (☎ 054-830-6153), (FAX 054-830-6339)
  - 119종합상황실 (☎ 054-834-4119)
  - 당직실 (☎ 054-830-6222), (FAX 054-830-6224)
- ⇒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징후 접수 즉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 ☎ 054-830-6603)에게 접수내용 통보

### 2. 접수 시 확인사항

- 접수상황
  - 접수시간
  - 접수자
  -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상황접수 및 파악
코드번호 : 4-2		조치내용 : 상황파악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의성소방서		

1. 상황파악 시 확인사항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사상자 수 등)
- 현장조치 사항
-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 접수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상황전파 및 보고
코드번호 : 5-1		조치내용 : 상황보고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기관 :		

1. 보고시간 : 최단시간(즉시) ※ 소관부서장 보고 원칙

2. 보고 대상

- 내부

구 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군 수	김주수	054-830-6001	
부군수	설동수	054-830-6005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054-830-6150	
홍보소통담당과장	이선희	054-830-6340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상황실 ☎ 044-205-1540)

주관기관(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자연재난과	과장	최정우	(사) 054) 880-2350	
자연재난과	주무관	류정옥	(사) 054) 880-2368	

3. 보고내용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사상자 수 등)
- 현장조치 사항
-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4. 보고방법 : 先 유·무선, 後 문서(전자문서, NDMS 등) 원칙

초기 대응		조치목적 : <b>상황전파 및 보고</b>
코드번호 : 5-2	<b>행동요령</b>	조치내용 : <b>상황전파</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상황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전파시간 : 최단시간(즉시)

2. 전파대상

○ 상황실→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안전건설과	김종범	054) 830 - 6150	
안전건설과	박우재	054) 830 - 6601	
안전건설과	이종운	054) 830 - 6602	
안전건설과	김민우	054) 830 - 6603	

○ 소관부서→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사고즉시 + 60분)

기관명	관련 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제 3260부대 5대대	안전건설과	054)830-8280	
의성 교육지원청	총무과	054)830-1163	
KT 안동지사	총무과	054)832-0007	
한국전기안전공사	총무과	054)830-9200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건설과	054)854-0019	
적십자북부지역봉사관	복지과	054)859-3931	
의성소방서	안전건설과	054)830-7750	
의성경찰서	안전건설과	054)830-1055	

3. 전파내용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사상자 수 등)
- 현장조치 사항
-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4. 전파방법 : 유·무선, 팩스 등

※ 단, 긴급사항의 경우 선 구두보고 및 관련기관 전파

초기 대응		조치목적 : <b>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b>
코드번호 : 6-1	<b>행동요령</b>	조치내용 : <b>현장출동 지시 및 요청</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현장출동 지시

- 초기대응반 구성, 현장출동 지시
  - 초기대응반 : 읍면장, 주관부서 직원 등
- 초기대응반 임무
  -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조치상황 등 파악
  - 장비·인력 신속 동원 조치(유관기관 인력·장비 파악 등)
  -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 보고
  - 신속한 상황전파

2. 초기대응반 현장상황 보고 지시

- 보고대상 : 상황실, 안전건설과, 등
- 보고내용 : 임무 처리결과

3. 유관기관 현장출동 요청

- 의성소방서, 의성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4. 필요시, 해당 단체장, 주관부서장 현장이동

○ 현장 이동간 임무

주관부서장	단체장·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상황 파악, 도지사, 행정부지사에게 보고</li> <li>❖ 해당 시군에게 현장본부 설치 지원 지시</li> <li>❖ 단체장 도착 전 현장상황 파악 및 관리</li> <li>❖ 지역자율방재단 긴급투입 지시</li> <li>❖ 장비·물자 동원태세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서 장(대응요원) 즉시 출동 지시</li> <li>❖ 이동 간 소방(119상황실)·해경서장, 유관기관 의장 등과 통화, 지속적인 상황파악</li> <li>❖ 소방·해경의 인명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인력·물자 파악</li> <li>❖ 필요시 행정안전부 지원 요청</li> </ul>

○ 현장 도착시 임무

주관부서장	단체장·부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초동 수습상황 확인</li> <li>❖ 장비·물자 등 자원동원 상황 파악·보고</li> <li>❖ 사망, 부상자 현황 및 조치사항 파악</li> <li>❖ 주민대피 및 이재민 상황 확인</li> <li>❖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확인</li> <li>❖ 이재민 구호물자 지급 현황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본부 설치 전 까지 소방·해경 지휘소 방문, 상황파악</li> <li>❖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 긴급동원 및 지원</li> <li>❖ 보건소장에게 사망, 부상자 현황 파악 철저히 지시</li> <li>❖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구호물자 지급 등 즉각 지원태세 확인 지시</li> </ul>

초기 대응		
코드번호 : 6-2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b>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b>
		조치내용 : <b>긴급 현장지원 요청</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제투자과 (이다정)	054-830-6245	-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제투자과 (이다정)	054-830-6245	-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KT (안동지사)	총무과 (조우형)	054-830-6600	- 2차 피해 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3260부대 5대대	안전건설과 (권해림)	054-830-6154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및 추가붕괴 방지 조치 지원

2.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의성경찰서	안전건설과 (김민우)	054-830-6603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터라인 지정운용

3.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보건소	보건소 (손경숙)	054-830-6662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4. 민간전문분야(안전관리자문단 등) 지원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자율방재단	안전건설과 (김민우)	054-830-6603	- 해당 지역 동원인력 및 장비 업무협의

초기 대응		
코드번호 : 7-2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b>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b>
		조치내용 : <b>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보고시기

- 상황총괄반장은 보고서 작성자를 사전 지정 및 작성, 정기보고\*  
\* 중앙대책본부 발표시간 1시간 전(1일 4회 / 05시, 10시, 16시, 22시)

2. 작성요령

-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상황 보고서 작성
  - 각 실무반원이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작성
  - 인명피해 현황은 소방의 대응계획부 및 응급의료소와 협의·작성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코드번호 : 7-3		조치내용 : 재난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공유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재난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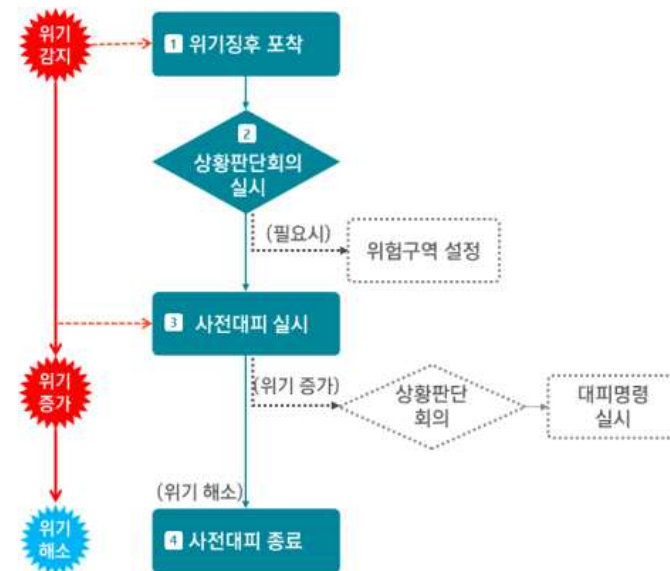
- 발생일자 및 시간
- 발생장소 및 원인
- 피해발생 현황(사상자 수 등)
- 현장조치 사항

2. 보고 대상

구 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군 수	김주수	054-830-6001	
부군수	설동수	054-830-6005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054-830-6150	
홍보담당관장	이선희	054-830-6340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류정옥	054-880-2368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1		조치내용 : 사전대피
사전대피는 행정처분에 따르는 각종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위기 또는 재난상황에서의 주민보호를 목적으로 즉각 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임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절차>



1. 사전대피 상황

-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기상 예·특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징후가 감지된 경우
  -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역, 노후주택, 노후축대 등에 위기징후가 감지된 경우
    - (예시 1) 여름철 집중호우로 ○○강 제방 붕괴위험으로 마을 주민 사전대피
    - (예시 2) 노후화된 아파트의 붕괴위험(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아파트 지역주민 사전대피

- 재난 위험이 거의 임박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예시 3) 태풍 하이선의 강원 동해안 접근으로 주민 사전 대피
  - (예시 4) 경북 안동 산불 발생으로 인근 주민 사전대피
- 대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만한 조건(예시: 야간에 재난발생 예상)들이 확인되는 잠재적 위험 지역이 식별되는 경우
  - 산간, 계곡, 섬, 외딴 마을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 야간, 새벽 등에 잠재적 위험이 식별된 경우
  - 공휴일 또는 행사 등으로 관할 지역 내 인구 유입이 많은 경우 또는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많은 경우

## 2. 위험구역 설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정함 (법 41조)
  - 재난유형별 재난 예·경보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함
  - 개별법령에 의하여 주민의 대피, 소개(疏開) 등 보호조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검토하여 설정함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협의 또는 검토과정을 통하여 설정함

### 참고자료\_위험구역 설정 대상 고려사항

- ▶ 재난 유형별 위험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급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해일위험지구 (폭풍해일 및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 제29조 재난방지사설 지역 확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 ▶ 기상 예보·특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징후가 감지된 지역
- ▶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인
  - 급경사지, 산사태우려지역, 고립대상지역, 노후주택, 노후축대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확인
  -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하천급류, 하천범람, 파도 휩쓸림 등)
  - 재난유형별 사전에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인

## 3. 재난 위험 및 위험구역 안내

- 위험구역을 설정한 후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안내함
  - 위험구역을 설정한 후 마을앱, 자동음성통보, 문자전광판, 지역 TV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대피명령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4. 사전대피 고려사항

- 재난 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현황 파악
  -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 재난 우려지역 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위치적 취약계층) 재난 유형별 우려지역 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주민 등
- 외딴집(獨家)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
- 보호자 연락처, 자력대피 가능여부 및 대피수단(전동휠체어, 차량 보유 등) 등 확인
- 개별법령에 의한 ‘대피계획’,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 확인
  - 주민대피 관리·판단 또는 결정기준, 범위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예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 (예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 및 마을 상황 확인
  - 읍·면·동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 확인
  - 마을단위 자체적 상황판단회의 결과 공유
- 기상 특보 등 확대 우려 시(경보 등)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즉시 가동
- (필요시) 재난 우려지역 내 취약계층 사전 대피 지시

### 5. 사전대피 결정사항

- (사전대피 대상 및 범위) 사전대피 지역 주민·사람, 자동차·선박
- (안전 대피로 확보) 안전한 대피경로 확인
- (협업체계 가동 여부) 협업체계의 가동 필요성과 협업 범위 결정
  - 군부대 : 사전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 경찰서 :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등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 : 사전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 교육지원청 :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등
  -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 읍·면·동 단위의 사전대피 안내
  - (필요시,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 (대피요원 현장배치 여부) 사전대피 안내 및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이동,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대피소 운영 여부) 재난 및 사고 피해의 규모, 사전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 인원, 안전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대피소 운영(선정) 결정시 확인사항
    - 안정성 (주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물)
    - 수용성 (지역의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
    - 접근성 (주민 대피 경로를 기준으로 피해가 없는 인접지역)
    - 공공성 (공공시설로서 개보수가 용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
      - 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민간과 협의하여 호텔, 리조트 등을 활용 할 수 있음
    - 편리성 (기본적 생활 가능. 단 임시생활의 경우 목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 운영)

### 6. 사전대피 알림

- 방송, 확성기, 긴급재난문자(CBS),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앱, 전화, 이동차량, FAX, SNS, 홈페이지 게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사전대피 알림
  - 대피명령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앱을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

### 사항 등 방송 실시

- (필요시) 주민의 사전대피 안내 및 위험구역, 취약 지역 순찰을 위한 공무원 현장 배치
  -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대피장소로 이동 유도
- (필요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사전대피 알림

사용기관명	① 현재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야영객, 산간계곡, 저지대, 하천인근 주민은 <u>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를 알립니다.</u>
재난 또는 위험상황 설명	② 오늘 ○○시 ○○저수지 붕괴 위험, 인근주민과 야영객은 <u>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를 권고합니다.</u>
사전대피 알림	

### 7. 사전대피 실시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사전대피 지원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안내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사전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사전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 8. 현장의 사전대피 지원

- 사전대피자의 이동 지원
  - 지정된 대피경로가 마련된 경우, 대피경로로 유도
  - 대피로의 파손, 장애물 제거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필요시) 사전대피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확보
  - (필요시) 교통통제 (경찰 지원요청)
- 사전대피자의 안전 확보
  - 지정된 대피장소 개방과 안전성 확인
  - 스스로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위급환자 등 발생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사전대피자에 대한 구호 지원
  - 사전대피자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구호 실시

초기 대응		조치목적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2	행동요령	조치내용 : 주민대피 준비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 1. 주민대피 준비사항

- 주민대피 담당자 대기
  - 재난 징후 및 상황 발생시 사전 대처 조치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주민대피 담당자 대기 지시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협업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우려 시 주민들의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
    - 대피 동선 및 대피소 공유
    - 비상연락망 및 협업 체계 점검
 (읍·면·동,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
- 주민대피 필요 자원 확인
  -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필요 물품 확인
    - 정전 및 야간 대피를 위한 물품 등 확인
    - 업무담당자는 물품 부족 등 필요시 즉시 지원요청
    - 개인별 손전등, 비상물품 등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피안내도 및 위험구역 표지판 등 설치
  - 협업기관에 대해 동원 인력, 장비, 시설 확보 현황 파악
- 주민대피 대상자 수요 사전 파악
  - 대피주민 수, 주민특성(재해약자 등), 위급환자 위치 사전파악
  - 위급환자가 자력 대피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담당자 별도 지정
  - 고립지역 거동 불편자 사전 이동조치

### 2. 주민대피 고려사항

- 주민대피 우선순위
  - (위치적 취약계층) 하천제방과 접한 지역 및 시가지내 저지대 주민 우선 대피
    - 재난 유형별 우려지역 내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주민 등
  - (사회적 보호취약계층) 재해약자(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는 차량 동원 우선 대피
    - 재난 우려지역 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주민대피 지원방안
  - 재해약자 분류 및 동원 차량 및 담당자 지정
  - 일반인은 대피 안내요원(공무원, 군인 등)의 안내에 따라 도보 대피 유도
  - 대피장소가 멀어 도보대피가 어려운 지역은 수송차량이 대기하는 1차 집결지 까지 도보로 대피 유도

#### 참고자료\_사전대피 준비 체크리스트

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input type="checkbox"/>
2. 동원 인력, 장비, 시설 사전확보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1) 인력(대피요원, 대피유도 요원 등)을 대피 담당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배치	<input type="checkbox"/>
(2) 장비(지휘봉, 조끼, 메가폰, 대피 지도, 비상등, 방송시설 등) 확보	<input type="checkbox"/>
(3) 시설(대피시설, 대피로 등) 사전 확인	<input type="checkbox"/>
3. 경찰, 소방, 군부대 등과 임무 등에 대해 사전 협조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1) 경찰 :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2) 소방 : 대피 지역 혼란상황 정리 요청	<input type="checkbox"/>
(3) 군부대 : 대피 지역 혼란상황 정리 요청	<input type="checkbox"/>
(4)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협조 요청	<input type="checkbox"/>
4. 대피 요령에 대하여 방송 및 홍보물 준비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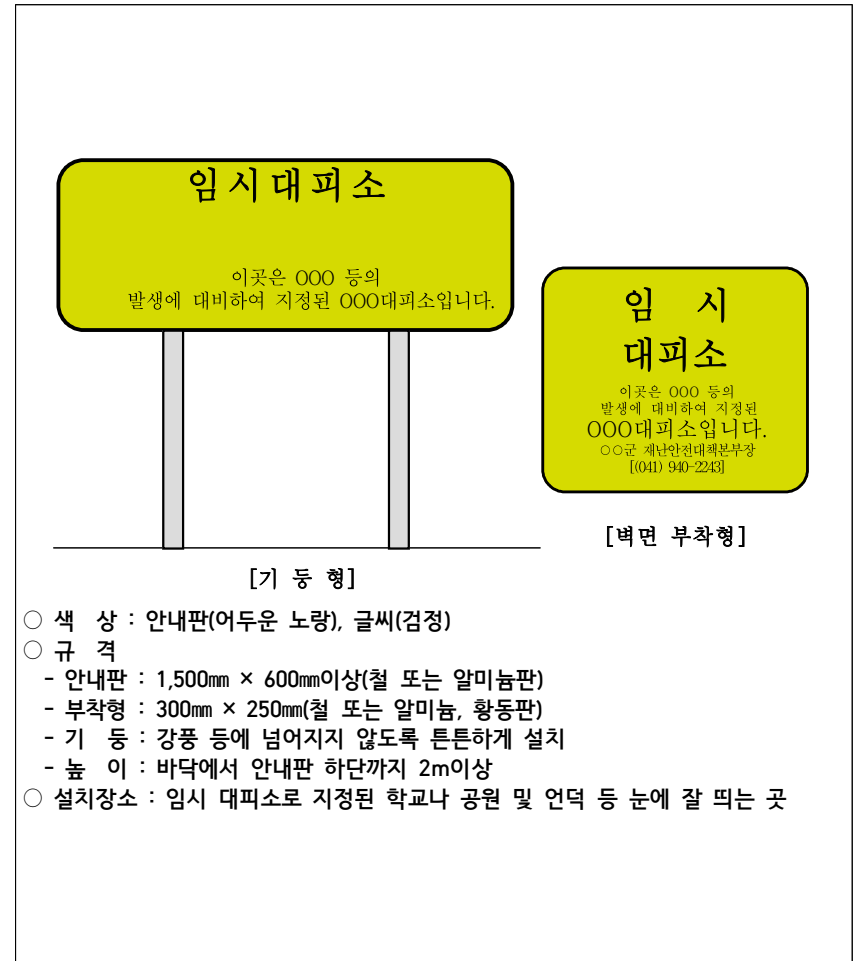
참고자료\_대피 표지판 규격(안)

□ 대피소 표지설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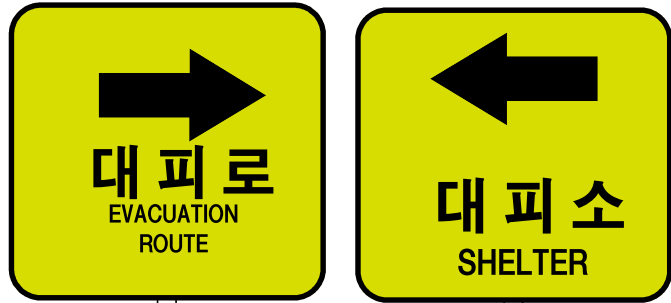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규 격
  - 기동형 : 550mm × 65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부착형 : 300mm × 250mm(철 또는 알루미늄, 황동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주에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소 입구부근 눈에 잘 띄는 곳

참고자료\_임시대피소 표지판 규격(안)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규 격
  - 안내판 : 1,500mm × 600mm이상(철 또는 알루미늄판)
  - 부착형 : 300mm × 250mm(철 또는 알루미늄, 황동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나 공원 및 언덕 등 눈에 잘 띄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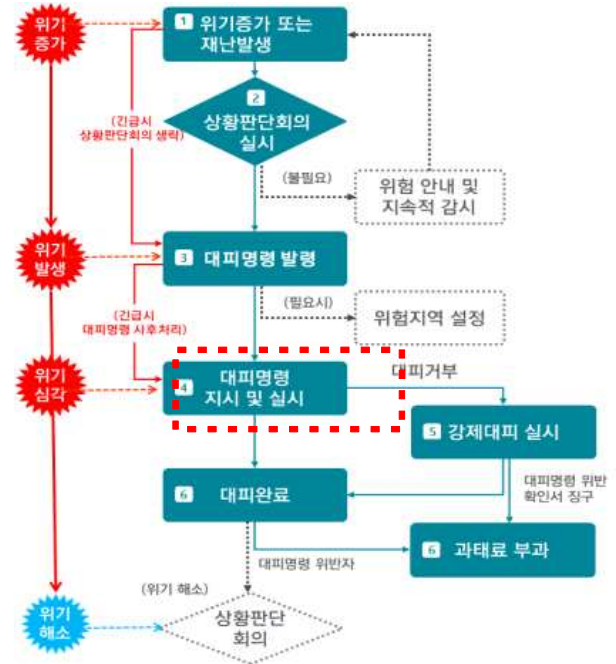
참고자료\_대피로, 대피소 안내 표지판 규격(안)



- 색 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반사지 사용
- 규 격  
 - 안내판 : 600mm × 700mm(철 또는 알루미늄판)  
 - 기 등 : 강풍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전주나 가로등주에 설치  
 ※ 벽면 설치시 기등 제거  
 - 높 이 :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설치장소 : 대피로 안내가 필요한 눈에 잘 띄는 곳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6		조치내용 : 대피명령 지시 및 실시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절차>



1. 대피명령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현장책임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동장)에게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대피 안내요원 등)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 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단, 대피담당자의 주민대피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보고는 자체

## 2. 대피 협조체계 가동

- 군부대 등 유관기관별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요청
- 경찰서에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추가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를 위한 경찰력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준비 요청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 교육지원청에 초·중·고등학교 임시휴교 및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요청
- (필요시)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요청(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3. (주민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 주민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재난 및 사고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병행 홍보 준비
- (내용) ①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②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대피장소로 이동 유도

## 4. (자동차, 선박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둔치주차장 관리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선박 등의 소유자·점유자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내용) ①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② 자발적으로 자동차, 선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

## 5. 대피 실시

- 대피상황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보유 방송설비 및 확성기 등 즉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위험상황임을 알리고 대피토록 방송
  - 재난발생 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 대상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 요청
    - 홍보담당관 : 주민대피 사항 관내 홍보 (언론매체 홍보요청 및 자체 홍보)
    - 방송사 : 안전총괄담당관 및 소방서(긴급구조통제단장) 요청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근거)
  - 자치행정과 : 주민대피 총괄 책임자와 마을별 책임자에게 주민대피 협조요청

참고자료\_담당자 주요임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임무	확인
총괄담당자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input type="checkbox"/>
	○ 안내요원·대피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현장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실시간 파악)	<input type="checkbox"/>
	○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 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	○ 대피지시 확인 즉시 담당지구 주민 대피 안내	<input type="checkbox"/>
	-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대피 안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 대피소, 안전한 대피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안내	<input type="checkbox"/>
	-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피 후 또는 대피 과정 중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적극 만류	<input type="checkbox"/>
	-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	<input type="checkbox"/>
	- 위급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input type="checkbox"/>
대피담당자	- 주민대피 후 치안 필요시 경찰에 협조요청	<input type="checkbox"/>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input type="checkbox"/>
	○ 담당한 재해약자를 지정된 대피방법으로 지정된 대피장소로 최우선 대피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요청 - 직접 병원이나 119, 경찰 등에 지원요청(사후보고)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	<input type="checkbox"/>	

### 6 대피명령 지원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 해당 지역의 주민 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
  - (대피수단 등) 대피를 위하여 인력·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
  - (협조체계)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 주민대피 장애요인 파악
-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대피장소) 상황 파악
  - 대피로의 파손여부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
- 안전취약계층의 상태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 건강상태, 대피수단의 유무, 자력대피 가능여부(가족 등),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
  - 안전취약계층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 현장의 주민대피 현황 파악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대피 현황 파악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 (대피 불응 또는 방해자)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조치
- (위급환자 등 발생)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대피자 구호 지원) 대피자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 계획에 의거 구호 실시

### 7. 대피완료

- 주민대피 상황보고
  - 주민대피 지시 명령에 따라 대피를 실시하며 보고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 보고시기 : 필요시/수시
    - 보고내용 : 대피시작 시각 및 현지 상황, 지원요청 등
  - 대피완료 후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보고
    - 대피지구명, 대피장소, 대피인원, 피해현황, 완료시각 등

참고자료\_담당자 주요임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임무	확인
총괄담당자	○ 안내요원, 대피담당자로부터 보고 접수	<input type="checkbox"/>
	○ 상황계획서에 의거 NDMS에 입력·보고	<input type="checkbox"/>
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철수 전에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 대피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주민 대피 완료 확인 직후	<input type="checkbox"/>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등 개략적인 내용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지구별 대피인원 파악 후	<input type="checkbox"/>
대피담당자	○ 보고내용 : 대피소별 인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재해약자 대피완료 직후 안내요원에게 보고	<input type="checkbox"/>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이름, 현 상황, 지원필요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	<input type="checkbox"/>

- 대피자에 대한 주거 지원 (지자체→대피자)
  - 지자체 (구호업무 담당자 등)
  - 대피명령을 받아 대피한 주민 등(강제대피조치 된 주민 등 포함)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 실시 가능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주민대피 조치내용 : 강제대피
코드번호 : 40-12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는 주민 등은 강제 대피 (재난안전법 제42)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와, 산림녹지와 협업기관 :

### 1. (주민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소방, 경찰
- (절차) 최종 안내 후 강제대피 하지만 위급한 경우 안내 생략 가능
  - ①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을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또는 대피장소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로 강제 이동
- (기타)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2. 대피발령 경고

-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안내
  - (1차 경고) 대피명령 발령 사실 안내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함
  - (2차 경고) 강제대피 실시 전 대피명령 재홍보함
  - (대피명령 최종 안내 전) 차량 블랙박스·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 촬영
    - 앱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자는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

### 3. 강제대피 실시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 (주체) 지자체(주민대피 총괄 책임자, 마을 책임자 등), 소방, 경찰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방법)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 (기타사항)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지자체, 소방, 경찰)

### 4 (자동차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보험사)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보험사
- (내용)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차량 대한 강제 견인 (견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
- (기타) 강제 견인 후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5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강제대피 조치를 한 행정청 (지자체, 소방, 경찰)
- (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 또는 대피장소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아 강제 대피가 실시된 자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한 자(이하 “강제대피자 등” )
- (내용) 강제대피자 등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집
- (방법) 강제대피자 등에게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를 기입하도록 요청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2호

### 6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지자체 통보 (소방·경찰 → 지자체)

- (주체)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한 소방·경찰
-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에 통보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법 제66조 제1항)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코드번호 : 7-4			조치내용 :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지원부서 : 경상북도 13개 협업부서 및 해당 시군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필요자원 파악

○ 응급대응 중장비 현황

구분	계	응급복구장비					
		불도저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견인차	기타
	110	1	28	66	9	6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지원요청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지원요청
-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간 자원 지원·조정, 시도 내 시군구간 자원 지원·조정
- 자치단체간 지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회 등 MOU체결 등 적극 활용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코드번호 : 7-5			조치내용 :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회의주재 : 도지사

※ 상황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2. 회의 내용

- 비상기구(통지본, 지대본) 운영 여부 결정
- (필요시) 위기경보단계 결정
- 현장연락관 임명(지명)
- 긴급조치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피해확산 방지 방안
- 구조구급 지원 사항
- 유관기관 지원요청 사항
- 상급기관 지원요청 사항

3. 참석대상 및 연락처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054) 830-6150	
복지과	복지과장	박경숙	054) 830-6160	
환경축산과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054) 830-6180	
지역재생과	지역재생과장	박재운	054) 830-6330	
경제투자과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054) 830-6270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장	이선희	054) 830-6340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장	김봉수	054) 830-6290	
보건소	보건소장	김칭환	054) 830-6650	
총무과	총무과장	이중우	054) 830-608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054) 830-6960	
의성소방서	의성소방서장	김진욱	054) 830-7750	
의성경찰서	의성경찰서장	장근호	054) 830-8280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가동
코드번호 : 7-8		조치내용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대상
  - 현장 방문 장·차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2. 보고자
  - 부단체장 브리핑 원칙
3. 장소
  - 보고서 작성과 실무반의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별도 공간을 확보, 확인된 상황만 브리핑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1		조치내용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킴을 상기하기 바람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2		조치내용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경상북도 13개 협업부서 및 해당 시군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보도자료 작성

- 배포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코드번호 : 11-1		조치내용 :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재난피해 현황대상

- 재난 피해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난피해 현황” 작성
- 일별로 “이재민 상세정보”를 작성함으로써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피해 현황	인명피해	_____ :명	사망: _____ 명, 부상 _____ 명, 실종 _____ 명		
	이재민 피해	_____ :명 ( _____ 가구)	✓ 이재민 상세정보		
	재산피해	_____ :백만원	피해 시설명	_____	_____ : 백만원
				_____	_____ : 백만원
기타			_____	_____ : 백만원	

번호	성명	이재민 발생			개인인적사항				가족 동반 (수)	구호품 지급확인	입소 일	퇴소일
		일시	지역	요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1												

2. 이재민 피해규모 산출

발생지역(위치)	인구수	이재민 현황	이재민 규모	비고
○○읍·면·동	_____ :명 ( _____ 가구)	_____ :명 ( _____ 가구)	_____ :명 ( _____ 가구)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코드번호 : 11-9			조치내용 : 임시주거시설 확보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기본) 학교, 마을회관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
  - \* 장기주거는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
- (기타) 찜질방·여관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비용 지원 가능
  - \* 소요비용은 시도 재해구호기금 및 지자체 예비비 등으로 사용

구분	계		학 교		교 회		마을회관		절		관공서		기 타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의성읍	56	4,024	14	1,531	11	1,400	24	593	5	250	1	200	1	50
단촌면	10	854	1	300			9	554						
점곡면	5	548	1	400			4	148						
옥산면	21	1,080	2	500	5	320	14	260						
사곡면	32	1,712			11	550	20	875			1	287		
춘산면	23	1,530	1	500	2	100	19	430			1	500		
가음면	19	813	1	400	1	120	17	293						
금성면	7	660	1	100			6	560						
봉양면	3	300	3	300										
비안면	2	100	2	400										
구천면	5	200	1	100	2	60	2	40						
단밀면	9	100					9	100						
단북면	2	260	1	200									1	60
안계면	2	500	2	500										
다인면	3	500	1	400			2	100						
신평면	2	230					1	80			1	150		
안평면	38	1,977	2	800	10	468	24	331	2	139				
안사면	1	180	1	180										
계	240	15,568	34	6,611	42	3,018	151	4,364	7	389	4	1,137	2	110

2.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 지역별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과거 재해발생빈도, 침수 흔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의 규모와 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 3.3m<sup>2</sup>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수용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않음

초기 대응	<b>행 동 요 요 요</b>	조치목적 :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코드번호 : 14-1		조치내용 : 긴급통신지원
주관부서 : 총무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상황확인 및 출동
  - 현장상황관리요 긴급통신 단말기 지급(주관부서 담당자 수령)
  - 재난상황실 통신 단말기 비치운영
2. 재난현장 통신응급복구반 지원
  - 현장 통신지원을 위한 KT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통신 지원 인력 파악
3. 긴급통신 수요파악 및 자원확보
  -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통신 수요파악 → 설치장소, 수요량(유선, 인터넷, FAX 등)
  - 상황실 및 현장통합지원본부간 통신회선 구성요청(KT)
  - 사고지역 이동통신 전화폭부 장애대비 → 이동통신사(KT, SKT, LGU+)에 이동기지국 설치 등 대책강구
  - 현장 정보통신지원반 구성(4명) → 전화기 및 PC설치 운용요원
  - 현장통합지원본부 정보통신시설 설치 운영요원 파견(정보통신 지원반)//현장상황고려
4. 긴급통신 지원 완료
  - 운영단말기 사전준비 → 일반전화기(12대), PC(12대), FAX(1대) 보유
  - 상황실 및 통지본간 통신회선 구성 완료
5. 추가 통신지원 파악 및 지원지속
  - 유가족 대책상황실, 자원봉사 지원등 통신수요 예상
    - 유선전화 설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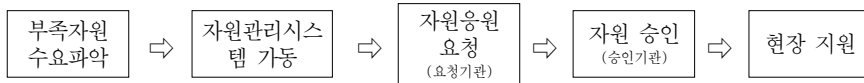
- 지역내 지정된 긴급통신수단 현황을 조사
- (1)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긴급통신수단을 선정하고 (2) 선정된 수단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가능한 수단의 경우 (3) 대체수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 대체수단이 필요한 긴급통신수단의 경우 대체 긴급통신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함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코드번호 : 16-2		조치내용 : 응급복구 지원 준비 요청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 행정지원반은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 파악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응원 요청, 신속한 자원 지원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응원 절차 >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원요청
-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간 자원 응원·조정, 시도는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 자치단체간 응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회 등 MOU체결 등 적극 활용

초기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코드번호 : 16-4		조치내용 : 응급복구 장비 보유현황 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 경상북도 13개 협업부서 및 해당 시군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등의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현황을 파악 및 산출

- 응급대응 중장비 현황

구 분	계	응 급 복 구 장 비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불도저	견인차	기타
	110	66	28	9	1	6	

- 응급대응 기타장비 현황

구 분	용접기	콤프레샤	양수기	착암기	절단기	천공기	전기복구차량	계
	13	1	174		5	3	7	203
행정			149					149
유관기관			25				7	32
민간	13	1			5	3		22

초기 대응		
코드번호 : 24-1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 교통두절 지역 무회교통 수단 마련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교통통제 협조요청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 협조안내문과 노선변경, 통제구간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함

재난「○○」의 영향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통행을 제한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은 도로 통행 및 보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또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시 행 처 : ○○재난안전대책본부
- 나. 기 간 : 2000년 00월 00일 00:00 ~ 00월 00일 00:00
- 다. 장 소 : ○○지역 전체 및 주변도로

□ 시내버스 노선변경

- 통제시간 : 00:00 ~ 00:00
- 통제구간 : 00km
- 시내버스 우회운행 대상 : ○개 노선 (○개업체)

노선번호	현행노선	변경노선

- 버스운행노선이 위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내 입간판과 교통통제 전단지, 도로변 문자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노선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행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기 대응		
코드번호 : 27-1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조치내용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응급의료지원반 소집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도와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사고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소모품, 약물 및 기타 장비 준비
- 현장응급의료지원반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 확보
- 각 반과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확보(5대 이상)
- 기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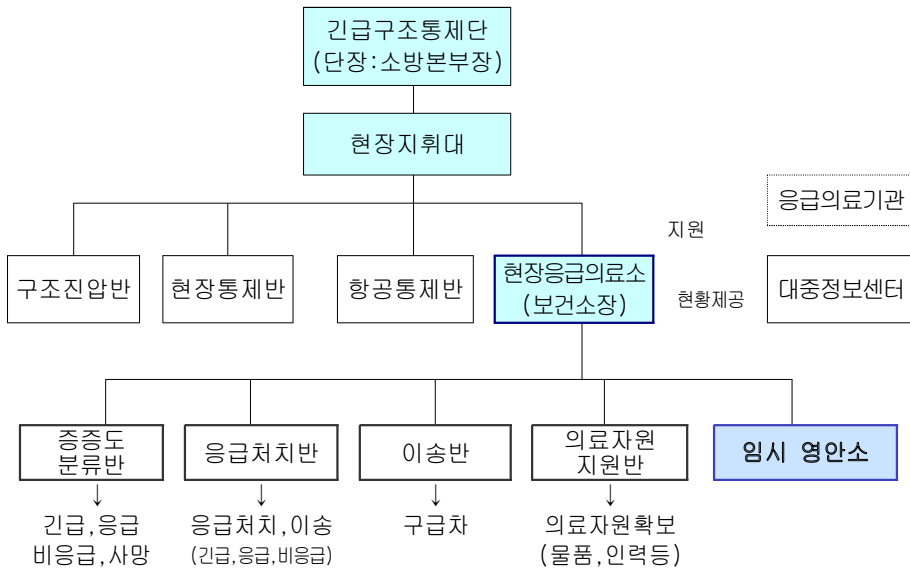
- 안전성 : 2차 재해의 위험이 없으며 군중에 의한 혼란의 염려가 없는 장소
- 접근성 : 구급차의 진입과 이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신축성 : 환자의 수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소
- 용이성 : 지형이 평평하고 응급처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근접성 : 재난·재해 현장과 현장지휘소에 가까운 장소

초기 대응	<b>행 비 요 편</b>	조치목적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
코드번호 : 27-2		조치내용 :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설치장소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사고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재난 현장과 현장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통신이 확보되고 제2의 사고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환자의 수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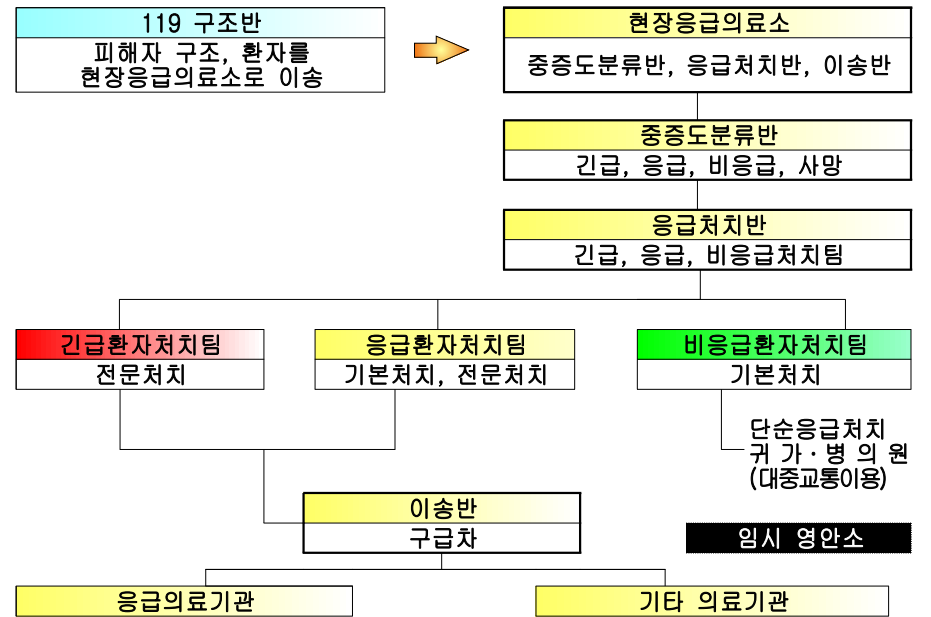
< 현장 응급의료소 조직체계 >



2.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
현장응급의료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소 설치</li> <li>•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li> </ul>
의료자원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물품요청</li> <li>• 구급차 대기 운영</li> <li>• 의료자원 확보 및 지원</li> </ul>
분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한 의사배치</li> <li>• 사상자 중증도 분류(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li> </ul>
응급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li> <li>•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li> <li>•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실무지원반에게 지원요청</li> </ul>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li> <li>•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li> <li>•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동</li> </ul>
임시영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 현황파악</li> <li>• 개인 소지물품 보관</li> <li>• 시신방부처리</li> </ul>

3. 현장 응급의료 지원업무 흐름도



초기 대응	<b>행 비 요 편</b>	조치목적 : <b>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b>
코드번호 : 27-3		조치내용 : <b>부상자 분류 및 현장 응급처치</b>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부상자 분류

- 중증도 분류의 원칙
  - 사상자의 생사 여부와 소생가능성 판정
  - 모든 사상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평가하여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면서 기도확보 유지
  -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처치나 이송하지 않을 것
- 중증도 분류 방법
  - 중증도 일반 분류

분류	분류색	환자의 중증도
긴급환자	적 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황 색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 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관계가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 색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표 작성
  - 의식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 분류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두 기록
    - 환자정보, 주증상 및 진단명, 분류결과, 처리결과, 이송기록, 활력징후, 과거력, 치료기록
  - 처치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
  -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중증도 분류표 부착

2. 현장 응급처치

- 응급처치구역(긴급환자처치팀, 응급환자처치팀, 비응급환자처치팀)을 구분하고 팀별 표지판 설치(입구와 출구)
- 환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각 팀별 응급처치 실시
- 환자들의 응급처치 후 귀가 또는 이송을 판정하여 조치
- 현장응급의료소장에게 환자들에 대한 현황 보고
-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배치
  - 환자 들것 1개당(에어매트리스 등) 다음의 장비를 1개씩 비치
    - 수액투여 : 수액세트, 수액 받침대
    - 청진기와 혈압기
    - 기도유지기와 산소마스크
    - 휴대용 산소통
    - 흡입기
    - 외상 세트 : 소독거즈, 탄력붕대, 삼각대, 의복 절개 가위
  - 응급처치반 3개팀의 중심부에 공통 장비 비치
    - 응급시술을 위한 소독 기구
    - 기도관 세트와 응급기도확보 장비 세트
    - 주사기와 주사침
    - 드래싱 세트
    - 쇼크방지용 하의(MAST)
    - 척추 혹은 골절 고정 장비
    - 체세동기
    -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 휴대용 인공호흡기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코드번호 : 34-3		조치내용 : 대규모 폐기물 대비 장비 동원 체계 점검
주관부서 : 환경축산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재난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내 임시적환장과 분뇨처리적환장 현황을 통한 사용가능 여부 확인
2. 재난 피해현장을 고려하여 대상시설을 지정
3. 재난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내 처리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요청 수량 작성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확인

임시쓰레기/분뇨처리 적환장	주소	면적(㎡)	관리자	현재 용도
금성적환장	금성면 군위금성로 1009-63	3,300	오은정	폐기물처리
다인적환장	다인면 용무2길 92-87	6,400	오은정	폐기물처리
의성적환장	의성읍 동부로 3085	13,713	오은정	폐기물처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 장비 현황 확인

구분	집계차		청소차		압출차		압착차		덤프		(...)	
	확보	지원	확보	지원	확보	지원	확보	지원	확보	지원	확보	지원
의성군									2	2		
(주)대표건설환경			9	9								

4. 장비동원체계 점검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의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834-5119	- 소방 인력 및 급수장비 지원
3260부대 5대대	군수과	834-1055	- 가뭄지역 병력 및 장비 지원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코드번호 : 34-10		조치내용 : 재난폐기물 발생 상황모니터링
주관부서 : 환경축산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쓰레기 매립량을 확인
  - 운영중인 매립시설 가동 가능 여부 확인
  - 임시적환장 지정 현황 및 가동 가능 여부 확인

임시쓰레기/분뇨처리적환장	주소	면적(㎡)	처리 가능량 (㎡)	장비 집결가능 대수	현재 용도	사용가능 확인	대상 시설 지정
금성 적환장	금성면 군위금성로 1009-63	3,300				■ 가능 □불가능	□
다인 적환장	다인면 용무2길 92-87	6,400				■ 가능 □불가능	■
의성 적환장	의성읍 동부로 3085	13,713				■ 가능 □불가능	■

- 과거 사례를 참조하여 재난 폐기물 발생량 추정→ 예상 발생량 산정
- 재난 폐기물 발생량 취합을 통한 발생량 확인

2. 쓰레기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함

지 역	발생량	수거량	처리량	보관량	담당자	연락처

초기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주민대피(필요시)
코드번호 : 40-5		조치내용 : 대피명령 지시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대피명령 지시

- 대피안내 방송(경보, 사이렌, 방송 등)
- 지자체 담당자, 유관기관에 대피 명령

재난 「○○」의 영향으로 ○○이 예상되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대피명령을 발령하니 해당지역 주민과 당해 지역안에 있는 주민은 관계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발령일시 : 2000년 00월 00일 00:00
- 나. 발령지역 : 00구 00지역 일원
- 다. 대피장소 : 00구 00동 00초등학교. 끝.

- 주민대피 경보발령 방송 문안
- 주민대피 경보발령을 재난 유형, 피해형태에 따른 행동요령과 함께 작성함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훈련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우리지역에 화산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예상 되므로 훈련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상황은 훈련상황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재난안내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성군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건물로 대피합니다.  
 (1회 더 반복방송)  
 이상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주민대피훈련 대피 표지판 규격(안)에 따라 작성함
- 주민대피훈련 대피 표지판 규격(안)

<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상세규격 > 단위mm



- (글자체) 맑은고딕, 진하게, 자폭 100%, 자간 0, 가운데정렬
- (글자크기) 표지판명 : 한글 261pt, 영문 161pt / 안내문 : 151pt  
 시군구명 : 151pt / 관리번호 : 80.5pt

시군구명 표시방법	관리번호 표시방법
<b>엠블럼, 210×50(mm)</b> 	
<b>글자 : 2~4글자, 210×50(mm)</b> 	
<b>글자 : 5글자 이상, 높이 50mm 유지</b> 	



2단계 초기 대응

- 주민대피훈련 대피 표지판 규격(안)  
- 임시대피소 표지판

< 지진 옥외대피장소 방향표지판 상세규격 > 단위mm



- (글자체) 맑은고딕, 진하게, 자폭 100%(영문 85%), 자간 0, 가운데정렬
- (글자크기) 방향표시 : 115pt  
지진 옥외대피장소 명칭 : 한글 85.5pt, 영문 55pt

□ 재질 및 색상

- (재질) 표지판 : AL 3T, "KS D 6701의 A5052P-H24" 강도 이상의알루미늄 또는 합성수지(철재 사용금지, 부식 우려)
- (재질) 반사지 : "KS A 3507" 적용, 인공내후성시험 통과 제품 사용, 형광 초고휘도 반사지 / 스카치 프린트 / 투명 플라스틱 필름코팅
- (재질) 지 주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 (색상) 바탕 : 노랑색 5Y 8.5/14, #FFDC00 / 흰색 #FFFFFF  
심 불 : 초록색 2.5G 4/10, #007F48  
글(한영) : 검정색 #000000 / 테두리 : 검정색 #000000

3단계 비상 대응

3 비상 대응

가. 대응 지침

-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

나. 지휘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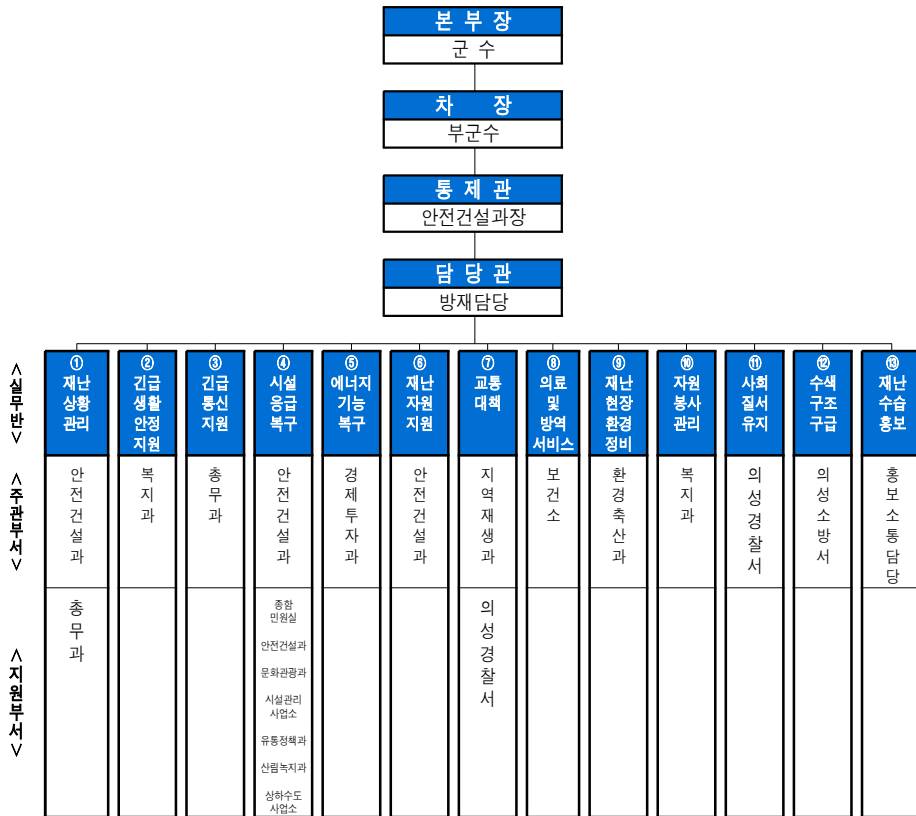
구 분	임무와 역할
군수	<p>[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li> <li>○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부군수)</li> <li>○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li> <li>○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붕괴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li> <li>-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및 이재민 구호소운영 지시</li> </ul> </li> <li>○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li> <li>○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li> </ul> <p>[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 : 군수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li> </ul> </li> </ul>
안전건설과장	<p>[지대본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수 또는 부군수 보좌</li> <li>○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li> <li>○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li> <li>○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li> <li>○ 상황판단회의 후조치 이행(지대본 운영)</li> <li>○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li> <li>○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li> <li>○ 대외 발표 준비</li> <li>○ 행·재정 지원</li> </ul> <p>[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 행동요령 등 인터뷰</li> </ul>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비상 대응 코드번호 : 8-1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 지대본 설치 및 가동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편제구성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2. 주요임무

- 본부장(군수) : 본부의 대표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를 총괄
- 차장(부군수) :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 통제관(도시환경국장) :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실무반을 지휘
- 담당관(안전건설과장) : 본부운영의 실무 책임자로서 통제관을 보좌
- 실무반 :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자연재난과 직원 및 13개 협업부서와 자연재난관리 책임 해당 시군,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

비상 대응 코드번호 : 8-2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b>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b>
		조치내용 : <b>지대본 실무반 편성</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평상시

차 장	부군수
통 제 관	도시환경국장
담 당 관	안전건설과장
실 무 반	안전건설과 및 13개 협업부서에 소속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

※ 안전건설과장은 필요한 경우, 책임기관 및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자연재난

2. 자연재난

○ 비상1단계 : 호우 및 대설 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발효

본 부 장	단체장	
차 장	부단체장	
통 제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실국장	
담 당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b>근무인원</b>	<b>총 6+α 명</b>	
① 재난상황관리 (6명)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	안전총괄업무 담당부서(3)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1)
	상황보고서 작성(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지원반(α)	②긴급생활안정지원(α) ③긴급통신지원(α) ④시설응급복구(α) ⑤에너지기능복구(α) ⑥재난자원지원(α) ⑦교통대책(α) ⑧의료및방역서비스(α) ⑨재난현장환경정비(α) ⑩자원봉사관리(α) ⑪사회질서유지(α) ⑫수색,구조·구급(α) ⑬재난수습홍보(α)	

- 1) 상황관리 총괄반 :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
- 3) 협업기능별·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연도 자연재난대비 비상대응 계획에 따름

○ 비상2단계 : 호우·강풍·대설 경보,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효

본 부 장	시장	
차 장	행정부시장	
통 제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실국장	
담 당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b>근무인원</b>	<b>총 8+α+β 명</b>	
① 재난상황관리 (8명)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5)	안전총괄업무 담당부서(3)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1)
	행정지원반(1)	총무업무 담당부서(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지원반(α)	②긴급생활안정지원(α) ③긴급통신지원(α) ④시설응급복구(α) ⑤에너지기능복구(α) ⑥재난자원지원(α) ⑦교통대책(α) ⑧의료및방역서비스(α) ⑨재난현장환경정비(α) ⑩자원봉사관리(α) ⑪사회질서유지(α) ⑫수색,구조·구급(α) ⑬재난수습홍보(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공사 등	

- 1) 상황관리 총괄반 : 소관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
- 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
- 3) 협업기능별·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 계획에 따름

○ 비상3단계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본 부 장	시장	
차 장	행정부시장	
통 제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실국장	
담 당 관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 $\alpha$ + $\beta$ 명	
① 재난상황관리 (10명)	반 장(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5)	안전총괄업무 담당부서(3)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2)
	상황보고서 작성(1)	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1)
	행정지원반(3)	총무업무 담당부서(3)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협업지원반( $\alpha$ )	② 긴급생활안전지원( $\alpha$ )	③ 긴급통신지원( $\alpha$ )
	④ 시설응급복구( $\alpha$ )	⑤ 에너지기능복구( $\alpha$ )
	⑥ 재난자원지원( $\alpha$ )	⑦ 교통대책( $\alpha$ )
	⑧ 의료및방역서비스( $\alpha$ )	⑨ 재난현장환경정비( $\alpha$ )
	⑩ 자원봉사관리( $\alpha$ )	⑪ 사회질서유지( $\alpha$ )
	⑫ 수색, 구조·구급( $\alpha$ )	⑬ 재난수습홍보( $\alpha$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공사 등	

- 1) 상황관리 총괄반 : 소관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
-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 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
- 3) 협업기능별·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 연도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 계획에 따름

○ 자연재난 실무반별 임무와 역할

기능 유형	담당부서	주요 임무와 역할
① 재난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총괄업무 담당부서</li> <li>소관 자연재난업무 담 당부서</li> <li>총무업무 담당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li> <li>상황판단회의 주관</li> <li>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li> <li>재난상황 보고서 작성</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 처리</li> <li>재난재해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파악</li> <li>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li> <li>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li> <li>본부장차장의 특별지시사항 처리</li> </ul>
② 긴급생활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생활지원업무 담 당부서</li> <li>사망실종자유족 대 책업무 담당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li> <li>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li> <li>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li> <li>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li> <li>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li> </ul>
③ 긴급통신지원	긴급통신지원업무 담 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li> </ul>
④ 시설응급복구	소관시설응급복구업무 담당부서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⑤ 에너지기능복구	에너지기능복구업무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li> </ul>
⑥ 재난자원지원	물자관리 등 업무 담 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li> <li>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li> <li>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 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li> </ul>
⑦ 교통대책	교통업무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li> <li>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li> </ul>
⑧ 의료및방역서비스	의료·방역업무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li> <li>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li> <li>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li> <li>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li> </ul>
⑧ 의료및방역서비스	의료·방역업무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li> <li>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li> <li>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li> <li>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li> </ul>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 환경정비업 무 담당부서</li> <li>쓰레기수거·처리업 무 담당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li> <li>쓰레기 수거·처리 지원</li> </ul>
⑩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⑪ 사회질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업무 담당부서</li> <li>경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li> <li>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li> <li>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li> <li>재난 발생지역 주민환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li> </ul>
⑫ 수색, 구조·구급	수색구조·구급업무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기능 유형	담당부서	주요 임무와 역할
	담당부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li> <li>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li> <li>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li> <li>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li> <li>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li> <li>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li> <li>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li> <li>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li> </ul>
⑬재난수습홍보	재난수습홍보업무 담당부서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li> </ul>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코드번호 : 8-3		조치내용 : 지대본 운영 및 지원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위기경보단계 결정·조정 및 예·경보 발령
2.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
3. 중수본, 중대본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4.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5.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6. 유관기관 협업 총괄
7. 재난사고 원인 파악
8.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비상 대응 코드번호 : 8-4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설치장소는 관공서, 민간건물, 임시텐트 등 선정
  - 재난현장본부 민원접수처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사전 제작)
  - 가능한 실무반과 브리핑룸은 분리, 방문객으로 인한 업무지장 차단
- (공공건물로 선정 할 경우) \* 타 기관일 경우 사전 협의
  - 재난현장본부 설치 가능 면적(상황실, 브리핑룸 등) 확인
  - 통신시설, 사무가구 및 기기 등 확보가능 여부 확인
  -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사전 문안 준비)
- (민간건물로 선정 할 경우) \* 소유자와 협의
  - 임대면적, 임대료, 사용기간, 통신시설, 사무가구 사용 등 협의
  - 긴급성을 감안, 소유자에게 임대 협조 공문 발송
  - 예산은 시군구 자체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임시텐트로 설치 할 경우) \* 임시텐트, 책상, 의자 등 사전준비
  - 안전하고 가시성이 좋은 장소 선정
  - 차량, 장비, 인력 등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한 장소 선정
  - 전기·통신시설 연결이 용이한 장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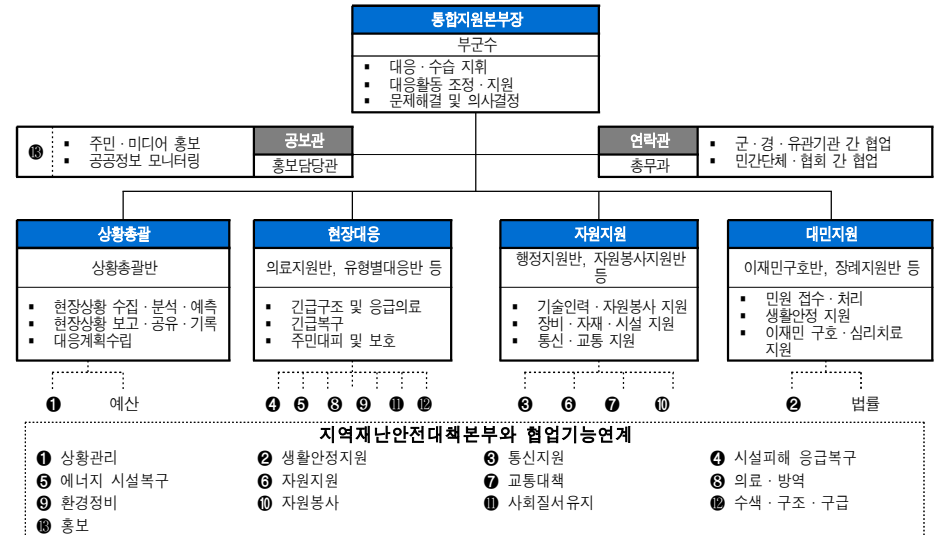
관공서 	체육관 	임시시설 
판교환경부지부 재난현장본부	세월호 사고시 팽목항 재난현장본부	제주 가스 폭발시 재난현장본부

2. 실무반 편성

○ 편제 구성

- 본부장,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 편제>



- 상황총괄, 의료, 장례, 이재민 구호, 행정지원, 홍보, 유관기관 협조 등 7개 필수기능 위주로 표준편제 구성
- 환경정비, 농축산지원 등의 기능은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편성·운영

공통 필수기능	재난유형별 추가기능	
· 상황총괄 · 의료지원 · 장례지원 · 이재민 구호 · 행정지원 · 언론대응 · 유관기관 협조 · 유형별 대응반	· 화재(의정부)	· 방역, 에너지복구, 통신지원, 환경정비, 현장조사 등
	· 붕괴(판교 환풍구 사고)	· 심리지원, 피해조사
	· 붕괴(마우나 리조트)	· 도로 체설작업
	· 화재(이천 냉동창고)	· 오염물처리
	· 유해 화학물(구미 불산누출)	· 오염물처리, 농축산지원, 피해기업 지원

○ 실무반 구성

- 기능분석 후 유사한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무반 편성
- 주요인사 방문 브리핑, 민원처리 등은 상황총괄반으로 편성
-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원 등은 의료지원반으로 편성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비지원 등은 장례지원반으로 편성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제공 등은 이재민구호반으로 편성
- 자원봉사자 및 자원동원 배치 등은 행정지원반으로 편성

《실제사례》

◇ 사고현장별 당시 재난현장본부 설치 사례

- ▶ (의정부 화재) 재난현장본부 실무반 편성은 상황반, 피해접수반, 의료지원반, 심리치료반, 물품구호반으로 구성·운영
- ▶ (마우나 리조트 붕괴) □□도/경주시 합동으로 도 안전총괄과장 외 7명이 현장 통합상황실 운영
- ▶ (판교 환풍구 붕괴) 경기도지사/성남시장 공동 지휘 하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반으로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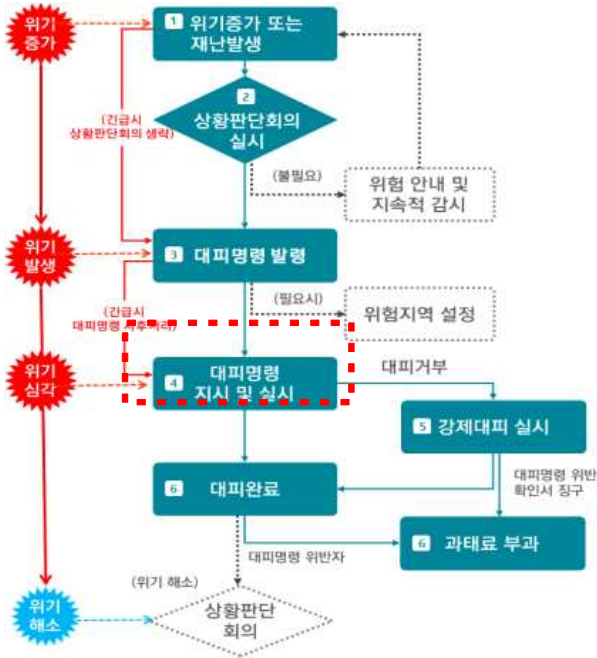
3. 실무반 임무

- 실무반 구성은 사전편성, 실무반별 소관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교대 근무

실무반	주요 임무	소관 부서장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li> <li>○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li> <li>○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li> </ul>	부단체장 (필요시 단체장)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li> <li>○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li> <li>○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li> <li>○ 예산 확보 및 집행</li> </ul>	안전건설과장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li> <li>○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li> <li>○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li> <li>○ 피해자 심리지원</li> <li>○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보건소장	
장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li> <li>○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li> <li>○ 유가족 1:1 전담 지원 업무</li> <li>○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li> <li>○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복지과장 또는 과거 복지과장 등 경 험 있는 과장	
이재민 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li> <li>○ 임시주거시설 지원</li> <li>○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li> <li>○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li> <li>○ 피해자 생계지원 등</li> <li>○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복지과장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li> <li>○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li> <li>○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li> <li>○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li> </ul>	총무과장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li> <li>○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li> <li>○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li> </ul>	홍보담당관장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li> <li>○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li> <li>○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li> </ul>	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 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복지과장
	건물 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민원과장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리조트 붕괴 사고)	안전건설과장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불산 누출 사고)	환경축산과장
	농·축산 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불산 누출 사고)	유통정책과장 농축산과장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6		조치내용 : 대피명령 지시 및 실시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절차>



1. 대피명령 지시 (재난총괄담당관 → 현장책임관)

- 재난총괄담당관(재난부서 담당과장)은 현장책임관(읍면장)에게 임무 수행 지시
  - 현장책임관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대피요원 등) 지정, 현장대피 담당자(대피 안내요원 등)가 여럿인 경우는 1명을 선정하여, 현장 총괄담당자로 지정
- 지속적으로 현장(대피 지역·시설, 대피소 등) 상황 파악
  - 현장의 대피 상황(대피 현황, 대피 방해요인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단, 대피담당자의 주민대피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보고는 자제

2. 대피 협조체계 가동

- 군부대 등 유관기관별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요청
- 경찰서에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추가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를 위한 경찰력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준비 요청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피자 응급의료 지원
- 교육지원청에 초·중·고등학교 임시휴교 및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요청
- (필요시) 대피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지원 요청(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3. (주민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 주민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재난 및 사고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병행 홍보 준비
- (내용) ①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②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 대피장소를 함께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대피장소로 이동 유도

4. (자동차, 선박 등) 대피명령 안내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둔치주차장 관리자, 소방·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있는 자동차, 선박 등의 소유자·점유자
- (방법)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가능한 모든 수단 활용하여 대피 알림
  - 전파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마을단위 주민대피 민간관리자(이장 등)는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 (내용) ① 식별된 위험요인 또는 재난사고 상황 등을 알려 루머나 오보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② 자발적으로 자동차, 선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



### 5. 대피 실시

- 대피상황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보유 방송설비 및 확성기 등 즉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위험상황임을 알리고 대피토록 방송
  - 재난발생 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 대상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 요청
    - 홍보담당관 : 주민대피 사항 관내 홍보 (언론매체 홍보요청 및 자체 홍보)
    - 방송사 : 안전총괄담당관 및 소방서(긴급구조통제단장) 요청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근거)
    - 자치행정과 : 주민대피 총괄 책임자와 마을별 책임자에게 주민대피 협조요청

참고자료\_담당자 주요임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임무	확인
총괄담당자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 등을 위하여 필요시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 시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2조)	<input type="checkbox"/>
	○ 안내요원·대피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현장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실시간 파악)	<input type="checkbox"/>
	○ 지원요청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input type="checkbox"/>
	○ 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	○ 대피지시 확인 즉시 담당지구 주민 대피 안내	
	-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대피 안내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 대피소, 안전한 대피로, 준비물 등에 대하여 안내	<input type="checkbox"/>
	-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피 후 또는 대피 과정 중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적극 만류	<input type="checkbox"/>
	-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	<input type="checkbox"/>
	- 위급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input type="checkbox"/>
	- 주민대피 후 치안 필요시 경찰에 협조요청	<input type="checkbox"/>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input type="checkbox"/>	
대피담당자	○ 담당한 재해약자를 지정된 대피방법으로 지정된 대피장소로 최우선 대피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 요청 - 직접 병원이나 119, 경찰 등에 지원요청(사후보고)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	<input type="checkbox"/>

### 6 대피명령 지원 (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 해당 지역의 주민 대피와 관련된 특이사항 파악
  - (대피수단 등) 대피를 위하여 인력·차량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파악
  - (협조체계)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악
  - 주민대피 장애요인 파악
- 대피로 점검 및 대피소(대피장소) 상황 파악
  - 대피로의 파손여부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대피소 기본시설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지원요청
- 안전취약계층의 상태확인 및 대피 준비 지원
  - 건강상태, 대피수단의 유무, 자력대피 가능여부(가족 등), 대피준비물 확보 상태 등
  - 안전취약계층 담당자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 현장의 주민대피 현황 파악
  -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대피 현황 파악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 (대피 불응 또는 방해자) 경찰·소방 등에 협조 요청하여 강제대피조치
- (위급환자 등 발생)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 (대피자 구호 지원) 대피자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 계획에 의거 구호 실시

## 7. 대피완료

### ○ 주민대피 상황보고

- 주민대피 지시 명령에 따라 대피를 실시하며 보고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 보고시기 : 필요시/수시
  - 보고내용 : 대피시작 시각 및 현지 상황, 지원요청 등
- 대피완료 후 대피상황을 NDMS에 입력·보고
  - 대피지구명, 대피장소, 대피인원, 피해현황, 완료시각 등

참고자료\_담당자 주요임무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임무	확인
총괄담당자	○ 안내요원, 대피담당자로부터 보고 접수	<input type="checkbox"/>
	○ 상황계획서에 의거 NDMS에 입력·보고	<input type="checkbox"/>
안내요원 (공무원, 민간인, 지역자율방재단)	○ 최종까지 현장에 남아서 전원 대피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철수 (철수 전에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 대피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input type="checkbox"/>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주민 대피 완료 확인 직후	<input type="checkbox"/>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등 개략적인 내용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지구별 대피인원 파악 후	<input type="checkbox"/>
대피담당자	○ 보고내용 : 대피소별 인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 보고수단 : 전화, 무전기 및 활용 가능한 수단	<input type="checkbox"/>
	○ 보고시기 : 재해약자 대피완료 직후 안내요원에게 보고	<input type="checkbox"/>
	○ 보고내용 : 완료시각, 대피장소, 이름, 현 상황, 지원필요사항 등	<input type="checkbox"/>
	○ 재해약자 대피완료 후 안내요원을 도와주고 안내요원과 같이 최종 철수	<input type="checkbox"/>

### ○ 대피자에 대한 주거 지원 (지자체→대피자)

- 지자체 (구호업무 담당자 등)
- 대피명령을 받아 대피한 주민 등(강제대피조치 된 주민 등 포함)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 실시 가능

비상 대응 코드번호 : 40-12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 주민대피
		조치내용 : 강제대피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 1. (주민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소방, 경찰
- (절차) 최종 안내 후 강제대피 하지만 위급한 경우 안내 생략 가능
  - ①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②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을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으로 또는 대피장소 (대피장소가 지정된 경우)로 강제 이동
- (기타)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 2. 대피발령 경고

-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된다는 사실 안내
  - (1차 경고) 대피명령 발령 사실 안내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함
  - (2차 경고) 강제대피 실시 전 대피명령 재홍보함
  - (대피명령 최종 안내 전) 차량 블랙박스·바디캠·드론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 등 촬영
    - 앰프 등으로 대피요청 방송이 실시되고 있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자는 대피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위반자 주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촬영

### 3. 강제대피 실시

- (업무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 (주체) 지자체(주민대피 총괄 책임자, 마을 책임자 등), 소방, 경찰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
- (내용) 대피명령 발령 사실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된다는 사실 최종 안내
- (방법)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 (기타사항)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지자체, 소방, 경찰)

4 (자동차 등) 강제대피 조치 (지자체, 보험사)

- (주체) 지자체(현장책임관, 마을별 현장대피 담당자 등), 보험사
- (내용)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은 차량 대한 강제 견인  
(견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
- (기타) 강제 견인 후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지자체, 소방, 경찰)

- (주체) 강제대피 조치를 한 행정청 (지자체, 소방, 경찰)
- (장소) 대피명령 발령지역 밖 또는 대피장소
- (대상)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아 강제 대피가 실시된 자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한 자(이하 “강제대피자 등”)
- (내용) 강제대피자 등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수집
- (방법) 강제대피자 등에게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를 기입하도록 요청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과태료) 제1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2호

6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지자체 통보 (소방·경찰 → 지자체)

- (주체)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한 소방·경찰
-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과태료 부과자인 지자체에 통보
  -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된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인계 가능
  -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는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 (법 제66조 제1항)

비상 대응 코드번호 : 46-2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재난방송
		조치내용 :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시민홍보추진 및 재난방송

- 사고속보 방송문자 송출 및 재난홍보상황실 운영
- 추측보도 차단 및 사고수습상황 적기 홍보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필요시) 위기에경보 상황 전파
  - TV, 라디오, CATV, 교통방송, KBS재난방송 등

방송사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안동 KBS	보도부	054-850-7411	
안동 MBC	보도부	054-851-7058	
TBC 북부지사	보도부	054-760-2033	
영남방송	보도부	054-852-8200	

2. 가두방송 실시

- 마을회관 또는 주민센터 방송시설 활용
-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

가두방송시설	보유수량	관리자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적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1		조치내용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킴을 상기하기 바람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적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2		조치내용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보도자료 작성

- 배포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00.00.(목) 16:00	보도시점	2016.00.00.(목) 석간부터 [온라인매체는 00.00.(금) 06:00부터]
담당과장	상황총괄담당관 000	연락처	000) 123-4567
담당	시설사무관 000	연락처	000) 123-4567
쪽수/붙임	00쪽/없음	홍보담당관실	000) 123-4567

## 대형화산 폭발로 인한 주민대피 등 사고수습

- '00년 0월 00일 00:00경 의성군 △△면 XX리에서 대형화산폭발이 발생하면서 건물 붕괴사고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00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 사고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군, 경찰서, 공무원, 의성군이 참여하는 통합현장지휘소가 설치되어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음
- 의성군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동요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접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상 대응 코드번호 : 48-1	<b>행동요령</b>	조치목적 : <b>현장 언론홍보지원(통지본 설치시)</b>
		조치내용 : <b>현장 브리핑 및 취재지원</b>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 통지본 운영시 현장 브리핑으로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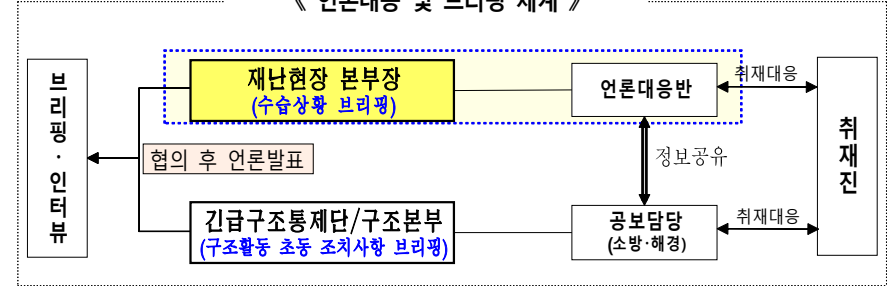
1. 현장 브리핑

- 브리핑 : 부군수 및 공보관·대변인(필요시 단체장 가능)
- 시 기 : 재난발생 초기부터 일정 시간을 정하여 발표
- 장 소 : 재난현장본부 브리핑룸
- 주요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잠정 집계 현황(인명, 재산)
  - 모든 재난상황은 사실만 브리핑하고 부정확한 상황을 추측하여 브리핑 금지(아는 척 하지 말 것)
  - 이재민 구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
  - 재난현장 주요 수습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 유언비어 등 오보에 대한 해명
  - 다음 브리핑 시간, 장소 발표 등
    - \* 브리핑 내용은 중대본, 시도 대책본부와 사전협의 후 발표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도록 주의

2. 현장 취재지원

- 현장 취재지원팀 구성·운영(공보계장, 직원 등)
- 각종 언론사 현장 취재, 인터뷰 등 안내

《 언론대응 및 브리핑 체계 》



언론 브리핑 유의사항

- |  |
|--|
| <b>사전준비</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자는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 및 숙지</li> <li>○ 최신자료를 기초로 간략하고 쉽게 작성하며, 브리핑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li> <li>○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및 부적절한 용어 개선을 위한 사전 리허설 실시</li> <li>○ 복장은 정복 또는 비상근무복 착용</li> </ul> </li> <li>◆ 브리핑 환경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 위치, 촬영진과 보도진에 대한 좌석배치, 음향, 조명, 마이크 등 기자재 점검</li> <li>○ 사전에 참석 언론사와 취재 기자의 취재방향 파악, 돌발사태에 대비</li> </ul> </li> </ul>  |
| <b>브리핑 발표</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리핑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하면서도 공감어린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피해에 대해 신중한 용어 사용 및 진솔한 애도와 위로 표명</li> <li>-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브리핑 및 행동</li> </ul> </li> <li>○ 인명관련 집계는 반드시 확인된 현재시간 현황만 언급, 변동가능성 표명</li> </ul> </li> <li>◆ 브리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은 신중히 언급</li> <li>○ 알려질 사실은 사정과 맥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발표</li> <li>○ 필요시 보조자료(도면, 모형물, 애니메이션 등), 관계 인사 등을 활용</li> <li>○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명확하게, 오보는 즉시 대응</li> </ul> </li> </ul> |
| <b>브리핑 이후</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된 사항, 새로운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및 추가 브리핑 실시</li> <li>○ 언론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li> </ul>  |

재난현장 브리핑룸(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 소

- 재난현장에서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재난현장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 점

재난현장본부 설치·운영과 동시

기 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재난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실제 수범사례 》

(의정부 화재) 초기대응시 소방서장의 언론 브리핑에 이어서 의정부 시장이 사상자 처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브리핑 하였고, 현장을 찾는 언론 취재진은 언론 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취재를 안내함.

※ 참고사항

- ❖ 재난 시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와 이재민 구호가 최우선임에도 현장에서 긴급지원 대책이 미흡할 경우 피해주민 고통 가중
- ❖ 사고가 발생하면 각 언론사 마다 경쟁적으로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긴급구조구급 및 수습·복구활동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취재진 안내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0-1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 대민지원
		조치내용 : 민원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주관부서 : 민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장소

- 현장본부 내 일정공간(책상) 확보
-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

2. 인력배치

- 시군구청 직원 중심
- 필요시 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 배치

3. 운영방법

-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창구에서 해결, 불가피한 경우만 이첩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비치하여 One-Stop 해결
  - 전기, 가스,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유관기관 지원반에 협조 요청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대민지원
코드번호 : 10-2		조치내용 : (통지본 설치시) 현장 대민지원 조치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대민지원 사항

- 이재민 발생 파악 및 구호
-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전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기부금품 모집 및 지원
- 법률자문 요청

2. 부서협조 요청

- 통지본의 대민지원 사항은 각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황보고 수시 요청
- 현장에서 신속히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은 담당부서 협의 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코드번호 : 11-1		조치내용 : 이재민 관리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이재민 현황 파악

- 이재민구호반 실무요원이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 실시간 파악
  - 부록[제7·8호 서식]에 따라 이재민 발생 및 임시주거시설 소요현황 관리

2. 이재민 구호 현황 보고

- 매일(5시, 10시, 16시, 22시(종합)) 이재민 구호상황을 상황관리 총괄반에 전파
  - 부록[제9·10호 서식]에 따라 이재민 발생 수습상황 단계별 보고
  - ※ 2016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참고(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90, '16.1.11)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코드번호 : 11-2		조치내용 : 현장(통지본) 이재민구호반 가동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이재민구호반 편성 및 운영
2. 이재민구호반 임무
  - 이재민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3. 구호상황 보고
  - 매일(5시, 10시, 16시, 22시(종합)) 이재민 구호상황을 상황관리 총괄반에 전파
    - 부록[제9·10호 서식]에 따라 이재민 발생 수습상황 단계별 보고
    - ※ 2016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참고(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90, '16.1.11)
4. 구호물자 피축 현황 파악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코드번호 : 11-6		조치내용 : 이재민 구호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거나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급식식당 지정 또는 식비 지원
2.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3.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 (생필품) 담요, 칫솔 등 16종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응급구호세트와 식·음료품 등 개별구호물품 및 취사구호세트(주방 등이 파손된 경우) 지원
    - \* 응급·취사구호세트는 지자체에서 비축 중이며, 쌀, 부식 등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 구호물품은 사전구매선 확보, 즉시 조달(재해구호기금 및 지자체 예비비 활용)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b>이재민 구호</b>
코드번호 : 11-8		조치내용 : <b>구호물자 지원 요청</b>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물자 및 인력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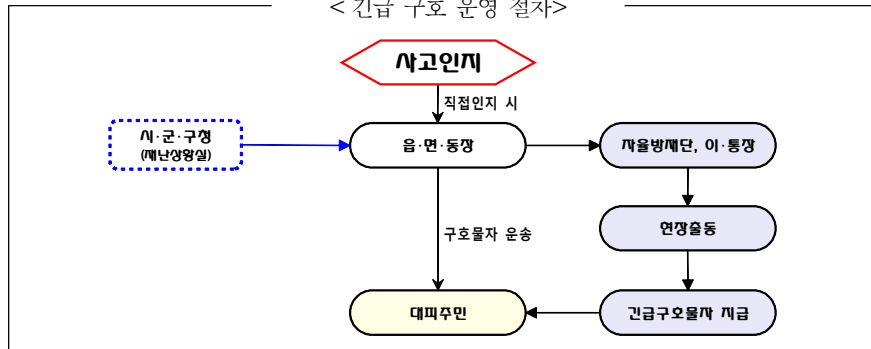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대한적십자사	안전정책과	053)250-9832	
적십자 북부지역 봉사관	복지과	054-859-3931	
의성군 자원봉사단	복지과	054-830-6321	
의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건설과	054-830-6603	

2. 긴급구호 지원

○ 재난현장 최인근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 활용, 대피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자 지급

- \* (의정부 화재 사례) 속옷차림 피해주민에게 담요·트레이닝복 등 긴급지원으로 큰 도움
- \* (신안군 홍도 유람선 좌초 사례) 홍도주민으로 구성된 자율구조대·청년회·어촌계 합동으로 20분 만에 승객 110명 전원 구조(민·관합동 해상구조훈련 연 2회 실시)

< 긴급 구호 운영 절차 >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b>장례 지원</b>
코드번호 : 13-1		조치내용 : <b>사망자 현황 파악 및 공유</b>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장례지원절차>



1. 희생자 현황파악[제3호 서식]

- 긴급구조통제단에 파견한 지자체 연락관을 통하여 사망자 인적 사항, 안치장소 등을 실시간 파악

2. 게시판 게시

- 희생자 현황을 게시판에 게시할 때는 장례지원반장이 최종 확인 후 게시
  - 기준시점을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간 숫자가 바뀌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잠정 표기
  - 게시판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되, 반장이 현장상황에 따라 판단
  - 사망자 인적사항의 경우 성, 성별, 나이, 특징 등을 게시

3. 보고 및 정보공유

- 지역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사망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
  - ※ 사망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3-2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장례식장에 공무원 전담배치로 현장상황 관리 및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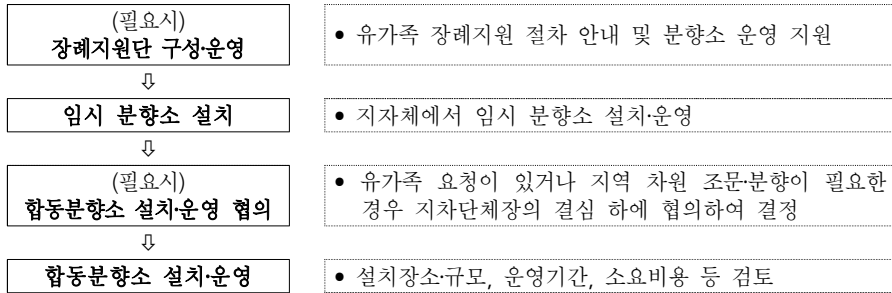
-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 장례절차 세부내용 검토 후 진행

2. 전담인력 배치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복지과	어르신복지팀장	이미현	054-830-6213	
복지과	사회복지7급	홍성백	054-830-6215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코드번호 : 13-3		조치내용 : (필요시) 임시/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절 차



2. 세부절차방법

- 장례지원단 구성·운영(필요시)
  - 분향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장례지원단 구성·운영
- 임시 분향소 설치
  - 지자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 분향소 설치·운영
  - 유가족, 조문객 등의 방문이 용이한 곳으로 지정·운영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협의(필요시)
  - 유가족의 요청이 있거나 희생자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 조문·분향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유가족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위치선정, 운영규모, 비용정산 등 관계부서, 유가족 대표와 협의
- 합동분향소 운영
  - 유가족 대기공간 마련 및 장례절차 등 행정편의 지원
  - 필요시 장례지원반 일부 인원을 합동분향소 상황근무조로 편성·운영
  - 유가족 배치, 분향소 방문안내(자원봉사자 활용), 방문인원 집계 등
  - 국화, 향 등 필요물품 소요현황 파악 및 준비
  - 합동분향소 운영현황 장례지원반장에게 보고 및 상황총괄반 전파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코드번호 : 13-4		조치내용 : 유가족 지원 대책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유가족 편의지원

- 유가족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생필품(물, 담요, 임시주거시설 등) 지원
- 유가족에게 재난(사고)상황에 대해 실시간 정보제공
  - 희생자 시신 안치장소, 재난(사고) 수습 상황 등

2.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유가족과의 1:1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제공 및 민원해소 노력
  - 담당공무원의 업무 숙지 및 통일된 정보전달체계 구축

비상 대응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코드번호 : 13-5		조치내용 : 장례비 지원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장례비 先 지급보증

- (개념) 유가족의 장례비 지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하는 것
- (필요성) 유가족이 장례기관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고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 이전 지자체 先 지급보증 필요
  - ※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가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신속한 장례지원 및 재난수습을 위하여 지자체가 우선 지급보증
- (주요내용) 통상적 수준 장례비 범위 내 우선 지급보증, 지원여부 및 기준은 지대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 원인제공자가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와 재난피해자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

2. 장례비 지원 안내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정한 지원기준을 관계기관(병원, 장례식장 등) 및 유가족에게 안내
  - 지원기준 범위 외 소요된 비용은 개인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발생 소지 사전 차단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제4호 서식]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기준 심의·결정 가능
  - (지원기준)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예시에 따라 지원대상, 금액, 기간, 방법 등 심의·결정
    - 인명피해 규모, 예상 의료비용, 과거 지원사례 등 검토

· 지자체 가용예산 범위 내 장례비 지원금액 결정

<< 참 고 자 료 >>

- ① 메르스 : 화장하는 경우 10백만원/1인 지원
- ② 울산지방방법원 판례 : 통상적 수준 장례비 5백만원 판결('13.9월)
- ③ 국가배상법 : 남자평균임금 100일본 수준(약 943만원 정도)

3. 장례비 청구·지급

- 청구 및 지급절차
  - ①장례지원 요청(유가족, 제6호 서식)→②대상자 확인 후 지원(장례기관)→③비용청구(장례기관)→④장례비용 지급(원인자 또는 지자체)
  - ※ 유가족이 장례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유가족에게 직접 계좌 입금

< ※ 긴급복지지원법 장제비 지원안내 (참고) >

- 장제비 지원기준 등
  - (대상내용)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장례 소요비용 지원
  - (금액) 1인당 75만원 / 1회
  - (지원절차) ①지원요청(대상자) → ②신고접수 및 상담(담당공무원) → ③지원결정 및 지급(시장군수·구청장)

비상 대응		조치목록 :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조치내용 : 긴급통신지원
코드번호 : 15-1	<b>행 동 요 령</b>	
		주관부서 : 총무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상황확인 및 출동
  - 현장상황관리요 긴급통신 단말기 지급(주관부서 담당자 수령)
  - 재난상황실 통신 단말기 비치운영
2. 재난현장 통신응급복구반 지원
  - 현장 통신지원을 위한 KT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통신 지원 인력 파악
3. 긴급통신 수요파악 및 자원확보
  -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통신 수요파악 → 설치장소, 수요량(유선, 인터넷, FAX 등)
  - 상황실 및 현장통합지원본부간 통신회선 구성요청(KT)
  - 사고지역 이동통신 전화폭부 장애대비 → 이동통신사(KT, SKT, LGU+)에 이동기지국 설치 등 대책강구
  - 현장 정보통신지원반 구성(4명) → 전화기 및 PC설치 운용요원
  - 현장통합지원본부 정보통신시설 설치 운영요원 파견(정보통신 지원반)//현장상황고려
4. 긴급통신 지원 완료
  - 운영단말기 사전준비 → 일반전화기(12대), PC(12대), FAX(1대) 보유
  - 상황실 및 통지본간 통신회선 구성 완료
5. 추가 통신지원 파악 및 지원지속
  - 유가족 대책상황실, 자원봉사 지원등 통신수요 예상
    - 유선전화 설치 예상

6. 유관기관 지원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KT안동지사	총무과 (조우형)	054-830-6600	- 보유 자원 신속지원(긴급통신장비 지원) - 통신망 두절 지역의 민간단체 긴급 연락통신망 지원 - 지원기능 자원현황 공유(인력 및 장비)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 응급복구 지원 요청
코드번호 : 16-4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응급복구 소요 인력 및 장비 파악
2. 유관기관 지원 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협업내용
제3260부대 5대대	군수과	054-830-8280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수자원 관리부	054-830-8131	
의성경찰서	정보보안과	054-830-1055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코드번호 : 16-5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
  - 지역대책본부 시설응급복구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
2. 복구 소요비용 추산
3. 응급복구 개선 사항 도출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7-1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현장 시설응급복구(통지본 설치시)
		조치내용 : 응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복구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효과적 복구대책 강구
    - \* 사안별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 구분 시행
  - 군병력·자원봉사자·민방위대 등에 의한 복구활동 지원
2. 재난 현장의 긴급복구 체계 구축
  - 복구현장의 인력·장비·물자 운영을 위한 자원대기소 설치·운영
  - 재난대응 구역별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조정·통제
  - 의용소방대원, 민방위대원, 자원봉사자 등의 긴급복구 투입 활용
3. 각종 안전조치 및 긴급 안전진단 실시
  - 에너지 사용시설 사용 전 안전조치 이행 및 피해지역 방역활동
  - 인근 건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진단 실시
  - 도로 위 붕괴잔해물 정리, 복구 불가능한 곳은 안전시설물 설치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9-1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조치내용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구조구급현장 지원사항 파악
2. 긴급에너지지원 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	고객지원팀	054)830-2230	- 구조구급에 필요한 전기공급(발전기 등) - 조명장비 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경북북부	안전진단팀	054)820-9210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9-2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조치내용 : 통지본 에너지 지원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 통지본을 임시테트로 설치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요청하여 신속한 전기공급 지원

1. 통지본 설치 물품에 대한 전기공급

○ 전기공급 우선 물품

- 조명시설
- 전화, FAX, 복사기, 프린터
- PC(노트북), 인터넷

○ 기타물품

- 휴대폰 충전기
- 녹음시설 및 카메라 등

2. 긴급에너지지원 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	고객지원팀	054)830-2230	- 통지본 운영을 위한 전기공급(발전기 등)
한국전기 안전공사 경북북부	안전진단팀	054)820-9210	
KT안동지사	CM팀	054)873-0060	- 인터넷 라인 설치

비상 대응 코드번호 : 19-3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조치내용 :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이재민 수용시설 필요사항 파악

2. 긴급에너지지원 요청

협업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	고객지원팀	054)830-2230	- 피해자 임시주거지 전기공급 - 이재민 편의를 위한 전기라인 설치
한국전기 안전공사 경북북부	안전진단팀	054)820-9210	
한국가스 안전공사 경북북부	검사부	054)714-3258	- 취사 및 냉·난방을 위한 가스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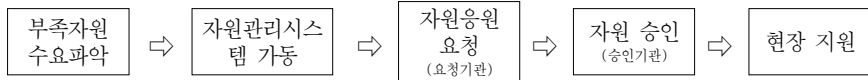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코드번호 : 21-3		조치내용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 통합지원본부의 행정지원반 역할과 동일함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 행정지원반은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실시간 파악 [제11·12호 서식] 하여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 부족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응원 요청, 신속한 자원 지원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응원 절차 >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제13호 서식]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원요청
- 중앙대책본부는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간 자원 응원·조정, 시도는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 자치단체간 응원체결, 수방자재·소방장비·민방위자원 지원협조체계, 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열관리협회 등 MOU체결 등 적극 활용

《 대응 사례 》

- 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붕괴된 체육관 수습 및 부상자 이송에 따른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 인근 시도(부산, 대구, 울산) 및 군부대(해병1사단, 육군 50사단)에 응원요청
- ②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방제초기 각 해안마다 수거된 액상 및 고상폐기물 처리에 따른 특정폐기물 운반차량 부족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폐기물 처리 유도

※ 참고사항

- ❖ 재난현장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등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확산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 ❖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현황을 몰라 적기적소에 필요한 자원 지원요청 애로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코드번호 : 21-7		조치내용 :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자원동원 현황

- [제11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철수일시	출동인원,장비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역할	비고
			인원	장비				

2.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 [제12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

연번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코드번호 : 21-8		조치내용 :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예산확보

- 시군구 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선 》

- ◆ 재난안전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개정(2016.1.7.), 시행(2017.1.8.)
  -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

2. 예산지원요청

- 시군구 자체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 해당 시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에 지원 요청

비상 대응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
코드번호 : 22-1		조치내용 :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자원지원반 편성

- 반장 :
- 반원 :

2. 자원지원반 임무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및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비상 대응 코드번호 : 24-5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차량 대수 파악
2. 교통과 연락처 및 운송관련 단체현황
  - 교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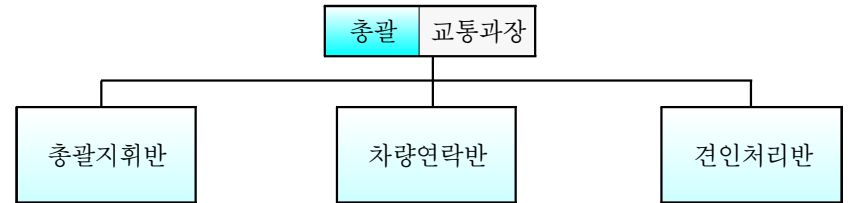
기관명	전화번호	차량보유현황
의성군	054-830-6251	

○ 운송단체

업체 및 단체명	전화번호	차량보유현황
문소관광(주)	054-832-1138	12
비봉산관광(주)	054-861-8855	11
(주)동양투어	054-861-7000	11
의성택시(주)	054-832-1472	13
삼성택시(주)	054-834-8383	20
(주)안계택시	054-861-7777	10
의성여객	054-832-4004	23

비상 대응 코드번호 : 25-1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
		조치내용 :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 경제투자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임무역할
  -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이동 조치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견인 및 관리
  - 임시보관소에 견인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인계
2. 교통대책반 편성 및 임무



반 별	임 무	비 고
총괄지휘반	- 현장상황파악 및 총괄지휘	
차량연락반	- 이동이 필요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 임시보관소에 견인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인계 조치	
견인처리반	- 견인차량 임시보관소 확보, - 교통소통 지장 차량 견인조치	견인차1대

※ 재난상황에 따라 반별 인원 및 임무는 총괄지휘반의 명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의료·방역지원
코드번호 : 26-2	조치내용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 동원지정병원

구분 구별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병상	의료요원	
			평시	의사	간호사
계					
	영남제일병원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 119구급대, 응급의료 자원현황

구분	응급구조사			구급차량			자동 제세동기	비고
	계	1급	2급	계	특수용	일반용		
의성소방서				7	1	6		

○ 구급차 보유현황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구급차 보유 현황		
			계	특수용	일반용
계					
119구급대	의성소방서	054-834-5119			
보건기관	의성보건소	054-830-6651			
권역응급의료센터	안동병원	054-840-1004			
지역응급의료센터	영남병원	054-861-9111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환자이송 및 관리
코드번호 : 29-2	조치내용 : 부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부상자 현황파악 및 정보공유

- 현장응급의료소와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된 병원 입·퇴원 현황과 부상정도 등을 실무요원이 실시간 파악
-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상자 관리대장 수시 업데이트
- 부상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병원 등과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

2. 보고 및 정보공유

- 지역대책본부 긴급생활안전지원반과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부상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2-1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
		조치내용 : 응급의료소 지원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일대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부상자 입원 의료기관별 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 요청 정보 등을 기록·점검 후 조치결과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에게 전달
- 부상자 요구 및 지원사항 처리

2. 상황판 게시

- 의료지원반장이 부상자 현황 최종 확인 후 게시
  - 기준 시점을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간 숫자가 바뀌는 상황을 감안하여 잠정 표기
  - 상황판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되, 주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판단하여 결정
- ※ 가급적 보건소 병·의원 담당직원이 의료기관과 연락하여 상황파악 지원 협조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4-6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조치내용 :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주관부서 : 환경축산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시군 협업기관 : 유관기관		

※ 통지본 설치 시 지원요청 사항 협조하고, 통지본 미설치 시 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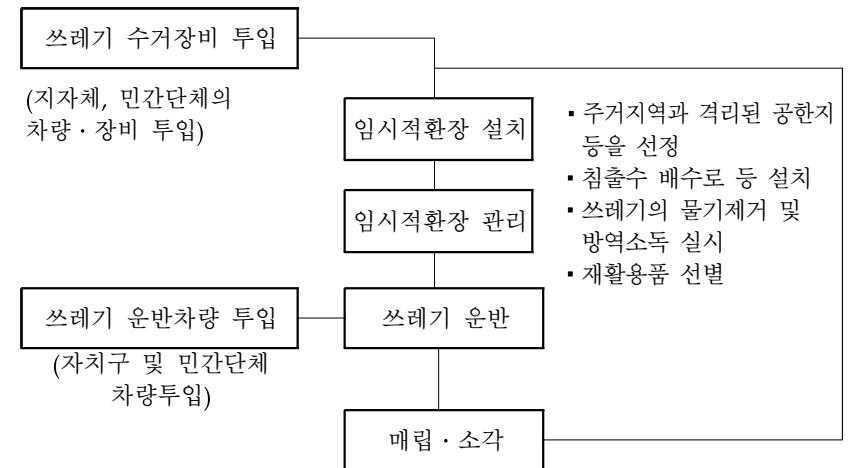
1. 폐기물발생 현황 파악

- 출장자 : ○○과 XX명
- ※ 폐기물발생량 = 붕괴면적×단위면적당 폐기물발생량
- 수거차량 필요 대수 파악

2. 동원 인력·장비

- 폐기물 수거차량 : ○○대 / 폐기물수거차량 ○, 집게차 ○, 압축차 ○
- 종량제봉투 ○○매, pp포대 ○○매

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4. 임시적환장 현황

구 별	위 치	토지소유자	면적(㎡)	처리가능량(㎡)	현재용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40	의성군	13,713	124,735	

5. 민간단체 현황

단체명 (지사, 지회)	주 소	소속단체 회원 수	차량·장비현황		비 고
			보 유	지원가능	
계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9				053-280-3888 (053-280-3889)
한국건설자원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시 북구 산격2동 1816 일토빌딩 2층				053-744-2294 (053-744-2297)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경북지부	안동시 용상동 480-15				054-823-2786 (054-823-2785)

비상 대응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 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
코드번호 : 37-1		조치내용 : 환경정비 지원
		주관부서 : 환경축산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2. 붕괴잔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협업내용	차량대수
동성환경산업(주)	환경축산과 (조영훈)	054-830-6571	- 수거차량 지원	10
(주)부호산업개발	환경축산과 (조영훈)	054-830-6571	- 수거차량 지원	4
(주)도암산업	환경축산과 (조영훈)	054-830-6571	- 수거차량 지원	4
(주)도암	환경축산과 (조영훈)	054-830-6571	- 수거차량 지원	3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8-1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 자원봉사자 모집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자원봉사자 모집

- 13개 협업기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봉사 기능에 맞는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 및 개인 모집

2. 사전신청 없이 찾은 자원봉사

- 사전 신청 없이 찾아오는 봉사자는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조치 내용 38-4] 참조)에서 일일 인력투입 현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기능별 분산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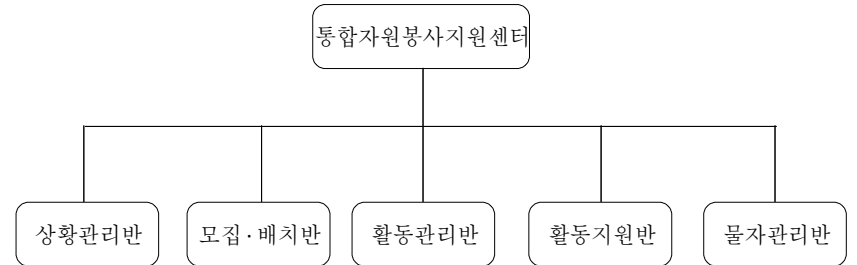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8-4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 재난현장본부장은 필요시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시
  -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합동으로 재난현장 한시적 기구로 운영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는 자원봉사 모집, 교육, 배치, 상담, 활동관리 등 자원봉사 업무 총괄조정 수행

2.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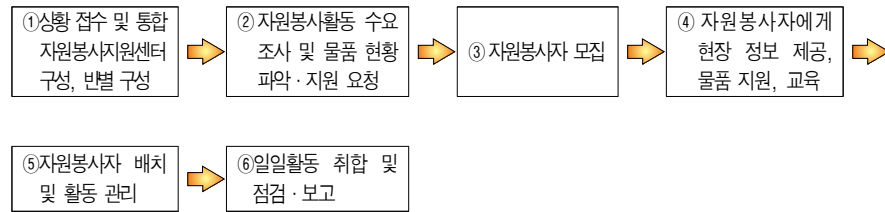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조직》



4. 통합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장은 행정(자원)지원반장 및 지대본 자원봉사 협업 담당에게 수시 및 일일 종합 보고[제 14호 서식]
- 소방·해경과 협의, 초기대응에 우선 투입 가능한 자원봉사 인력 파악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5. 조직업무수행 절차



《 대응 사례 》

**(세월호 침몰사고)** 세월호 현장자원봉사센터는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총괄지휘 아래 진도 현장 운영 전반에 관한 자원봉사와 안산시 가족중심 직접서비스를 중점 수행

- 상황접수 및 조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활동 및 배치, 언론대응 및 홍보, 상황중결 및 후속조치 순으로 업무 흐름에 따라 수행
- 또한, 작업기준 및 활동시간을 결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확보를 최우선 하였고, 봉사자 인정·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난전문봉사 리더를 양성

※ 참고사항 (예상문제점)

- ❖ 대규모 재난발생시 전국에서 몰려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와 배치계획 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배치함에 따라
  - 자원봉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장을 찾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민원 반발
- ❖ 또한, 자원봉사 배치계획 없이 투입함에 따라 특정 피해구간에 집중되어 조기수습에 차질

4.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응원

- 시·도 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시 부족한 물품, 인력 등은 시도 및 중앙차원에서 응원

비상 대응 코드번호 : 39-1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조치내용 :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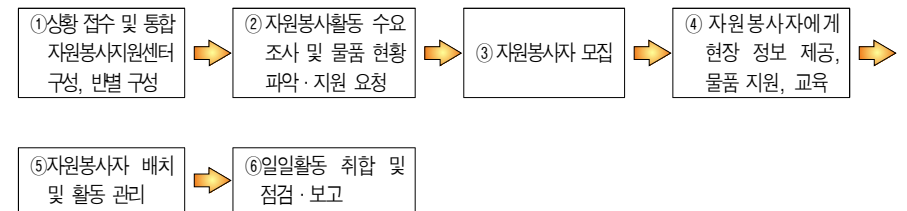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의 규모가 일정기준을 넘어섰거나,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미 설치 시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필요시)

-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예: 시정새마을과)에서 직원 파견

2. 역할

- 통합자원봉사센터 역할 수행(코드번호 39-2)



- 행정(자원)지원반장 및 지대본 자원봉사 협업 담당에게 수시 및 일일 종합 보고[제 14호 서식]
- 소방·해경과 협의, 초기대응에 우선 투입 가능한 자원봉사 인력 파악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
코드번호 : 39-2		조치내용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지원사항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도 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시 부족한 물품, 인력 등은 시도 및 중앙차원에서 응원을 요청하고, 센터 지원
-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관리 중점

2. 자원봉사자 수요조사 및 보고 지원

- 초기대응 단계에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우선 투입 자원봉사 인력을 소방·해경과 협의하고, 이를 센터에 요청
- 일일활동 취합 및 점검보고 지원

비상 대응	<b>행동요령</b>	조치목록 : 질서유지활동
코드번호 : 42-2		조치내용 : 재난현장 질서유지
주관부서 : 의성경찰서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현장주변 통제선

- 현장주변 보존 및 목격자, 증거 확보
- 현장주변 폴리스 라인 설치
-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 순찰차 등 활용 위험지역 내 주민 강제 대피조치

2. 범죄활동 예방 및 지원

- 현장주변 방범순찰
- 대피한 건물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 방지 등 범죄예방 활동
- 사상자 구호 및 응급후송 지원

3. 이동파출소 운영 및 배치

- 주민대피소 주변 이동파출소 운영
  - 사상자 및 부상자 신원확인
  - 실종자 및 유류품 접수
- 응급의료시설 주변 강력 배치
- 사상자 구호 및 응급후송 지원

비상 대응 코드번호 : 43-1	<b>행 동 요 령</b>	조치목적 : <b>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b>
		조치내용 : <b>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b>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 4 수습·복구

### 가. 대응 지침

-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 Life-Line 복구 최우선
- 장기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

###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군수	<p><b>[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li> <li>○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li> <li>○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li> <li>○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li> <li>○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li> <li>○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li> </ul> <p><b>[필요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li> </ul> </li> <li>○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및 관계법령 개선 지시</li> </ul>
안전건설과장	<p><b>[수습·복구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수행</li> <li>○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li> <li>○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li> <li>○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li> <li>○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li> <li>○ 복지지원대상 및 범위보고</li> <li>○ 사고대응 문점점 분석 및 대책 강구</li> </ul>

### 1. 대피준비

- 경찰서, 대피소 지정학교 등 협업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및 비상대기 협조요청
- 주민 대피시설 관리책임자, 수송차량 지원 단체, 민간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등 비상대기 협조 요청
- 대피안내 방송 준비(민방위 경보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 주민대피 안내 공무원 현장 배치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 대피준비 방송 실시

### 2. 대피명령

- (필요시) 지역 방송사 및 유선방송에 대피방송 요청
- 협업기관 및 유관단체 협조요청
- 주민대피 총괄 책임자와 마을별 책임자에게 주민대피 지시
- 대피안내 방송(민방위경보시설, 마을앰프, 방송시설 행정차량 등)
- 미대피 주민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요시) 강제대피 조치

### 3. 대피후

- 미대피주민 파악 및 즉각 지원요청
- 대피주민 및 인명피해 현황 파악
- 대피소 통제
- 의료, 급식, 구호물품 분배시 지원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수습 · 복구 코드번호 : 9-1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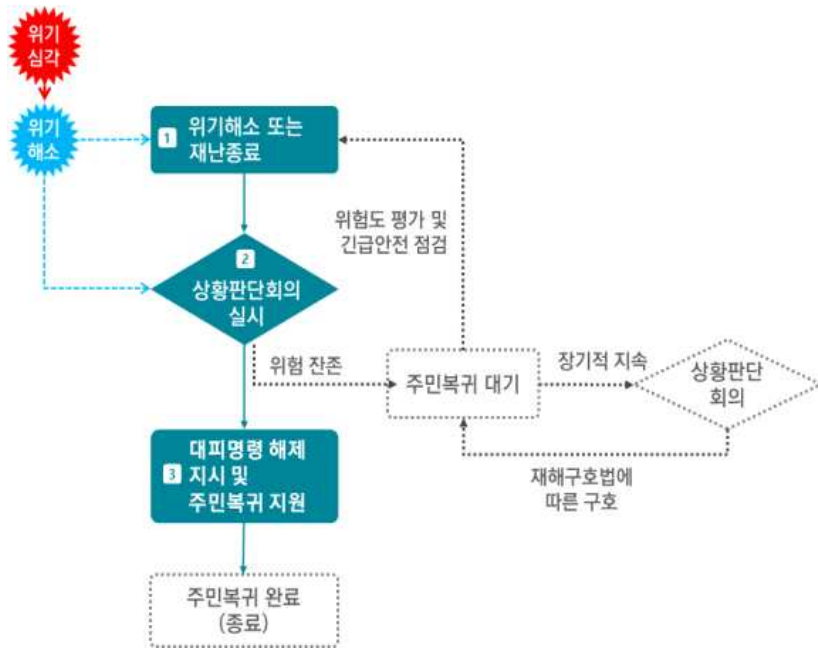
1.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현장 보존 및 피해 잔재물 처리 계획 수립
  - 필요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시행
  - 분야별 임시 복구 및 항구 복구 등 종합 계획 수립
  - 분야별 소요자재, 복구장비, 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 수립
  - 관련 유관기관 및 비상지원 협력업체 긴급 복구지원 협조 요청
  - 분야별 복구조 투입 및 피해시설 복구 작업
  
2.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 사항 확인 및 작업범위 결정
  - 각 분야별 비상복구조 현장 투입
  - 각 분야별 비상복구조 역할 분담 수행
  
3.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 피해 사항별 자원 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수습 · 복구 코드번호 : 9-4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사고합동조사반 운영
  - 조사반 주관부서장 및 부서원 뿐만아니라, 소방,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이 운영되는 경우 필요사항 적극 지원
  
2.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피해자 처리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 수립
  -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사고조사결과 위법내용에 대해 처벌

수습·복구		조치목록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13	<b>행동요령</b>	조치내용 : 대피명령 해제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절차>



1. 대피명령 해제 상황

- 위기징후로 감지된 상황 종료 (기상특보 해제, 재난 예.경보 해제 등)
- 재난이 종료되었거나 위험요소가 모두 해소된 경우
-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2. 주민복귀 결정

- 재난이 종료되어 추가적인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대피명령 발령권자가 명령을 해제함
-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범위) 전체 또는 부분 대피명령 해제 결정
- (시점) 주민복귀 시점 결정
- (상황) 재난이 종료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해소된 경우
- (내용) ① 단계별 주민복귀 우선순위 결정 ②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복귀방법 결정 ③ 주민복귀를 위한 교통수단 및 대피경로 확보 ④ 주민복귀를 알리는 전파 수단 결정 ⑤ 주민복귀 안내 및 주민복귀 지원(이동, 안전 등)을 위한 담당자 배치
- 대피명령의 해제
  - 재난상황이 종료되었거나 위기가 해소가 된 경우 주민복귀를 위해 대피명령을 해제함
  - (필요시) 위험구역이 설정되어 주민 대피가 이루어진 경우, 재난유형별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위기판단회의(위험성 존재 여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여부 등)를 통하여 설정된 위험구역을 해제한 후 주민복귀를 위해 대피명령을 해제함

☑ 참고자료\_주민복귀 결정시 고려사항

참고자료_주민복귀 결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로 감지된 상황 종료 (기상특보 해제, 재난 예.경보 해제 등)</li> <li>▶ 재난이 종료되었거나 위험요소가 모두 해소된 경우</li> <li>▶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li> <li>▶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li> </ul>

3. 주민복귀 알림방송

-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했던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긴급재난문자(CBS), 자동음성·문자통보시스템, 앰프, 전화, 이동차량, 방송, FAX 등

4. 주민복귀 협조체계 가동

- 군부대 등 유관기관별 주민복귀에 필요한 인력·장비·물자 동원 요청

- 경찰서에 주민복귀 차량 통행 제한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피자 복귀에 관한 응급의료 지원
- (필요시) 복귀하는 주민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 지원 요청  
(버스 등 수송차량 소유자)

### 5. 현장의 대피명령 해제 안내

- (주체) 대피담당자, 읍·면·동 마을책임공무원, 소방, 경찰 등
- (대상) 대피명령 지역주민 및 주변 지역 주민
- (전달) 대피명령 발령 시 활용했던 방법으로 해제 사실 안내
  - 긴급재난문자(CBS), 방송, SNS,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게시, 확성기, 앰프, 이동차량, 순찰차 등

### 6. 현장의 주민복귀 지원

- (이동 지원) 주민복귀를 위한 이동 지원
  - 도로의 파손 및 차량이동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도로가 파손된 경우, 통행 제한(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도로의 장애물 제거
- (안전 확보) 대피자의 안전 확보
  -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건강 상태 확인, 자력대피 가능 여부(가족 등), 대피수단 확보 등을 통한 귀가 지원
  - 스스로 귀가 등 복귀 능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 확보
  - 주민복귀 과정의 위급환자 등 발생시 소방, 경찰, 병원 등에 협조요청

수습·복구		조치목적 : 주민대피
코드번호 : 40-14	<b>행 동 요 령</b>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총무과, 복지과, 산림녹지과 협업기관 :

### < 절차 >

절차	내용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위반 행위 경고 (1차, 2차)</td> <td>1차 경고</td> </tr> <tr> <td>2차 경고</td> </tr> </table>	위반 행위 경고 (1차, 2차)	1차 경고	2차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li> <li>▶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li> <li>▶ (내용) 대피명령 발령 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내</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li> <li>▶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중 1차 경고에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는 자</li> <li>▶ (내용) 대피명령 발령 재안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안내</li> <li>▶ (참고) 필요시 동영상 촬영(2차 경고 실시 전)</li> </ul>
위반 행위 경고 (1차, 2차)		1차 경고		
	2차 경고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지자체, 소방, 경찰</li> <li>▶ (대상) 대피명령 발령지역의 주민 중 2차 경고를 받은 자 (강제로 대피된 자 포함)</li> <li>▶ (내용)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징구, 확인서 지자체 통보(소방, 경찰이 징구한 경우)</li> </ul>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td> <td>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td> </tr> <tr> <td>의견 제출</td> </tr> </table>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지자체</li> <li>▶ (내용)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을 대피명령 위반자에게 통지</li> <li>▶ (방법)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위반자</li> <li>▶ (내용) 서면이나 말*로 의견 진술, 필요시 증거자료 등 제출가능</li> </ul> <p>* 위반자가 말로 진술한 경우 행정청은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야 함</p>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 (지자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이의제기 및 관할 법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 지자체</li> <li>▶ (지자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li> </ul>			

### 1. 위반행위 경고(1차, 2차)

- 1차 경고: 대피명령 홍보(지자체, 소방 등)
  - 대피명령 발령 사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2차 경고: 강제대피 실시 전 대피명령 재홍보(지자체, 소방, 경찰)
  - 대피명령 발령 사실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증거자료 수집 및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검토

- 증거자료 수집 및 확인서 청구(지자체, 소방, 경찰)
  - 바디캠 · 드론 등을 활용한 동영상 · 사진 등 촬영(1차 경고 후, 2차 경고 실시 전 / 지자체, 소방, 경찰)
    - 대피명령 발령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 강제대피 실시 및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 청구
    - 위반자에게 대피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주지(周知)시키고 신원확인(신분증 제시 요구)

### 3. 과태료 부과대상 확인 (지자체)

- 위반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검토

#### 참고자료\_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의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 \*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자는 과태료 감경(제10조제2항),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4. 사전통지 [지자체→당사자] 및 의견 제출

- 지자체는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등기우편 발송,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부여)

#### 참고자료\_사전통지 사항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5. 과태료 부과(서면)

- 의견이 없는 경우(의견 미제출), 과태료 부과 서면 등기우편 발송

#### 참고자료\_과태료 부과 고지서의 내용

-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 ▶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6. 이의제기 [당사자→지자체] 및 관할 법원 통보

-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수습·복구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8-1		조치내용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 1.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 2. 오보대응

-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가중시킴을 상기하기 바람

수습·복구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2		조치내용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보도자료 작성

- 배포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수습·복구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언론대응
코드번호 : 47-4		조치내용 : 브리핑 및 취재지원
주관부서 :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브리핑

- 브리핑 : 부단체장 및 공보관·대변인(필요시 단체장 가능)
- 시 기 : 재난발생 초기부터 일정 시간을 정하여 발표
- 장 소 : 재난현장본부 브리핑룸
- 주요내용
  - 현재까지 피해상황 잠정 집계 현황(인명, 재산)
  - 모든 재난상황은 사실만 브리핑하고 부정확한 상황을 추측하여 브리핑 금지(아는 척 하지 말 것)
  - 이재민 구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
  - 재난현장 주요 수습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 유언비어 등 오보에 대한 해명
  - 다음 브리핑 시간, 장소 발표 등
    - \* 브리핑 내용은 중대본, 시도 대책본부와 사전협의 후 발표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도록 주의



언론 브리핑 유의사항

사전준비

- ◆ 브리핑 준비
  - 브리핑자는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 및 숙지
  - 최신자료를 기초로 간략하고 쉽게 작성하며, 브리핑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
  -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및 부적절한 용어 개선을 위한 사전 리허설 실시
  - 복장은 정복 또는 비상근무복 착용

◆ 브리핑 환경 점검

- 브리핑 위치, 촬영진과 보도진에 대한 좌석배치, 음향, 조명, 마이크 등 기자재 점검
- 사전에 참석 언론사와 취재 기자의 취재방향 파악, 돌발사태에 대비

브리핑 발표

◆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신중하면서도 공감어린 브리핑
  - 인적피해에 대해 신중한 용어 사용 및 진술한 애도와 위로 표명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브리핑 및 행동
- 인명관련 집계는 반드시 확인된 현재시간 현황만 언급, 변동가능성 표명

◆ 브리핑 방법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은 신중히 언급
- 알려질 사실은 사정과 맥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발표
- 필요시 보조자료(도면, 모형물, 애니메이션 등), 관계 인사 등을 활용
-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명확하게, 오보는 즉시 대응

브리핑 이후

- 추가된 사항, 새로운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및 추가 브리핑 실시
- 언론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수습·복구

코드번호 : 12-4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 이재민 경제적 지원

조치내용 : 저소득층 지원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저소득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의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수습·복구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이재민 경제적 지원
코드번호 : 12-5		조치내용 : 의료비 지원
주관부서 : 복지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의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 의료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수습·복구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피해보상 및 지원
코드번호 : 14-2		조치내용 : 피해보상 접수
주관부서 :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접수 장소

- 현장본부 내 일정공간(책상) 확보
-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

2. 인력배치

- 시군구청 직원 중심
- 필요시 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 배치

3.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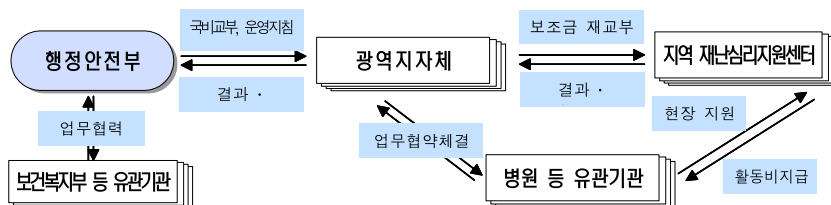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비치하여 One-Stop 해결
- 전기, 가스,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유관기관 지원반에 협조 요청

수습·복구 코드번호 : 26-8	<b>행 동 요 령</b>	조치목록 : 의료·방역 지원
		조치내용 :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주관부서 : 보건소 지원부서 : 협업부서 및 해당 읍면 협업기관 : 유관기관

1. 재난심리 지원(시도지원)

- (대상) : 재난으로 인한 가족, 목격자, 구조자 등
- (내용) : 시도별로 설치된 재난심리지원센터 중심, 무료 심리 상담활동 전개 및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
- (예산) 재난심리안정사업비(국고보조) 및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  
\*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활용

《 심리지원 추진체계 》



《 수 범 사 례 》

(의정부 화재)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임시거소(학교체육관, 306보충대) 마련 지원, 생계비(4인 기준 110만원) 지원, 긴급주거비(40만원) 지원, 전·월세 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등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50% 지원,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추경 부담

# 1 부서별 협업기능

## V. 의성군 협업체계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복지과	총무과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보건소	
협업기관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의성교육지원청, 지역응급의료센터,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의성경찰서, 의료기관	KT(안동지사)
의성군 주요업무	<p>&lt;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gt;</p> <p><b>[정후 대응]</b> [3-2] 정후 대응조치 - 감시활동 강화 - 안전실태 점검</p> <p><b>[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b> [6-1] 현장출동 지시 - 현장 상황관리관(건축과장), 초기대응반 등 [6-2] 현장출동 요청 - 읍면동장(통지문 설치 시 협조 요청) [6-3]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민간전문분야(안전관리자문단 등) 지원요청 - 근무조 편성</p> <p><b>[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b>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대처 상황 파악 [7-4]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자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총괄팀에 필요자원 지원 요청</p> <p><b>[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b>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중수본, 중대본 응원 요청 및 업무 지원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유관기관 협업 총괄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필요시) - 통지문 설치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총괄 - 예산 확보 및 집행</p> <p><b>[재난 및 사고 복구]</b> [9-3] 복수상황 총괄 [9-4]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 일부붕괴 시 정밀진단 실시</p>	<p>&lt;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gt;</p> <p><b>[이재민 구호]</b> [11-9]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임시시설 주거시설 확보</p> <p><b>[대민지원]</b> [10-2] (통지문 설치시) 현장 대민지원 조치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p> <p><b>[이재민 구호]</b> [11-6]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11-8] 구호물자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호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p> <p><b>[장애지원]</b> [13-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3-4] 유가족 지원 대책 - 유가족 상담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p> <p><b>[이재민 경제적 지원]</b> [12-6] 법률상담 및 자문 [12-8] 세제 및 금융지원</p> <p><b>[피해보상 및 지원]</b> [14-2] 피해보상 접수 [14-3] 피해 배보상 - 안명피해(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 재산피해 보상금 산정 및 지급</p>	<p>&lt;재난현장 구조수습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gt;</p> <p><b>[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b> [15-1] 긴급통신지원 - 통지본 긴급통신 업무 협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요청(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2] 통신두절 지역 복구 요청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p>
	협업기관	<p><b>[안전건설과]</b> - 붕괴정후 건축물 안전진단 및 조치 - 일부붕괴시 정밀안전진단</p> <p><b>[의성경찰서]</b> - 붕괴정후 건축물 접근제한 및 교통통제 요청 - 주민대피 지원 및 교통, 현장통제 요청</p> <p><b>[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b> -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요청</p> <p><b>[도시가스]</b> - 붕괴건물 및 주변지역 가스 밸브차단 요청</p> <p><b>[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지사)]</b> - 붕괴건물 전기 차단 조치 요청</p> <p><b>[의성소방서]</b> -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현황 요청</p>	<p><b>[의성교육지원청]</b>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p> <p><b>[지역응급의료센터]</b> -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p> <p><b>[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b> - 대피소 설치 및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심리상담반 운영</p> <p><b>[의성경찰서]</b> -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확인</p> <p><b>[의료기관]</b> - 영안실 확보 및 사상자 안치</p>

기능	④ 시설응급복구	⑤ 에너지기능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주관부서	안전건설과	경제투자과	안전건설과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유통정책과, 농축산과		
협업기관	의성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성지사), 지역도시가스	의성소방서, 제3260부대 5대대
주요업무	<p><b>&lt;피해시설 응급복구&gt;</b></p> <p><b>[시설응급복구]</b>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16-9]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보상 및 사후관리 요청</p> <p><b>[현장 시설응급복구(통지본 설치시)]</b>  [17-1] 긴급복구반 편성 및 운영  [17-2] 현장 시설응급복구 조치 지원</p>	<p><b>&lt;가스전기유류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능회복 지원&gt;</b></p> <p><b>[재난현장 에너지 지원]</b>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19-2] 통지본 에너지 지원  [19-3]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9-4]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 가스, 전기 차단 요청(한전, 전기·가스 공사, 서라벌도시가스)</p> <p><b>[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b>  [18-2]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p>	<p><b>&lt;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gt;</b></p> <p><b>[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b>  [20-2] 긴급구조통제단의 필요자원 파악 및 신속지원</p> <p><b>[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b>  [21-1] 방재자원동원 관계자 긴급 사전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21-2] (필요시)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특수장비 동원  [21-5] (필요시)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21-7]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p> <p><b>[현장 자원지원(통지본 설치 시)]</b>  [22-1] 자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22-2] 방재자원 현장지원 조치  - 인력, 장비, 자재, 시설 등</p>
	의성군		
협업기관	<p><b>[안전건설과]</b>  ◦ 붕괴건물 및 주변 건물 안전점검</p> <p><b>[안전건설과]</b>  ◦ 재난지역 주변 교통시설 응급복구</p>	<p><b>[한국전기안전공사(의성지사)]</b>  ◦ 붕괴건물 전기 차단 조치 요청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공급 및 안전 점검 요청  ◦ 통지본 전기공급 요청  ◦ 붕괴건물 주변 전기시설 응급복구 요청  ◦ 주변지역 전기공급 재개</p> <p><b>[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지사)]</b>  ◦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 붕괴건물 주변 가스공급을 위한 응급복구  ◦ 주변지역 가스공급 재개</p> <p><b>[도시가스]</b>  ◦ 붕괴건물 및 주변지역 가스 밸브차단  ◦ 붕괴건물 주변 가스공급을 위한 응급복구  ◦ 주변지역 가스공급 재개</p>	<p><b>[의성소방서]</b>  ◦ 긴급구조 필요사항 파악 요청 및 지원</p> <p><b>[3260부대 5대대]</b>  ◦ (필요시) 인력 및 장비 동원</p>

기능	⑦ 교통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부서	일자리창출과	보건소
지원부서	안전건설과	농축산과
협업기관	의성경찰서	보건지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260부대 5대대, 의성경찰서
주요업무	<p><b>&lt;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gt;</b></p> <p><b>[교통상황파악]</b>  [23-2]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붕괴건축물 주변 교통상황파악  - 붕괴건축물 주변 교통통제 요청(경북경찰청, 모범택시운전자 등 민간협회)</p> <p><b>[대체교통수단 마련]</b>  [24-1]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우회로 및 수송로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p> <p><b>[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b>  [25-1]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 임시주차장 마련</p>	<p><b>&lt;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등&gt;</b></p> <p><b>[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b>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장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반편성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현장응급처치  [27-4] 사망자의 임시영안실 안치</p> <p><b>[의료·방역지원]</b>  [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 요청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기축 심리치료</p> <p><b>[환자이송 및 관리]</b>  [29-2] 사상자 등 조치상황 파악 및 보고</p> <p><b>[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b>  [32-1] 응급의료소 지원</p>
	의성군	
협업기관	<p><b>[의성경찰서]</b>  ◦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요청  ◦ 우회로 확보 및 인근 교통정리 요청</p>	<p><b>[보건지소]</b>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p> <p><b>[지역응급의료센터]</b>  ◦ 응급의료기관 확보 및 지원  ◦ 피해자 및 유기축 심리치료 지원</p> <p><b>[3260부대 5대대]</b>  ◦ (필요시) 군의관 등 의료인력 지원</p> <p><b>[의성경찰서]</b>  ◦ 응급환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사상자 신원확인</p>

기능	㉑ 재난현장 환경정비	㉒ 자원봉사관리	㉓ 사회질서유지
주관부서	환경측산과	복지과	총무과
지원부서			
협업기관		대한적십자(경북지사)	의성경찰서
주요업무	<p>&lt;재난현장 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gt;</p> <p><b>[폐기물 수거 및 처리]</b> [34-6]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34-7] 재난 폐기물 처리 상황 보고 [34-10]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p> <p><b>[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b> [37-1] 환경정비 지원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붕괴잔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p> <p><b>[환경관리]</b> [36-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p>	<p>&lt;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gt;</p> <p><b>[자원봉사관리]</b> [38-1] 자원봉사자 모집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8-4]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설치</p> <p><b>[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b>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39-2] 현장 통합지원봉사센터 지원</p>	<p>&lt;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gt;</p> <p><b>[주민대피(필요시)]</b> [40-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사전대피 조치 지시 [40-5] 대피명령 지시 [40-6] 대피실시 (임무수행) [40-7] 대피활동 상황 보고 전달 [40-9] 주민 대피완료 보고</p> <p><b>[통제활동(필요시)]</b> [41-1] 교통통제 - 붕괴건축물 주변 교통통제 [41-2] 출입통제(Police line) - 붕괴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p> <p><b>[질서유지활동]</b> [42-2] 재난 현장 질서유지 [42-1]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p> <p><b>[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b> [43-1]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p>
	협업기관		<b>[대한적십자(경북지사)]</b>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재난 구호봉사단 설치-운영 요청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요청

기능	㉔ 수색, 구조구급	㉕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의성소방서	홍보담당관
지원부서	보건소	총무과
협업기관	의성경찰서, 3260부대 5대대	지역방송사, 의성경찰서
주요업무	<p>&lt;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등&gt;</p> <p><b>[수색구조구급지원]</b>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44-3] 긴급구조 현장 상황 기록 및 지원 요청사항 검토 - 긴급구조 대응 활동사항 확인 [44-4]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44-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원 [44-6] 재난긴급대응단 출동 건의</p> <p><b>[현장 긴급구조 지원(통지본 설치시)]</b> [45-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지원</p>	<p>&lt;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gt;</p> <p><b>[재난방송]</b> [46-2] (필요시)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발령 등) - 지상파, 지역방송에 자막방송 요청</p> <p><b>[언론대응]</b> [47-1]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47-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7-4] 브리핑 및 취재지원</p> <p><b>[현장 언론홍보지원(통지본 설치시)]</b> [48-1] 현장 브리핑 및 취재지원 - 현장 브리핑 - 현장 취재지원</p>
	협업기관	<b>[의성경찰서]</b> ◦ 재난현장 응급구조 지원
	<b>[3260부대 5대대]</b>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지원	<b>[의성경찰서]</b> ◦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 [1] 재난상황관리(주관부서:안전건설과, 지원부서:총무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우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경우 대응]</b> [3-2] 장우 대응조치 - 감시활동 강화 - 안전센터 점검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안전건설과 상황실(054-830-6153)	<b>안전건설과 상황실 (054-830-6153)</b> ✓ 화산폭발 정보 접수 및 상황 모니터링 ✓ 초기 상황인제(시정 및 유관기관) ✓ 도민안전실정,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등 초기상황보고	<b>안전건설과 상황실 (054-830-6153)</b> ✓ CBS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해당지역 재난문자 발송 ✓ 여진 발생대비 상황모니터링 실시	<b>안전건설과 상황실 (054-830-6153)</b> ✓ 대차사관보교서 작성 및 전파	<b>안전건설과 상황실 (054-830-6153)</b> ✓ 2차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b>[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b> [6-1] 현장출동 지시 - 현장 상황관리(안전건설과장), 초기대응반 등 [6-2] 현장출동 요청 - 해당시군(통지보 설치 시 협조 요청) [6-3] 긴급 현장지원 요청 - 가스, 전기 차단 등 2차피해 방지 - 주민대피 및 현장통제 지원요청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 민간전문분야(안전관리자전문 등) 지원요청 - 근무조 편성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603)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초기상황 정보접수 및 재난상황 분석 판단 ✓ 자연재난과장, 재난복구담당과장, 지원담당자 청취 ✓ 발송사 재난방송 모니터링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피해 예상현황 파악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피해현장 주민대피 명령 및 지원검토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피해 현황 파악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지시 ✓ 피해현장 주민대피 명령 및 지원 실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지시 (계속) ✓ 종합피해상황 및 복구 수습현황 자료작성 ✓ 민관 합동 및 중앙 피해조사반 운영 검토				
<b>[재난상황실(지대본 상황실) 가동]</b> [7-1]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 초기대응, 비상상황, 수습 복구 대처상황 파악 [7-4] 필요지원 파악 및 지원요청 - 필수지원(인력, 장비 등) 파악 - 재난상황물에 필요지원 지원 요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최덕경(054-830-6329)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초기상황 확인 및 현장피해, 대처사항 파악 ✓ 상황판단회의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조치 검토 ✓ 지대본 가동을 위한 인력 장비 지원 파악 ✓ 13개 협업부서 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검토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초기상황 확인 및 현장피해, 대처사항 보고 ✓ 상황판단회의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조치 검토 ✓ 지대본 가동을 위한 인력 장비 지원 실시 ✓ 13개 협업부서 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실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피해 현황 파악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처 ✓ 상황판단회의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조치 실시 ✓ 지대본 가동을 위한 인력 장비 지원 실시 ✓ 13개 협업부서 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실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종합피해상황 및 복구수습현황 자료 보고 ✓ 피해사항 파악 및 장비 투입(계속) ✓ 13개 협업부서 업무 및 유관기관 피해복구 지원 ✓ 민관 합동 및 중앙 피해조사반 운영 준비 ✓ 긴급 위험도 평가단 운영 지원 준비				
<b>[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운영]</b> [8-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중추반, 중대본 등원요청 및 업무지원 -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상황종합 - 협업 가능별 조치사항 종합 - 유관기관 협업 종합 [8-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통지본) 운영(필요시) - 통지보 설치 - 현장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조치활동 종합 - 예산 확보 및 집행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603)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초기상황 확인 및 현장피해, 대처사항 파악 ✓ 지대본 운영을 위한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지원 파악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지대본 운영을 위한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지원 실시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피해 수습 상황 종합 지원 ✓ 지대본 운영에 따른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복구지원 실시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따른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종합피해상황 및 복구수습 종합지원 ✓ 지대본 운영에 따른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복구지원 추진 ✓ 민관 합동 및 중앙 피해조사반 운영 ✓ 긴급 위험도 평가단 운영 지원 운영				
<b>[재난 및 사고 복구]</b> [9-3] 복구상황 종합 [9-4] 재난피해 예방방지대책 강구 - 일부복구 시 정밀진단 실시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603)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사전준비 ✓ 단계별 상황전파 준비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여진 확인 및 2차 현장피해 징후 모니터링 ✓ 피해현황 긴급복구 준비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여진 ✓ 피해현황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종합피해상황 및 복구수습 종합지원 ✓ 지대본 운영에 따른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인력 장비 복구지원 추진 ✓ 민관 합동 및 중앙 피해조사반 운영에 따른 상황보고 ✓ 긴급 위험도 평가단 운영 지원 운영에 따른 상황보고				

### [2] 긴급 생활안정 지원(주관부서:안전건설과, 지원부서:복지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우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이재민 구호]</b> [11-9]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임시시설 주거시설 확보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603)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화산폭발 정보 접수 정보의 접수 <b>의성교육지원청 ☎ 054-830-1163</b>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시설 파악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화산폭발 정보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민 구호 지시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화산폭발 정보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민 구호 실시 및 지원현황 파악 <b>의성교육지원청 ☎ 054-830-1163</b>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실시 및 현황 파악	<b>안전건설과 (054-830-6603)</b> ✓ 이재민 구호 실시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검토				
<b>[대민지원]</b> [10-2] (통지보 설치시) 현장 대민지원 조치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치료 지원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이창우(054-830-6165)	<b>복지과 ☎ 054-830-6165</b> ✓ 긴급생활안전지원체계 구축 체계 현황 파악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점검 ✓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 점검	<b>복지과 ☎ 054-830-6165</b> ✓ 긴급생활안전지원체계 구축 체계 가동 지시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지시 ✓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 가동 지시	<b>복지과 ☎ 054-830-6165</b> ✓ 긴급생활안전지원체계 구축 체계 가동으로 현장 대민 지원 조치,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실시 및 현황파악 ✓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하여 이재민 구호 실시	<b>복지과 ☎ 054-830-6165</b> ✓ 대민지원 조치, 이재민 생활안정 추가 지원 및 장기 수습 및 구호대책 수립 ✓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유관기관 상호 협력하여 이재민 구호 실시				
<b>[이재민 구호]</b> [11-6] 이재민 구호 - 구조물류 소모량 등 구조상황 파악 - 구조물자 확보 및 지급 [11-8] 구조물자 지원 요청 - 구조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조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이창우(054-830-6165)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급수, 급식 시설 현황 파악 ✓ 구조물류 비축 현황 자료 점검 ✓ 구조물자 지원 관련 점검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급수, 급식 시설 현황 홍보 ✓ 구조물류 비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민 구호 지시 ✓ 구조물자 지원으로 이재민 지원 지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급수, 급식 시설 구조 실시 ✓ 구조물류 비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민 구호 ✓ 구조물자 지원으로 이재민 지원 실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구호 ✓ 복지과 ☎ 054-830-6165				
<b>[장제지원]</b> [13-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3-4] 유가족 지원 대책 - 유가족 상담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이창우(054-830-6165)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관련 유가족 지원 대책 점검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체계 점검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관련 유가족 지원 대책 지시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체계 가동 지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관련 유가족 지원 대책 실시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체계 가동으로 이재민 구호 실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관련 유가족 지원 대책 ✓ 희생자 가족 심리치료 지원체계 가동으로 이재민 구호 실시				
<b>[이재민 경제적 지원]</b> [12-6] 법률상담 및 자문 [12-8] 세제 및 금융지원 담당부서: 복지과 담당자: 이창우(054-830-6165)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점검 ✓ 세제 및 금융지원 체계 점검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점검 ✓ 세제 및 금융지원 체계 가동 지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배부 ✓ 세제 및 금융지원 체계 가동으로 이재민 구호 실시	<b>복지과 ☎ 054-830-6165</b> ✓ 이재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판단 ✓ 세제 및 금융지원으로 이재민 구호 실시				

### [3] 긴급 통신지원(주관부서:총무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우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b> [15-1] 긴급통신지원 - 통지본 긴급통신 업무 협조 - 재난상황 긴급통신 지원요청(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2] 통신수습 지원 복구 요청 - 통신지원기관(KT 등 기간통신사업자)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조우형(054-830-6800)	<b>총무과 ☎ 054-830-6800</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통신수습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b>총무과 ☎ 054-830-6800</b> ✓ 통신시설 피해사항 및 소통상황 파악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 활용현황 파악	<b>총무과 ☎ 054-830-6800</b> ✓ 통신시설 긴급복구 지원 실시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긴급복구 대책 마련 <b>KT(안동지사) ☎ 054-832-0007</b> ✓ 피해 통신시설 긴급수복대책 수립시행	<b>총무과 ☎ 054-830-6800</b> ✓ 통신시설 긴급복구 지원 및 복구 현황 파악 ✓ 전용회선 등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두절 대비 긴급 복구 실시 <b>KT(안동지사) ☎ 054-832-0007</b> ✓ 피해 통신시설 복구				

[4] 시설응급복구(주관부서: 안전건설과, 지원부서:유통정책과, 농축산과, 안전건설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후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시설응급복구]</b> [16-4] 응급복구 지원 요청 [16-5]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6-7] 장기 수습 복구 방안 마련 [16-9] 재난수습 주무부서에 보상 및 사후관리 요청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802) 지원부서: 유통정책과, 농축산과, 지역재생과 담당자: 황정하(054-830-6273), 이유진(054-830-6284) 백선형(054-830-6352)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도로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도로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도로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농업시설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농업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농업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농업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농업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축산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농축산과 ☎ 054-830-6573</b> ✓ 축산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축산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농축산과 ☎ 054-830-6573</b> ✓ 축산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축산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농축산과 ☎ 054-830-3414</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건축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건축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건축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건축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건축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하천 붕괴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하천 붕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하천 붕괴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하천 붕괴에 따른 복구 가능 인력 투입 ✓ 하천 붕괴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에 복구요청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b>[현장 시설응급복구(홍지본 설치시)]</b> [17-2] 현장 시설응급복구 조치 지원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802) 지원부서: 유통정책과, 농축산과, 지역재생과 담당자: 황정하(054-830-6273), 이유진(054-830-6284) 백선형(054-830-6352)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유통정책과 ☎ 054-830-6278</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농축산과 ☎ 054-830-6573</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585</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가능인력 투입 ✓ 피해사상 접수 및 긴급복구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사상 파악 및 응급복구 장비 출자 투입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동원 지원(계속)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지원			

[5] 에너지기능복구(주관부서:경제투자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후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재난현장 에너지 지원]</b> [19-1] 구조구급현장 에너지 지원 [19-2] 통지본 에너지 지원 [19-3]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9-4]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 가스, 전기 차단 요청(화전, 전기-가스공사, 서라벌도기스)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담당자: 김정하(054-830-6248)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에너지지원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준비 및 응급장비 파악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인명구조현황 및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 2차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에너지지원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에너지지원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계속)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b>[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b> [18-2] 에너지 공급체계 지원 요청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담당자: 김정하(054-830-6248)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 시설응급 복구 조치 지원 준비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인명구조현황 및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요청 ✓ 2차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지원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에너지지원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지원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b>경제투자과 ☎ 054-830-6585</b> ✓ 에너지지원 파손에 따른 조치 긴급복구 실시 지원(계속)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6] 재난자원 지원(주관부서:안전건설과)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후 감지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수습·복구	
<b>[방재지원 확보 및 수요관리]</b> [20-2] 긴급구조지원단의 필요사항 파악 및 신속지원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803)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재난자원 지원가능 장비 자료 검토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발생 파악 및 방재 필요자원 수요 파악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발생 지역 방재 필요자원 지원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피해발생 지역 방재 필요자원 지원 실시(계속)				
	<b>[방재지원 동원 및 지원]</b> [21-1] 방재지원동원 관제차 긴급 사면회의 - 피해 규모에 따라 동원범위 설정 - 복구에 필요한 추가 방재자원 및 지원규모 분석 및 검토 [21-2] (필요시) 유관단체 인력 동원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 [21-3]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특수장비 동원 [21-5] (필요시)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21-7] 방재지원 동원 지원 관리 - 방재지원관리, 지원실황 청문 및 보고 [21-8]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803)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방재지원동원 가능 자원 자료 검토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현황 파악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실시 (계속)			
<b>[현장 지원지원(홍지본 설치시)]</b> [22-1] 지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 인력, 장비, 자재, 시설 등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김민우(054-830-6803)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지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준비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지원지원반 편성 및 운영 실시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지원	<b>안전건설과 ☎ 054-830-6803</b>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지원 (계속)				



[7] 교통대책(주관부서:일자리창출과 지원부서:안전건설과)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교통상황 파악]</b> [23-2]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통행권율률 주변 교통상황 파악 - 통행권율률 주변 교통상황 요점(역상경감차)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이정아(054-830-6251)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시설 현황 파악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재난발생 주변 교통시설 피해사정 파악 ✓ 교통시설 복구에 따른 교통통제 지원 요청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사정 파악 ✓ 교통시설 복구에 따른 교통통제 실시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사정 파악 ✓ 교통시설 복구에 따른 교통통제 및 응급복구 실시(계속)
<b>[대체교통수단 마련]</b> [24-1]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우회로 및 수송로 마련 [24-5]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이정아(054-830-6251)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교통통제 및 안내방송 준비 ✓ 인력 및 자원 수송 가능 현황 파악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교통통제 및 안내방송 실시 ✓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실시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교통두절 지역의 우회교통 수단 ✓ 교통대책수단 마련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교통두절 지역의 우회교통 수단 (계속) ✓ 교통대책수단 마련으로 수송 지원
<b>[현장 교통대책(통지본 설치시)]</b> [25-1]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 임시주차장 마련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이정아(054-830-6251)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현장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준비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현장 교통대책반 편성 및 운영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현장 교통대책반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및 피해조사		<b>일자리창출과 ☎ 054-830-6251</b> ✓ 현장 교통대책반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임시주차장 마련

[8] 의료 및 방역서비스(주관부서:보건소)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현장응급의료소 운영(필요시)]</b> [27-1]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소정배치 [27-2] 응급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27-3] 부상자 분류 및 현장응급처치 [27-4] 사망자의 임시명단상 인적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강미자(054-830-6662)		<b>보건소 ☎ 054-830-6662</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가능 자료 검토 ✓ 응급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준비		<b>보건소 ☎ 054-830-6662</b>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실시 ✓ 응급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b>보건소 ☎ 054-830-6662</b> ✓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 지원 ✓ 응급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계속) ✓ 부상자 분류 및 현장 응급처치		<b>보건소 ☎ 054-830-6662</b> ✓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 지원 ✓ 응급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계속) ✓ 부상자 분류 및 현장 응급처치
<b>[의료·방역지원]</b> [26-1] 의료방역분야 상황 총괄 [26-2]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 (필요시) 군외관 등 의료인력 지원 요청 [26-7]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강미자(054-830-6662)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방역분야 및 상황 총괄 준비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준비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방역분야 및 상황 총괄 실시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실시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방역분야 및 상황 총괄 실시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실시 ✓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실시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방역분야 및 상황 총괄 실시(계속) ✓ 의료 및 방역 인력, 물품 파악 및 지원 실시(계속) ✓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실시(계속)
<b>[환자이송 및 관리]</b> [28-2] 부상자 등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강미자(054-830-6662)		<b>보건소 ☎ 054-830-6662</b> ✓ 부상자 등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준비		<b>보건소 ☎ 054-830-6662</b> ✓ 부상자 등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b>보건소 ☎ 054-830-6662</b> ✓ 부상자 등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계속)		<b>보건소 ☎ 054-830-6662</b> ✓ 부상자 등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계속)
<b>[현장의료방역지원(통지본 설치시)]</b> [32-1] 응급의료소 지원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강미자(054-830-6662)		<b>보건소 ☎ 054-830-6662</b> ✓ 응급의료소 지원 준비		<b>보건소 ☎ 054-830-6662</b> ✓ 응급의료소 지원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 및 방역서비스에 필요사항 지원 요청		<b>보건소 ☎ 054-830-6662</b> ✓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9] 재난현장 환경정비(주관부서:환경축산과)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폐기물 수거 및 처리]</b> [34-6]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34-7] 재난 폐기물 처리 상황 보고 [34-10] 재난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담당자 : 김중천(054-830-6192)/오은정(054-830-6517)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재난 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준비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재난폐기물 긴급 수거 및 처리 지시 ✓ 임시이적장 원안 및 안내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재난폐기물 긴급 수거 및 운반 처리 ✓ 임시이적장 폐기를 처리할 파악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재난폐기물 긴급 수거 및 운반 처리(계속) ✓ 임시이적장 폐기를 처리할 파악(계속) ✓ 재난 폐기를 처리비용 지원
<b>[현장 환경정비지원(통지본 설치시)]</b> [37-1] 환경정비 지원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응급진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담당자 : 김중천(054-830-6192)/오은정(054-830-6517)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준비 ✓ 불기전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준비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실시 ✓ 불기전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 불기전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실시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계속) ✓ 불기전해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실시(계속)
<b>[환경관리]</b> [36-2]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담당부서 : 환경축산과 담당자 : 김중천(054-830-6192)/오은정(054-830-6517)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준비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지시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실시		<b>환경축산과 ☎ 054-830-6192</b> ✓ 사고지역 주변 환경관리 실시

[10] 자원봉사관리(주관부서:총무과)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자원봉사관리]</b> [38-1] 자원봉사자 모집 [38-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38-3]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38-4]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김재영(054-830-6456)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관리, 급식지원 준비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준비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관리, 급식지원 지시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시 ✓ 민간전문구조대체 지원 요청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자 모집, 기능별 분류 및 배치, 급식지원 실시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 민간전문구조대체 지원 실시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자 모집, 기능별 분류 및 배치, 급식지원 실시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계속) ✓ 민간전문구조대체 지원 실시(계속)
<b>[현장 자원봉사지원(통지본 설치시)]</b> [39-1]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39-2]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김재영(054-830-6456)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준비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준비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지시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지시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실시		<b>환경축산과 ☎ 054-830-6527</b> ✓ 자원봉사지원반 편성 및 운영(계속) ✓ 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 지원 실시(계속)

[11] 사회질서유지(주관부서:의성경찰서, 지원부서:경제투자과)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주인대피(필요시)】</b> [40-1]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사전대피 조치 지시 [40-5] 대피명령 지시 [40-6] 대피실시 (임무수행) [40-7] 대피활동 상황 보고 전달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하승재(054-830-6617)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준비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 대피활동 상황 보고 및 전달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지시 ✓ 대피활동 상황 보고 및 전달 (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실시 ✓ 대피활동 상황 보고 및 전달 (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담당자 대기 실시 ✓ 대피활동 상황 보고 및 전달 (계속)			
<b>【통제활동(필요시)】</b> [41-1] 교통통제 - 풍과건축 주변 교통통제 [41-2] 출입통제(Police line)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하승재(054-830-6617)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화산폭발 피해 지역 교통통제 준비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준비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지진발생 지역 교통통제 지시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지시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지진발생 지역 교통통제 실시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실시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지진발생 지역 교통통제 실시(계속)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실시(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지진발생 지역 교통통제 실시(계속) ✓ 풍과건축물 주변 민간인 출입통제 실시(계속)			
<b>【질서유지활동】</b> [42-2] 재난 현장 질서유지 [42-1]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하승재(054-830-6617)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재난 현장 질서유지 준비 ✓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준비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재난 현장 질서유지 지시 ✓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지시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재난 현장 질서유지 실시 ✓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실시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재난 현장 질서유지 실시(계속) ✓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실시(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재난 현장 질서유지 실시(계속) ✓ 재난 현장 범죄예방 활동 실시(계속)			
<b>【현장 주민대피 및 보호지원(통지본 설치시)】</b> [43-1]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담당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하승재(054-830-6617)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준비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지시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실시(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실시(계속)	<b>의성경찰서 ☎ 054-830-8252</b> ✓ 주민대피 및 보호 지원 실시(계속)			

[12] 수색, 구조·구급(주관부서:의성소방서, 지원부서:보건소)

구분	1단계	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b>【수색구조구급지원】</b> [44-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44-2]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44-3] 긴급구조 현장 상황 기록 및 지원 요청사항 검토 - 긴급구조 대응 활동사항 확인 [44-4]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44-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원 [44-6] 재난긴급대응단 출동 건의 담당부서 : 의성소방서 담당자 : 손수영(054-830-7750)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화산폭발 정보의 접수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준비 ✓ 수색 구조 구급 상황 파악준비 ✓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준비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요청 사항 협조 지시 ✓ 수색 구조 구급 상황 파악 지시 ✓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시 ✓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준비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요청 사항 협조 실시 ✓ 수색 구조 구급 상황 파악 실시 ✓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실시 ✓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실시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요청 사항 협조 실시(계속) ✓ 수색 구조 구급 상황 파악 실시(계속) ✓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실시(계속) ✓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실시(계속)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지원 요청 사항 협조 실시(계속) ✓ 수색 구조 구급 상황 파악 실시(계속) ✓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실시(계속) ✓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실시(계속)			
<b>【현장 긴급구조 지원(통지본 설치시)】</b> [45-1]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지원 담당부서 : 의성소방서 담당자 : 손수영(054-830-7750)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준비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지시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실시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실시(계속)	<b>의성소방서 ☎ 054-830-7750</b>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원소 실시(계속)			

# VI. 부록

- 각 지자체 재난대응 관련한 필요사항 등을 부록으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수습 길라잡이』 (행정안전부, 2019. 6.)의 서식을 적극 활용

## 부록 1 서 식

【제1호 서식】

### ○○ 사고 현장 종합상황 보고서

보고자 : 직 성 명 :

2016. 00. 00(수) 00:00현재

#### I 사고 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 (기타 특이사항 기재)
- 원 인 :
- 인명피해 상황 : 인원 ○○명

구 분	계			사망자			부상자			비고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원										

※ (부상자 치료현황 기재)

- 사망자 안치 현황 : 총 ○○명

구 분	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소 계	-	-	-	-	-	-	-
성 명							

- 부상자 입원 현황 : 총 ○○명 ( 입원 : ○○명)

구 분	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비고 (거주지)
소 계	-	-	-	-	-	-	-	-
성 명								

#### II 금일 주요 추진실적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관리대장**

2016. 00. 00(수) 00:00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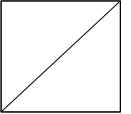
사망자(00명)

병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장지	발인	비고
○○○병원	○○○	남	00.00.00	○○ 추모공원	○○.○○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여		○○○○○ 선영	○○.○○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남			○○.○○	장례종료 (00일 00:00)
		여				
○○○병원		여			○○.○○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남			○○.○○	장례종료 (00일 00:00)
○○○병원		남			○○.○○	장례종료 (00일 00:00)

부상자(00명) 중상 00 / 경상 00

병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병실	부상정도	비고
○○○병원	○○○	남	00.00.00	중환자실	중상	수술(10.21)
		남		○○병동 일반실	중상	
○○○병원		남		○○호 일반실	중상	
○○○병원		남			중상	
		남			중상	00.00 예정
		남			중상	수술 (00.00)
○○○병원		여			중상	수술 (00.00)
○○○병원		여			경상	
		여			경상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예시**



의안번호	제 2016- 호
의결 년월일	2016. . . (제0회)

심  
의  
사  
항

**○○ 재난(사고) 관련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기준안**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안건

제출 부서	○○○과
제출년월일	2016. 0. 0.

## 1. 의결주문

- 2016년 0월 0일 00도 00군 00읍 00리에서 발생한 00재난(사고)와 관련하여 “부상자 의료비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안”을 심의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00재난(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부상자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기준안”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3. 심의 주요내용

### 1. 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지원대상) 00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개인당 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비용
- (대상질환) 재난(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 (지원기간) '16.0.0일 ~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 (지급방법) 해당 의료기관 등에 지급보증을 하여 지원대상자가 우선 치료 후 비용은 사후 정산  
※ 지원대상자가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소요재원) 시·군·구 ○○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재원 확보

### 2.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지원대상) 00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자(인정사망자 포함)
  - (지원내용) 개인당 장례비 000만원
  - (지급방법)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
  - (소요재원) 시·군·구 ○○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재원 확보
- ## 4. 기타 사항
- 동 심의안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급보증,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00시·군·구 00000과에서 처리

**의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기관용)**

【의료비 지급 청구서】					
의료비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의료 지원	의료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주소	(전화 : )			
	진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 구 금 액		금 원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의료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b>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구비서류	1.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비산출내역서, 진료비명세서 등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개인용)**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장례비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성 명		생년월일		
	진료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 소				
장례비 지원	의료기관명			신청금액	금 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례비 지원	장례일자	년 월 일	장례비 실집행액	금 원(₩ )	
	위와 같이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구비서류	1. 의료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의료비용(의료기관 및 약국) 영수증 1부 2. 장례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장례비집행 영수증 1부				

【제7호 서식】

○○ 사고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서식

2016년 00월 00일 00:00 현재

연번	위 치	피해유형	주거형태	세대주	세대원명
1		주택파손	건물주	홍길동	홍길동
2		주택파손	건물주	홍길동	김영희
3		주택침수	세입자	김철수	김철수
4		일시대피	세입자	김갑동	김갑동
5					
6					
7					
8					
9					
10					
11					
12					

※ 위치는 이재민이 거주하며 침수·파손된 집 주소  
 ※ 피해유형은 일시대피, 주택침수, 주택파손 중 선택  
 ※ 주거형태는 건물주, 세입자 중 선택

【제8호 서식】

○○ 사고 임시주거시설 소요현황

2016년 00월 00일 00:00 현재

연번	성 명	주 거 유 형	시 설 명	귀가조치
1	홍길동	공공시설	○○초등학교	임시거주
2	김영희	공공시설	○○초등학교	임시거주
3	김철수	기 타	○○○짬질방	임시거주
4	김갑동	친인척집	○○마을회관	귀가조치
5				
6				
7				
8				
9				
10				
11				
12				

※ 주거유형은 공공시설, 친인척집, 이웃집, 기타 중 선택  
 ※ 귀가조치는 임시거주, 귀가완료 중 선택



【제9호 서식】

○○ 사고 이재민 수습상황 보고서(초동)

■ 사고개요

- 일시 : 2016. 0. 00.(일) 00:00분경
- 장소 : 00시 남광북1길 8(000동) 00자동차공업사  
※ 공업사 건물 인근 아파트(000빌)로 화재 간접피해 발생
- 원인 : 조사 중(자동차공업사 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 이재민 발생현황

- 인명피해 : 단순연기흡입 000명(2.00일 자정 이전 전원 귀가)
- 피해주민 00세대 00명 대피유도(08:00'현재)  
※ 000경로당(000아파트 00세대 00명) 임시대피

■ 구호 조치사항

- 임시주거시설 지정  
※ 00경로당은 화재 건물로부터 도보 5분 거리
- 이재민 구호세트 지급(취사 00, 응급 000)
- 저소득 위기가정지원(자체사업) : 00시 주민복지과에서 논의 중  
※ 지원 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금일 현장확인 후 00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귀가여부 결정

【제10호 서식】

○○ 사고 이재민 수습상황 보고서(중간)

■ 사고개요

- 일시 : 2016. 0. 00.(요일) 00:00 ~ 00:00
- 장소 :

■ 피해민 발생현황

- 인명피해 : 000명(사망 0명, 중상 0, 경상 0), 귀가 0명)
- 이재민 피해접수 : 00세대 00명(남 0, 여 0)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지원 (필요시 서식 및 내용변경 가능)

구분	지원항목	지원현황	지원기준	비고
I. 생활 안정지원	① 긴급복지지원	▶ 주거비 ▶ 생계비 ▶ 장제비	▶ 세대별 0개월 지원 ▶ 세대별 지원금액	
	② 임시주거시설	▶ 00세대 00명	▶ 임시주거시설 제공	
	③ 구호물품 제공 등 봉사활동	▶ 응급구호세트 ▶ 개별구호물품	▶ 민간단체와 연계 지원	
	④ 이재민 주거대책	▶ 재난관리기금 지원 ▶ 전세임대 지원	▶ 재난관리기금 지원 - (대상) - (지원) ▶ 전세임대 - (대상) - (지원)	
II. 의료 심리지원	① 병원치료비	▶ 입원환자 : ▶ 진료비 추계 :	▶	
	② 기타 의료·방역 서비스	▶ 응급의료지원 :	▶ 의료반 운영 및 심리상담 등 보건업무	
	③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 상담실적 ▶ 상담인력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제11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철수일시	출동인원,장 비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역할	비고
			인원	장비				

【제12호 서식】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인력·장비· 자재 등의 소 유자	성명(회사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응원 요청 사항	일시	
	장소	
	응원 요청 내용	
	요청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 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고현장 자원봉사활동 보고서식

◆ 사건개요

1. 일시 : ○○월 ○○일 ○○:○○분
2. 장소 : ○○지역에 ○○○○ 사고 발생
3. 사고원인 :
4. 피해현황 : ○○지역 및 인근지역 이재민 ○○ 가구 발생, 가옥 ○○채 파손 등

◆ 일자별 주요 활동 사항6

- 2015. 01. 01(월) 시간대별 주요활동 정리
- 08:00 화재접수 및 피해현황 파악
- 09:00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구성
- 10:00 자원봉사자 123명 투입
- 11:00 이재민 지원 분야 자원봉사자 활동 개시

◆ 보도현황 및 활동 우수사례(별첨)

◆ 주요활동세부내역

자원봉사일일현황보고(2016.1.1.현재)

일자	총 봉사인원	봉사활동내용(명)					비고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누 계	-	-	-	-	-	-	

\* 중대본에 지원요청 사항, 향후 필요한 자원봉사자 수(현장 모집 불가 또는 부족 시)와 활동 분야 명기

**○○사고 현장조치 상황보고서**  
[ 기관 명 ]

보고자 : 직 성 명 : 2016. 00. 00(수) 00:00현재

사고개요

- 일시/장소 :
- 피해내용 :

자원동원(배치) 현황

기관명 (소속)	책임자 (전화번호)	인원 (명)	장비 (기, 대)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주요 조치사항 (시간대별)

- (00:00)
- (00:00)
- (00:00)

재난현장본부장 요청사항 처리내용

- 
- 

향후계획

- 
- 

**부록 2 위기 상황 전파 체계**

**1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예규)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발송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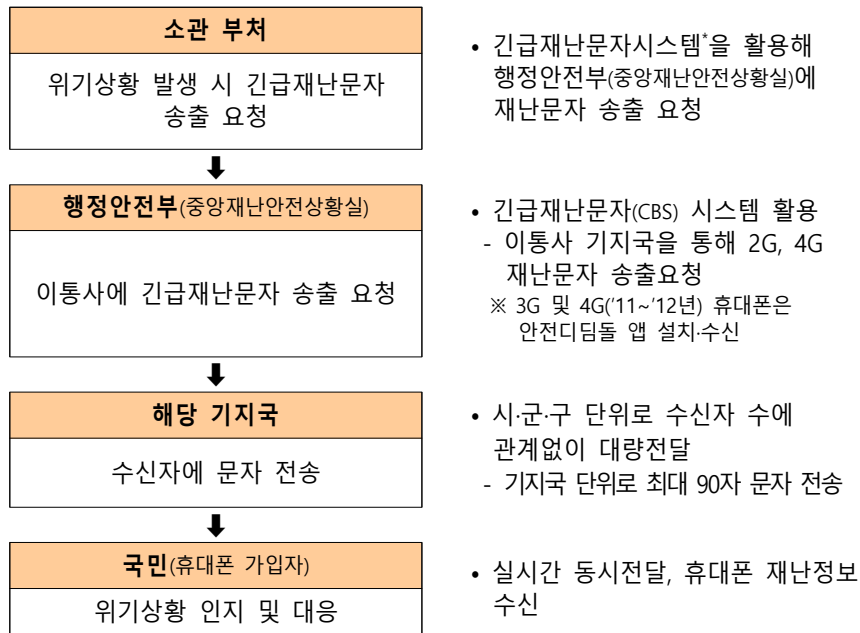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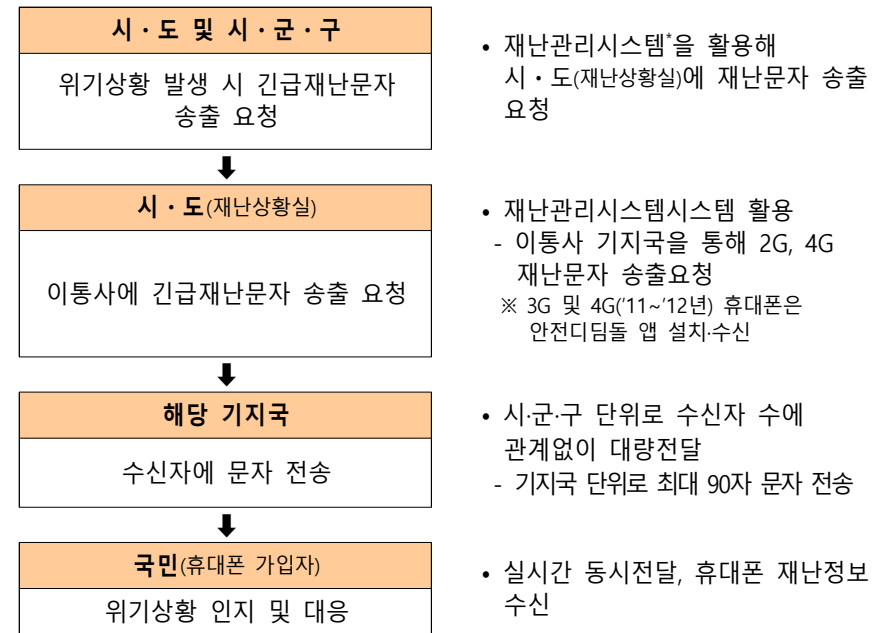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 송출절차(시·도 및 시·군·구)



\* 재난관리시스템(업무망) : <https://www.ndms.go.kr>



□ 표준문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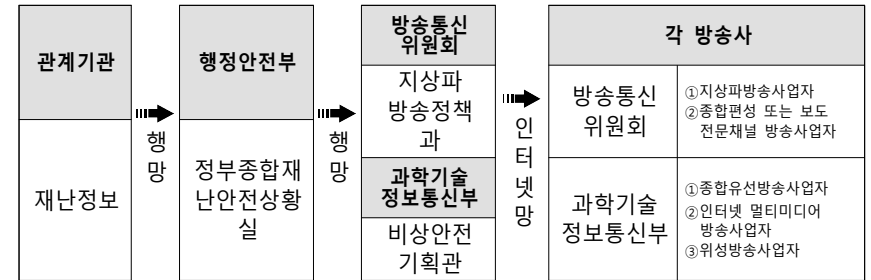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태풍경보.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홍수 주의보	4G폰	[〇〇홍수통제소] 오늘 00:00 〇〇강 〇〇시(〇〇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방송 등을 통해 홍수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G폰	[〇〇홍수통제소] 오늘 00:00 〇〇강 〇〇시(〇〇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4G폰	[〇〇홍수통제소] 오늘 00:00 〇〇강 〇〇시(〇〇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2G폰	[〇〇홍수통제소] 오늘 00:00 〇〇강 〇〇시(〇〇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대설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대설경보 발표.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〇〇시 〇〇지역 대설경보. 대중교통 이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②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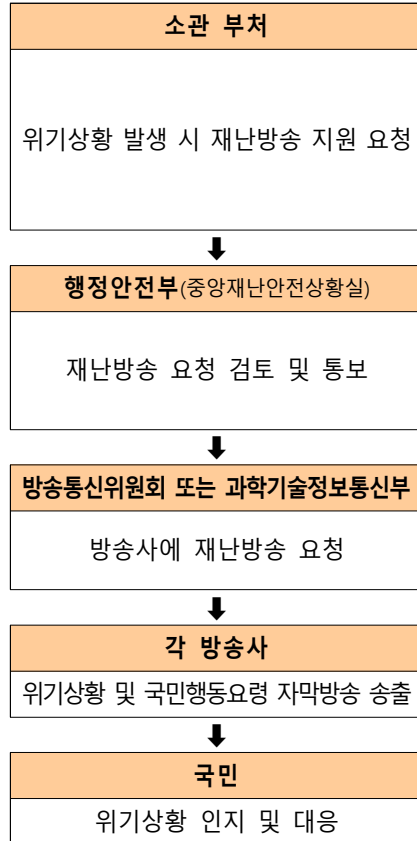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 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 발송절차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 ③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올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발령 사유, 경보의  
종류, 울림일시, 울림지역, 경보요청자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사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발령 지시
-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18. 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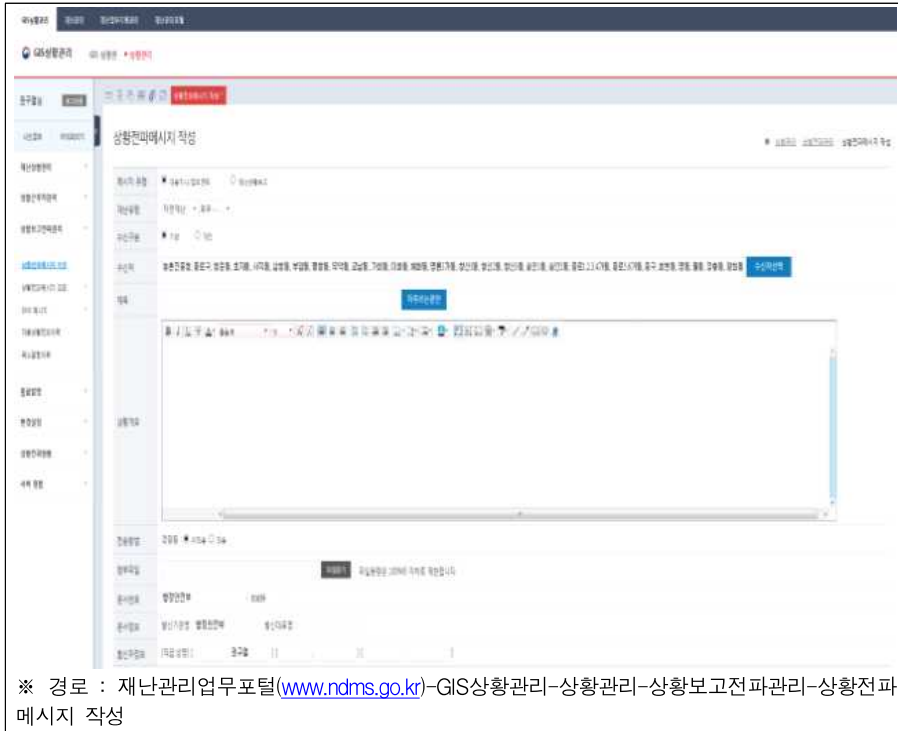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 시스템 개념도





## □ 메시지 작성 화면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http://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 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 부록 3 영상 회의 시스템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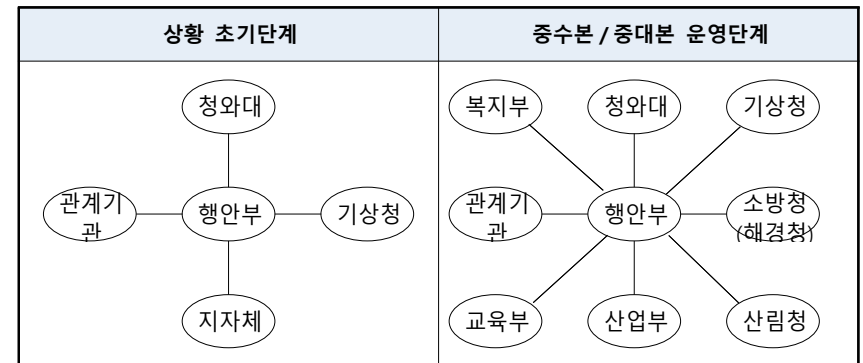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18부</li> <li>•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li> </ul>
지자체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li> <li>*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li> </ul>
재난관리 책임기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li> </ul>

### □ 영상회의 운영

※ VIP주재 회의운영 사례 : 태풍 "솔릭"(18.8.23), "솔릭"(19.9.6) 대처 긴급점검회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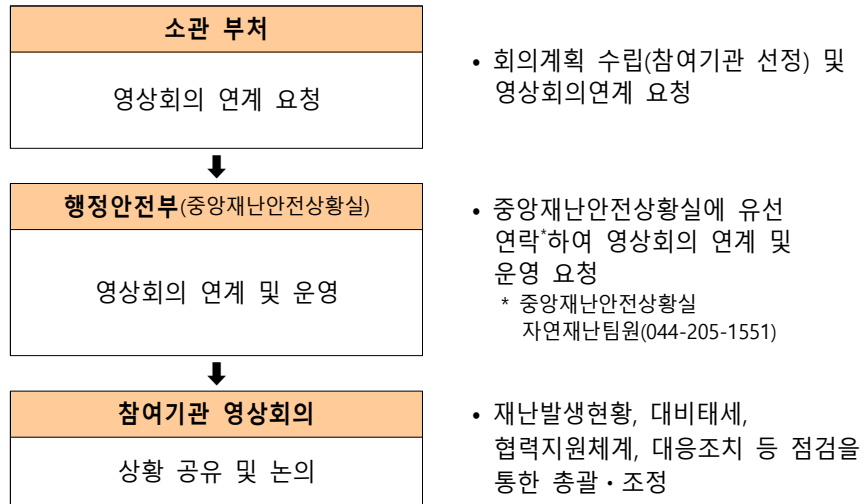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석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 예 : 대통령 회의 주제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부록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기본 원칙

- 신속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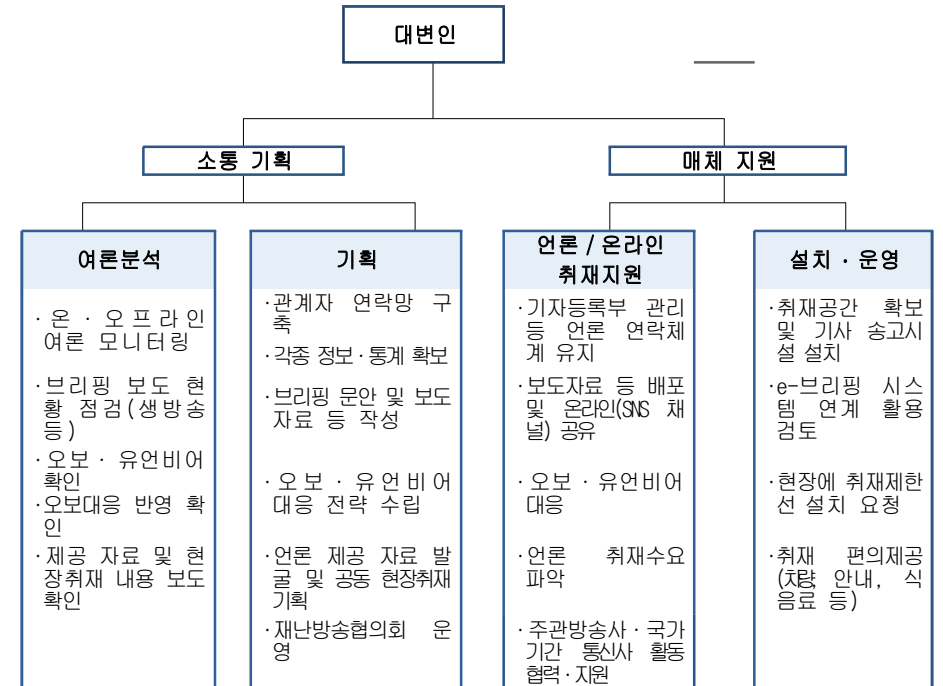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crisis)	위기 전 (pre-cri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li> <li>• 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li> <li>•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li> <li>• 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li> </ul>
	위기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li> <li>• 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li> <li>• 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li> <li>-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li> <li>- 응급임무 부여 / 비상근무 개시</li> </ul> </li> <li>• 여론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li> <li>-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li> </ul> </li> <li>•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li> </ul>

위기단계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연락</li> <li>-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li> <li>- 재난방송협의회 운영</li> <li>- 접근제한선(폴리라인) 설치 요청</li> <li>-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li> <li>-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li> </ul> </li> <li>•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li> </ul>
	위기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li> </ul>
위기 후 (post-cri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전파·확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li> <li>-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li> <li>- 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li> <li>- 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li> <li>- 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li> <li>-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li> </ul> </li> </ul>	

##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대변인 지정
  -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
-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리 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과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 한다.
- 특히 실시간 과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 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겟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 (매체)
-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 - 인구통계적 특성 - 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 / 사실 전달 - 집회 / 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li> <li>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li> <li>위기 전, 위기 중 그리고 위기 후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li> <li>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li> <li>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li> <li>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li> <li>사과 및 책임감 표현</li> <li>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li> <li>관계 개선 노력</li> <li>이미지 개선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li> <li>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li> <li>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li> <li>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li> <li>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li> <li>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li> <li>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li> <li>참여형 소통 방안</li> <li>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li> </ul>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 책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li> <li>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li> <li>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li> <li>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li> <li>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li> </ul> </li> <li>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 관리 필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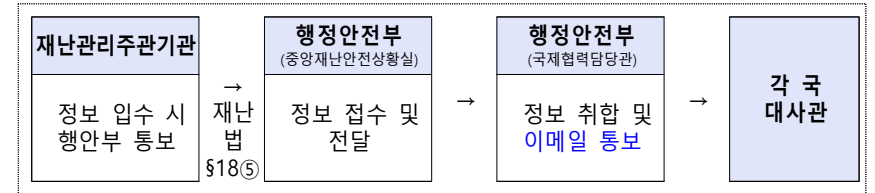
□ 구축 개요

-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국 대사관에 통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내용)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전달 체계



※ 주한 공관 대표 연락망 정보(외교부 홈페이지 공개) 활용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존재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해당 피해자 인적정보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외국인 국적 주한 공관에 피해 현황 통보
  - 재난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피해상황, 사상자 인적사항 등을 이메일 또는 FAX로 통보
  - \* 경찰·해양경찰 : 대사관에 사망자 정보 통보

【 수습사례 】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외국 국적 사망자(선원)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해당 외국 국적 대사관(부산출장소)에서 시신인계(3.2),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3.4)

〈Notification on Foreign Casualties of Accident/Disaster〉

We would like to notify your Embassy that foreign casualties of [ ] nationality occurred due to [ ] as below.

[ Personal Information of Casualties ]

- o Name:
- o Gender :
- o Age:
- o Nationality:
- o Degree of injury:

[Type of Accident]

[ ] Industrial accident [ ] Fire accident [ ] Traffic accident [ ] Drowning accident [ ] Vessel accident [ ] Others

[Details of Accident]

- o Date/Time : Feb. 23, 2021 (Tues) 09:00 (accident reported)
- o Place : oo facility, oo daero 410, oo-si/gun
- o Details: oo workers fell during oo work.  
The fire brigade arrived at the site and transferred the injured to a hospital after the rescue is completed.  
Death 0, severe injury 0, minor injury 0

[Note]

※ We have informed you of the accident occurred on February 23 as abo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o Fire Station or oo Police Station (T: 044-300-000).

시스템명		주소	비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		http://afso.kma.go.kr	외부망
		http://10.28.65.41	내부망
CCTV	재난영상정보 CCTV통합·연계시스템	재난영상정보 통합 연계시스템 -IP설정 : 10.175.102.29 -포트 : 17000 -내부네트워크 사용체크 안함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http://www.utic.go.kr	외부망
	국토부 국가교통정보센터	http://its.go.kr	외부망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교통센터	http://roadplus.co.kr	외부망
	도로공사 전용회선 CCTV	http://20.32.10.123(외부망)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대국민 안전 정보	안전디딤돌 앱	Play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앱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내부망
태풍	태풍예상진로 (미국, 일본 등)	http://www.typhoon2000.ph	외부망
	태풍연구센터	http://www.typhoon.or.kr	외부망
	유럽기상모델	http://www.windy.com	외부망
	어스널스쿨	http://earth.nullschool.net	외부망
	JTWC (미국합동태풍정보센터)	http://www.metoc.navy.mil/jtwc	외부망
풍수피해예측시스템		http://khazard.go.kr	내부망
4대 홍수 통제소	한강홍수통제소	http://www.hrfco.go.kr	외부망
	낙동강홍수통제소	http://www.nakdongriver.go.kr	외부망
	금강홍수통제소	http://www.geumriver.go.kr	외부망
	영산강홍수통제소	http://www.yeongsanriver.go.kr	외부망
산사태정보시스템		http://map.forest.go.kr	외부망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외부망
댐/보 수문정보시스템		http://dam.kwater.or.kr	외부망
4대강 Web Camera		http://4river01.rifatron.net:3001 http://pm4river.go.kr	상황실 승인받은 컴퓨터만 가능
일본 기상청		http://www.jma.go.jp/en/typh	외부망

**부록 6 안전취약계층 현황**

구분	독거노인	중증장애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질환	결손가정	계
<b>18개면</b>	<b>219</b>	<b>18</b>	<b>7</b>	<b>4</b>	<b>9</b>	<b>1</b>	<b>258</b>
의성읍	15	-	-	-	-	-	15
단촌면	16	1	-	-	-	-	17
점곡면	11	2	-	1	1	1	16
옥산면	12	1	-	-	3	-	16
사곡면	11	2	-	-	-	-	13
춘산면	8	1	1	-	3	-	13
가음면	8	1	-	-	1	-	10
금성면	22	4	-	-	-	-	26
봉양면	16	1	-	-	-	-	17
비안면	8	-	-	-	-	-	8
구천면	12	1	-	-	-	-	13
단밀면	9	-	3	-	-	-	12
단북면	17	-	1	2	-	-	20
안계면	9	-	2	-	1	-	12
다인면	16	3	-	1	-	-	20
신평면	11	-	-	-	-	-	11
안평면	12	1	-	-	-	-	13
안사면	6	-	-	-	-	-	6

**부록 7 대피장소 현황(임시주거시설)**

연번	장소명	위치
1	의성읍분회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78
2	의성교육지원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3	의성군 청소년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4	경중노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행화길 40
5	성조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성조길 21-4
6	원당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1길 19-7
7	의성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94
8	의성성결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47
9	의성성광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51
10	의성성당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1길 21
11	의성재림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흥1길 84
12	의성제일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향교길 29
13	의성중부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서2길 17-3
14	의성철파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길 64-4
15	원불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2길 40-3
16	월룡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산2길 34
17	의성군 게이트볼장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16
18	의성군노인복지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산2길 36
19	의성노인복지회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산2길 36
20	의성자혜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복원3길 51-6
21	의성고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57
22	의성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64
23	의성여자고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복원3길 35
24	의성초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26
25	의성초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26
26	단촌면분회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신기길 41-3
27	후평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후평길 28
28	사촌3리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옥실길 35
29	서변1리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64
30	서변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45
31	송내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2길 13
32	감계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구암감계길 415
33	실업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양지실업길 302
34	입암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1길 21
35	입암3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1길 26-8

연번	개소명(사업명)	위치
36	전흥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 266-3
37	정자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신감옥산로 1218
38	감계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신감옥산로 802
39	광전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 255
40	실업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실업2길 7
41	옥산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 33-31
42	전흥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 433-12
43	공정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1757
44	매곡3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옥매길 515
45	신감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721
46	신감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옥산로 93
47	신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리길 30
48	양지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2길 6-5
49	양지3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3길 9
50	오상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치천오상길 558
51	읍지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읍지길 33-4
52	작송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작송길 54
53	토현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공룡로 627
54	화전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상전길 38
55	화전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1길 177
56	화전3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2길 8-1
57	노매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1길 15
58	매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1길 1
59	사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2길 15
60	사곡중앙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967-1
61	상전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상전길 41-4
62	신리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리길 72-12
63	의성동부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감2길 22
64	작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작송길 80
65	화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1길 197-3
66	화전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사미신감로 496
67	의성창의인성교육관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965
68	금오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길 430-1
69	사미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867-11
70	춘산면분회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옥정1길 50-3

연번	개소명(사업명)	위치
71	효선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사미신감로 234
72	효선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효선3길 97
73	토종마늘정보화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사미신감로 50-7
74	금오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금오길 378
75	춘산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옥정1길 45
76	가산3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97
77	가음면분회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산성가음로 2208-4
78	상가산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1길 47
79	양지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571-4
80	장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리1길 150-1
81	장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리2길 128
82	가음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산성가음로 2208-5
83	대리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2길 16
84	만천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1길 68-29
85	수정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1길 49
86	운곡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운곡1길 1
87	조문국박물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88	금성중고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금성현서로 41-66
89	봉양중정보고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봉호로 14
90	경북중부중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2길 5
91	내산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1길 36
92	내산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2길 17
93	구천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1길 18
94	성은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유산2길 15
95	낙정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2길 61
96	생송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2길 105
97	서제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2길 1
98	속암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주속길 86
99	용곡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도리비길 37
100	용곡2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누실길 112

연번	개소명(사업명)	위치
101	주선1리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주선1길 50
102	시안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양곡2길 9
103	의성국민체육센터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
104	용기4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2길 11
105	가원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가원1길 17
106	봉정1리 경로당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776-24
107	왜가리생태관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108	광암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585-6
109	누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금곡2길 3
110	대사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2길 118
111	동산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박실길 45-5
112	박곡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109-8
113	안평교회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안평의성로 11
114	옥련사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옥련사길 130
115	운람사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2길 223

소관 부서

<b>의성군</b>			
<b>연락처</b>	<b>안전건설과</b>	<b>전화</b>	054-830-6603
		<b>FAX</b>	054-830-5913
<b>※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b>			